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 안내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

- 지자체용(제11판) -

2022. 11. 1.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팀

○ 본 업무안내서 배포 이후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후 다시 배포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자체(시군구) 담당자는 본 업무안내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페이지	주요 개정사항	비고
7	**6 추진 경과** ○ **(복지부→ 지자체) 손실보상 업무 안내 [2판]**('20.7.24), **[3판]**('20.7.31.), **[4판] 배포**('20.9.11) **및 지자체 설명회**(영상, '20.9.15), **[5판]**('20.11.7), **[6판]**('20.12.31.), **[7판]**('21.2.10), **[8판]**('21.4.30), **[9판]**('21.8.20) **배포, [10판]**('22.2.7) **배포** ○ **(복지부→ 청구인) 손실보상금 지급** - **'20년 1차**('20.8.31), **2차**('20.9.25), **3차**('20.10.29), **4차**('20.11.27), **5차**('20.12.24) - **'21년 1차**('21.1.29.), **2차**('21.2.26), **3차**('21.3.31), 4**차**('21.4.28), **5차**('21.5.31.), **6차**('21.7.30.), **7차**('21.8.30.), **8차**('21.9.30.), **9차**('21.10.28.), **10차**('21.11.30.), **11차**('21.12.28.) - **'22년 1차**('22.1.27.), **2차**('22.2.25), **3차**('22.3.31), 4**차**('22.4.29), **5차**('21.5.31.), **6차**('21.6.30.), 7차('22.7.29.), **8차**('22.8.31.), **9차**('22.9.30.), **10차**('22.10.28.)	○추가내용 반영
12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긴급치료병상** 운영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또는 긴급치료병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감염병관리기관 * 「감염병예방법」 제36조 및 「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규정(질병관리청예규 제7호)」 제2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 감염병 위기시 음압격리병상으로 전환하여 감염병 환자 진료에 사용하는 병상	○긴급치료병상 운영병원 내용 추가
12	○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준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 코로나19 확진 중환자, 준중환자만을 치료하기 위해 장비·시설 등의 조치가 완료되고 진료가 가능한 병상을 확보하여 중수본으로부터 전담치료병상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준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 내용 추가
13	**2 '22년도 손실보상 대상유형별 보상항목 및 산정방식** **1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법 제70조제1항제1호, 제2호) □ **산정방식** ① **(직접비용)** **【직접비용 항목별 보상기준】** **- 직접비용 보상 원칙**	○내용 현행화

페이지	주요 개정사항	비고
	▲ **(중복배제)** 별도 예산으로 지원되는 항목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 손실보상 대상 항목 중 기 지원 확인 시(폐기물처리비 등) 공제하고 지급 * (예시) 선별진료소 폐기물처리비, 질병관리청의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비(전담병상과 함께 운영 시 사용병상 비율만큼 직접비용 공제), 지자체 지원금 등	
13	▲ **(인과관계)** 코로나19 환자치료, 조치명령과 비용 발생 간의 인과관계 및 적정성 확인 * 코로나19 환자 치료, 정부·지자체 소독명령 등과 관련 없는 일상적 업무수행으로 발생한 비용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 ※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의 인건비 및 공공요금, 소모품 등의 기타운영비는 별도 예산, 건강보험 수가 등으로 지원하고 있어 보상대상 아님	○내용 현행화
13~14	**- 보상항목** ① **시설철거비** : 정부·지자체의 지정 해제 명령으로 시설철거비가 발생한 경우 적정 여부 검토 후 보상 - **(보상내용)** 정부·지자체의 지정 해제 명령으로 해당병상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물이나 물건의 철거비용 및 이에 따른 일부 공사비 - **(제출서류)** 지정해제(병상조정 포함) 공문, 공사 계약서 및 영수증, 공사 전·후 비교사진, 병상 원상복귀에 따른 공사 전·후 도면, 기타 적정성 심사 시 추가 요청 자료 - **(신청대상)** 정부·지자체로부터 전체 지정 해제 명령을 받은 의료기관 ※ 지정해제 전 병상조정(감축)으로 시설 일부 철거한 경우에도 전체 지정해제 후 최종 철거 시 합산하여 지급 - **(기타사항)** ㉮ 적정성 심사 후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병동·병상의 전체 리모델링 등 과도한 철거비용과 병상의 구조변경 및 전반적인(전체) 도색·타일교체 등 병상운영을 위한 과도한 수리비*는 보상에서 제외 ※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시 사용된 시설물이나 물품 등을 철거한 후 해당 병상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일부 수리비는 지원 * **(수리비 예시)** 시설철거에 따른 병상 운영 시 불가피한 공사비용으로 격막제거에 따른 파손된 천장 부분 및 바닥 타일 보수를 위한 부분 수리비 등 ㉯ 시설·장비비는 별도 사업예산 지원 중(중수본 환자병상관리반, 질병관리청(방대본 자원지원팀, 의료대응지원과)으로 보상대상 아님 ㉰ 장비* 해체는 시설철거비가 아니며, 손실보상 대상 아님 * (예시) ECMO, CRRT, 이동형 음압기, 이동형 X-Ray, 산소치료기, 심전도기 등 이동형 진료장비	○시설철거비 손실보상 내용 구체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8447(2022.7.12)호' 내용 반영

페이지	주요 개정사항	비고
	㉱ 계약서 및 공사 전·후 도면 미제출 시 손실보상 불가 ※ 시설철거 공사계약 전 시설철거비 보상 대상 여부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033-739-1760, 1767, 1776, 1781, 1785) 사전 문의	
14	② **폐기물처리비** :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관련된 폐기물처리비 보상 - **(보상내용)**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관련되는 폐기물처리비(용역비, 전용용기, 전자태그 비용, 내부봉투 구입비) 보상 ※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해 폐기물처리비가 종전보다 많이 발생한 경우 그 증가액만큼 보상 - **(보상기간)** 병상 운영시작일 ~ 지정해제일	○폐기물처리비 손실보상 내용 구체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8447(2022.7.12)호' 내용 반영
14	③ **환자전원비**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지자체의 병상 소개명령으로 일반환자를 전원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원내 차량은 유류비만 보상) - **(보상내용)**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지자체의 병상 소개명령으로 일반환자를 전원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 * 소개명령 수반되지 않는 환자전원, 코로나19 환자 전원은 직접비용 보상대상 아님(코로나19 환자 전원 지원은 중수본 환자병상지원팀 소관) - **(보상기간)** 병상 소개시작일~병상 운영시작일 전일 - **(제출서류)** 환자소개명령 공문, 영수증, 구급차 운행기록 등	○환자전원비 내용 구체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8447(2022.7.12)호' 내용 반영
14	**- 직접비용 지급시기** ▲ 예산지원과의 중복 지급 방지를 위해 지정 해제 등 대응상황이 종료된 기관에서 신청한 접수순서에 따라 순차적 지급	○내용 구체화
15	② **(기회비용) 아래 ❶ + ❷ + ❸**에 해당하는 손실 ❶ **(미사용 병상 손실)** 정부·지자체의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세부 산식(이하 동일)] …… ▶ 감염병전담병원(중등증 병상) : 확보 병상(환자치료 사용 시 사용병상 1개당 비운 병상 1개 추가 인정) 및 확보병상을 만들기 위해 소개한 병상(이하 '소개병상') * 병상확보율(확보병상 / (확보병상 + 소개병상))이 50% 미만인 경우, 확보된 치료병상 수에 맞춰 소개병상 인정 ** 코로나19 전담병상을 일반병상으로 전환하여 감축한 병상은 소개병상으로 불인정	○미사용 병상 손실 내용 구체화

페이지	주요 개정사항	비고
	***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환자가 사용한 경우 손실보상에서 제외('22.4월부터) **** (코로나19 확진자 산모에서 출생한 신생아 병상보상) 코로나19 확진자 산모에서 출생한 신생아가 생후 24시간 이내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한 경우, 사용병상 1개당 비운 병상 1개 추가 인정('22.3.2.부터 전담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위하여 확보된 병상에 입원한 경우 해당) ※ 검사기간 인정일수: 생후 24시간 이내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2회 실시한 경우 최대 2일 인정, '22.3.8. 이후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1회 실시한 경우 1일 인정 ※검사기간 동안 중등증 병상 보상기준 적용,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신생아 상태(중증도)에 따라 병상 보상	
15~16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긴급치료병상 운영병원 : 국가지정입원치료 병상 수(단,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의 의무확보 병상은 미사용시 보상 제외), 긴급치료병상 수 -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환자치료 사용 시 사용병상 1개당 비운 병상 9개 추가 인정하되, '21.12.17.부터는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 재원일수에 따라 차등 보상 * (입원~5일) 사용병상 1개당 비운 병상 13개 추가 인정, (6~10일) 사용병상 1개당 비운 병상 9개 추가 인정, (11일~20일) 사용병상 1개당 비운 병상 5개 추가 인정('21.12.17.~'22.5.7.) ** (입원~5일) 사용병상 1개당 비운 병상 9개 추가 인정, (6~10일) 사용병상 1개당 비운 병상 7개 추가 인정, (11일~20일) 사용병상 1개당 비운 병상 5개 추가 인정('22.5.8.~'22.9.30.) *** (입원~5일) 사용병상 1개당 비운 병상 6개 추가 인정, (6~10일) 사용병상 1개당 비운 병상 4개 추가 인정, (11일~20일) 사용병상 1개당 비운 병상 2개 추가 인정('22.10.1.~별도 결정 시까지) **** 20일 이후 격리 해제된 경우에는 미보상(증상 발생 후 20일 경과 시 격리해제 관련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변경 안내, 방대본-28072(2021.12.14.)호) - 준-중환자 전담치료병상 : 환자치료 사용 시 사용병상 1개당 병상 4개 추가 인정(~'22.7.31.), 환자치료 사용 시 사용병상 1개당 병상 2개 추가 인정('22.8.1.~별도 결정시까지)	○ '22년 제5차, 제1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의결 내용 반영
16	▶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 지정받은 전담치료병상 수에 비례하여 인정 -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환자치료 사용 시 사용병상 1개당 비운 병상 9개 추가 인정, 미사용 시 지정병상 1개당 비운 병상 4개 추가 인정(~'22.9.30.), 미사용 시 지정병상 1개당 비운 병상 1개 추가 인정('22.10.1.~별도 결정시까지) 다만, 사용병상의 경우 '21.12.17.부터는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 재원일수에 따라 차등 보상*	○'22년 제5차, 제1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의결내용 반영

<table>
<tr><th>페이지</th><th>주요 개정사항</th><th>비고</th></tr>
<tr><td></td><td>* (입원~5일) 사용병상 1개당 비운 병상 13개 추가 인정, (6~10일) 사용병상 1개당 비운 병상 9개 추가 인정, (11일~20일) 사용병상 1개당 비운 병상 5개 추가 인정('21.12.17.~'22.5.7.)
** (입원~5일) 사용병상 1개당 비운 병상 9개 추가 인정, (6~10일) 사용병상 1개당 비운 병상 7개 추가 인정, (11일~20일) 사용병상 1개당 비운 병상 5개 추가 인정('22.5.8.~'22.9.30.)
*** (입원~5일) 사용병상 1개당 비운 병상 6개 추가 인정, (6~10일) 사용병상 1개당 비운 병상 4개 추가 인정, (11일~20일) 사용병상 1개당 비운 병상 2개 추가 인정('22.10.1.~별도 결정 시까지)
**** 20일 이후 격리해제된 경우에는 미보상(증상 발생 후 20일 경과 시 격리해제 관련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변경 안내, 방대본-28072(2021.12.14.)호)
- 준-중환자 전담치료병상 : 환자치료 사용 시 사용병상 1개당 병상 4개 추가 인정(~'22.7.31.), 환자치료 사용 시 사용병상 1개당 병상 2개 추가 인정('22.8.1.~별도 결정시까지), 미사용 시 지정병상 1개당 비운 병상 1개 추가 인정(미사용병상 1개 추가 인정은 '21.12.1.~'22.5.7.)</td><td></td></tr>
<tr><td>19</td><td>※ '코로나19 대응 파견인력 지원·운영 지침(이하, 파견인력 지침)'에 의한 파견기간 초과 시점부터 파견인력 수당을 손실보상에서 공제
- (대상) 의사, 간호사 등 중수본에서 파견받은 의료인력(요양보호사는 미공제)
- (공제범위) '파견인력 지침'에 따라 지급된 수당(교육·초과근무 수당은 제외)
<table>
<tr><th>병상가동률</th><th>파견인력 수당 공제율</th><th>공제시점</th></tr>
<tr><td>-</td><td>의사 50%, 간호사 등 의료인력 30%</td><td>'21.8월부터 기산, 20차 개산급('21.11월)부터 적용</td></tr>
<tr><td>-</td><td>의사 80%, 간호사 등 의료인력 50%</td><td>'22.5월부터 기산, 27차 개산급('22.6월)부터 적용</td></tr>
<tr><td>50% 이상</td><td>의사 80%, 간호사 등 의료인력 50%</td><td rowspan="2">'22.8월부터 기산, 30차 개산급('22.9월)부터 적용</td></tr>
<tr><td>50% 미만</td><td>의사 100%, 간호사 등 의료인력 100%</td></tr>
</table>
- (직종별 공제금액)
① 병상가동률 50% 이상 : 의사 16,200천원, 간호사 3,500천원, 간호조무사 1,750천원, 임상병리사 2,750천원, 방사선사 3,125천원
② 병상가동률 50% 미만 : 의사 20,250천원, 간호사 7,000천원, 간호조무사 3,500천원, 임상병리사 5,500천원, 방사선사 6,250천원</td><td>○코로나19 대응 파견인력 지원·운영 지침 내용 반영
○'22년 제5차, 제8차 손실보상심의 위원회 의결내용 반영</td></tr>
<tr><td>20</td><td>❹ (회복기간 손실) 전담병원 운영 종료 후 회복기간(최대 12개월(365일)범위 내) 동안의 진료비 손실
= {(1일당 진료비)×(회복기간)×(1-의료기관의 평균 진료비 감소율)} - (회복기간의 실제 진료비*)
* 입원+외래, 급여+비급여 수입 포함 / 약제·치료재료 제외</td><td>○'22년 제1차, 제8차 손실보상심의 위원회 의결내용 반영</td></tr>
</table>

<table>
<tr><th>페이지</th><th>주요 개정사항</th><th>비고</th></tr>
<tr><td></td><td>[세부 산식(이하 동일)] ·····

◆ 병상 소개율 및 운영 기간에 따른 회복기 손실보상 기간 산출기준
<table><tr><td>병상
소개율*</td><td>20%
미만</td><td>20% 이상~
50% 미만</td><td>50% 이상~
80% 미만</td><td>80%
이상</td><td>거점전담병원
전체 소개</td></tr><tr><td>운영일수
대비
회복기간
산정비율</td><td>운영일수의
50%</td><td>운영일수의
100%</td><td>운영일수의
150%</td><td>운영일수의
200%</td><td>운영일수의
200%</td></tr><tr><td>최대
보상기간</td><td colspan="4">최대 6개월</td><td>최대 1년</td></tr></table>- 병상소개율* : (확보병상 + 소개병상) / 신고병상(허가병상)
* 병상소개율 : 전담병원 운영 기간 평균 병상소개율 적용
- 운영일수 : 지정일 ~ 해제 전일 기준

◆ 회복기간 중 재 지정되는 전담병원의 회복기 손실보상 기준
- 재지정된 전담병원은 회복기 손실보상을 종료하고 병상보상, 일반환자 감소 손실 등 적용
- 재지정 전담병원의 회복 기간은 재지정 후 병상 소개율, 운영일수 등에 따라 재산정함

◆ 진료 규모 변동이 큰 경우 기대진료비(1일당 진료비) 감액 조정
- 의사 수가 20% 이상 감소(전담병원 지정 전과 비교)한 경우, 의사 수 감소 비율에 비례하게 해당 월에 즉시 기대진료비 감액 조정
· 다만, 짧은 사전 예고로 지정 해제된 경우 2개월 경과 후 적용
- 전담병원 원상복구 공사 기간을 2주까지만 인정하고, 나머지 공사 기간은 회복기 손실보상 제외하되, 보상기간에 산입
- 영업정지, 폐업 등 의료기관 귀책 사유가 있는 기간만큼 기대진료비 감액 조정</td><td></td></tr>
<tr><td>21</td><td>❺ (의료부대사업 손실) 전담병원 운영기간 동안의 장례식장, 매점 등 의료부대사업 손실

◆ 전담병상 확보 행정명령 적용 병원은 ’21년 8월분부터, 그 외 병원은 ’21년 11월분부터 운영일자별 병상소개율에 따라 구간별 보상비율 적용.
<table><tr><td>병상소개율*</td><td>20% 미만</td><td>20% 이상~
50% 미만</td><td>50% 이상~
80% 미만</td><td>80% 이상</td></tr><tr><td>보상비율(%)</td><td>10</td><td>40</td><td>70</td><td>100</td></tr></table>* 병상소개율 : (확보병상 + 소개병상) / 신고병상(허가병상)</td><td>○내용 구체화</td></tr>
</table>

<table>
<tr><th>페이지</th><th>주요 개정사항</th><th>비고</th></tr>
<tr><td>21-22</td><td>

❻ **(건강검진사업 손실)** 전담병원 운영기간 동안 건강검진 수입 감소 등 건강검진사업 손실

※ 제2차 건강검진(21년) 손실보상 지급분부터 적용

= [{(1일당 국가검진수입) × (전담병원 운영일수) × (1 + 해당연도별 검진기관의 종별 평균 검진수입 변동률*) - (운영기간 해당년도 1일당 국가검진수입) × (전담병원 운영일수)} × (1+ 종별 본인부담 검진수입 비율)]× (운영기간 평균 병상소개율**에 따른 보상비율)

* 전년도 대비 평균 검진수입 변동률이 양의 값이면 “0”으로 간주

** 병상소개율 대상기관 해당시 적용

[세부 산식 (이하 동일)] ·····

◆ 1일당 국가검진수입 = (국가검진수입*) ÷ (연간평균 영업일수)

* ’21년도 지정기관은 19년 또는 20년 국가검진수입, ’22년도 지정기관은 ’21년 국가검진수입을 기준으로 산출

◆ 검진기관의 종별 평균 검진수입 변동률 및 종별 본인부담 검진수입 비율

(단위:%)

항목 / 적용연도	전년도 대비 평균 검진수입 변동률	
	종합병원	병원
’20년도	△6.1	△4.2
’21년도	10.7	10.4
’22년도	’23.1월 이후 산출	’23.1월 이후 산출

항목 / 적용연도	(본인부담)/(건강검진) 비율	
	종합병원	병원
’19년도	46.5	34.5
’20년도	55.7	40.6
’21년도	89.7	66.4

◆ 해당연도 운영기간 실제 국가검진수입 = (1일당 국가검진수입) × 전담병원 운영일수

◆ 연도별 적용 산식

○ **21년 운영기관** = [{(’19년 또는 ’20년 1일당 국가검진수입) × (전담병원 운영일수) × (1 + 20년 대비 21년 검진기관의 종별 평균 검진수입 변동률) - (’21년 운영기간 1일당 국가검진수입) × (전담병원 운영일수)} × (1+ (’19년 또는 ’20년 종별 본인부담 검진수입 비율)]× (운영기간 평균 병상소개율에 따른 보상비율)

◆ 전담병상 확보 행정명령 적용 병원은 ’21년 8월분부터, 그 외 병원은 ’21년 11월분부터 운영일자별 병상소개율에 따라 구간별 보상비율 적용.

병상 소개율*	20% 미만	20% 이상 ~50% 미만	50% 이상 ~80% 미만	80% 이상
보상비율 (%)	10	40	70	100

* 병상소개율: (확보병상 + 소개병상) / 신고병상(허가병상)

</td><td>○’22.10차 심의위 의결내용 반영</td></tr>
</table>

<table>
<tr><th>페이지</th><th>주요 개정사항</th><th>비고</th></tr>
<tr><td>23</td><td>
<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유형별 보상기준('22.10.1.~) >
<table>
<tr><th colspan="3" rowspan="2">유형</th><th rowspan="2">감염병전담 병원 (중등증)</th><th colspan="2">준-중환자전담 병상</th><th colspan="3">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th><th colspan="2">거점전담병원</th></tr>
<tr><th>일반 병상 개조</th><th>국가 지정/ 긴급 치료 병상</th><th>일수</th><th>일반병상 개조</th><th>국가지정/ 긴급치료 병상</th><th>그 외</th><th>거점소아 전담병원</th></tr>
<tr><td rowspan="6">병상보상</td><td rowspan="4">확보병상*</td><td rowspan="3">사용</td><td rowspan="3">(병상수× 병상단가×2배) - 실제 진료비[1)]</td><td rowspan="3" colspan="2">(병상수× 병상단가×3배) - 실제 진료비[1)]</td><td>재원 1~5일</td><td>(병상수× 병상단가×7배) - 실제 진료비</td><td>(병상수× 병상단가×7배) - 실제 진료비</td><td rowspan="5">병상 유형별 적용</td><td rowspan="5">병상 유형별 적용 ('22.3.2.~4.15. 보상 기준)</td></tr>
<tr><td>재원 6~10일</td><td>(병상수× 병상단가×5배) - 실제 진료비</td><td>(병상수× 병상단가×5배) - 실제 진료비</td></tr>
<tr><td>재원 11~20일</td><td>(병상수× 병상단가× 3배) - 실제 진료비</td><td>(병상수× 병상단가×3배) - 실제 진료비</td></tr>
<tr><td colspan="7">1) 실제 진료비 수입은 실제 사용병상 1개에서만 차감, 2) 격리 해제 시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 3)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임상시험 시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td></tr>
<tr><td>미사용</td><td>병상수 × 병상단가× 1배</td><td colspan="2">병상수 × 병상단가×1배</td><td colspan="2">병상수× 병상단가×2배</td><td>병상수 × 병상단가×1배</td></tr>
<tr><td colspan="2">소개 병상**</td><td>병상수× 병상단가×1배 (최대 확보병상수 만큼 인정)</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r>
<tr><td colspan="3">일반환자 감소손실</td><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d>○</td><td>○</td></tr>
<tr><td colspan="3">회복기간 손실</td><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d>○</td><td>(한시적 운영을 감안)</td></tr>
<tr><td colspan="3">의료부대 사업 및 건강검진 사업 손실</td><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d>○</td><td>-</td></tr>
</table>
</td><td>○'22.10차 심의위 의결내용 반영</td></tr>
<tr><td>24</td><td>
2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한 요양기관(법 제70조제1항제3호, 4호)
□ 산정방식
① (직접비용)
1) 정부·지자체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소독비용
- (생략)
2)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중 확진자를 치료한 폐쇄 의료기관의 폐기물처리비 추가지급
* 전담병상 운영 중인 치료의료기관 제외(별도 청구)
- (대상기관) 정부·지자체의 코호트 격리 조치명령(공문 등)에 따라 의료기관 폐쇄 중 확진자 치료로 인하여 “코로나 격리의료폐기물”을 배출한 의료기관
* 확진자 치료로 인한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에 한하며, 일반 접촉자인 환자 및 종사자의 폐기물, “일반 격리의료폐기물”은 코로나 격리의료폐기물 불인정
</td><td>○'22.5차 심의위 의결내용 반영</td></tr>
</table>

페이지	주요 개정사항	비고
	- **(보상항목)** 코호트 격리 기간 중 통상의 의료폐기물 비용 대비 증가한 폐기물처리용역비, 부대비용(전용용기 및 전자태그) - **(보상기간)** 조치명령일 기준 '21.11.1. 이후 코호트 조치명령(폐쇄 등)을 받은 의료기관부터 소급 적용 * 단, 추후 방역대응체계 변경(코호트 미조치)시 보상 제외 - **(중복배제)** 별도 예산으로 지원되는 항목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 손실보상 대상항목 중 기 지원 확인 시 공제하고 지급 ※ (예시) 선별진료소 폐기물처리비, 질병관리청의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비(전담병상과 함께 운영시 사용병상 비율만큼 직접비용 공제), 지자체 지원금 등 ※ 지자체 자체 판단으로 소독조치 및 코호트격리 조치 이외 다른 조치명령으로 발생한 비용은 지자체가 보상 책임	
29	**3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요양기관**(법 제70조제1항제5호) 3) 확진자 발생·경유로 **전체 의사·약사·조산사가 입원·격리조치, 휴업한 경우** ※ 의사·약사의 입원·격리 조치에 따라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요양기관 내에서 환자진료* 등 사유로 한정하며, 여행 등 개인적 사유로 입원·격리 조치된 경우 제외) * 의료기관·약국에서 확진자(의심자) 명단을 지자체에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확진자 확인하여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등록 ⓒ 격리기간 중 **BCP*(Business Contuity Plan 업무연속성계획)**에 따른 **진료(영업)비 손실** = {(1일당 진료비(영업손실액)) × (보상일수**)} - (격리기간 실제진료비 수입) * 병원내 의료인 감염증가로 진료기능 유지를 위한 업무연속성 계획으로 격리기간 중 단계적으로 근무를 허용하고 있음 ** 격리통지서의 격리기간, 공휴일 제외	○BCP 내용 추가
31	**4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법 제70조제1항제1호) □ **산정방식** ①**(직접비용)**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필요한 보호구·검사물품 등 소모품 구입, 시설임차 및 운영비 등은 예산 지원 중으로 손실보상에서 제외	○내용 구체화

페이지	주요 개정사항	비고
32	**5 선별진료소 운영병원**(법 제70조제1항제1호) □ **산정방식** ①**(직접비용)**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 구입·대여 비용, 소모품비(폐기물처리 용역비, 폐기물전용용기 포함) 등에 대하여 예산 지원(질병관리청) 중으로 손실보상에서 제외 ②**(기회비용)** 선별진료소 운영기간 동안 ①외래 기대 진료비 손실분의 전체(100%) + ②입원 기대 진료비 손실분의 50% ※ '22.8.1.부터 선별진료소 손실보상 지급 중단	○내용구체화 및 '22.8차 심의위 의결내용 반영
36	**7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사회복지시설**(법 제70조제1항제4호) ③ **(회복기간 손실) 8일 이상** 전체폐쇄·출입금지 명령을 이행한 장기요양기관 중 **해제 후 이용자** 또는 **장기요양수입이 감소**된 경우* 최소 3일에서 **최대 7일까지 회복기간**(폐쇄·출입금지 기간 - 5일) 급여비 손실분 보상 * **(전제조건)** 전체폐쇄·출입금지 개시 월 대비 해제 월* ① **이용자 수 감소** 또는 ② **장기요양수입이 감소**된 경우 (* 해제 월이 개시월과 동일한 경우 익월로 비교) = (명령이행기간 미이용자 평균 1일당 급여비) × (최소 3일 ~ 최대 7일) - 적용시기: **'21년 11월 조치명령부터 적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서비스 미이용자 급여비 등) 활용으로 자료 제출 불요	○사회복지시설 회복기간 손실보상 신설 ('22.2차 심의위 의결내용 반영)
46~47	**2 청구서 작성 및 제출 : 청구인(청구기관)** **[대상기관별] 손실보상 청구서류**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 사회복지시설 서비스미이용자 조사표 [붙임7] ○ 급여비 손실근거 별도자료 제출 불필요 ※ 장기요양급여 수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 등 활용 ○ 미이용자 근거 ※ 공문, 입원·격리통지서 등	○증빙서류 추가 및 내용구체화

페이지	주요 개정사항	비고
	○ 미이용자 상급침실 이용근거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본 또는 기타 증빙서류, 실제 지급받은 통장거래내역 등 ○ 등급외자 근거 ※ 계약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본 및 공단 정보시스템 입·퇴소 등록 내역 등) ○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증명서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폐업시 폐업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증 제출 불필요)	
47	**2 청구서 작성 및 제출 : 청구인(청구기관)** **(대상기관별) 손실보상 청구서류** **<약국, 일반영업장>** - **(고정비)** 해당되는 고정비 증빙서류 제출하되, 증빙서류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유사업종 표준고정비 적용 · (삭제)	○중복내용 제거
48~49	**2 청구서 작성 및 제출 : 청구인(청구기관)** **(대상기관별) 손실보상 청구서류** **<치료의료기관 직접비용>** ○ (중략) ○ 삭제 ○ **시설철거비** ※ 지정해제(병상조정 포함) 공문, 공사 계약서, 영수증, 철거전·후 비교사진, 공사전·후 도면 ○ **환자전원비** ※ 일반환자 소개명령 공문, 영수증, **(원외차량 이용시)** 구급차 실비 영수증, **(원내차량 이용시)** 운행기록 확인 가능한 구급차 운행기록 등 ○ **폐기물처리 용역비**(용역비 계약서류) ○ **폐기물처리 부대비용** ※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구입증빙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 구체화 및 제출서류 간소화 (시스템 자료 활용)

페이지	주요 개정사항	비고
49	**<코호트격리 중 확진자 치료 폐쇄의료기관 직접비용>** ○ 손실보상청구서[붙임1]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2] ○ 요양기관(직접비용) 확인서[붙임4] ○ 역학조사서, 코호트격리 관련 보고서 등 ○ 코호트격리(폐쇄) 지자체 공문(기간명시, 확진자 치료 확인) ○ (폐기물처리비 증빙서류) ① 용역비 관련 계약서류 일체 및 지출내역(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등) ② 코로나19 폐기물 전용용기 구입내역(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 폐기물종류, 배출일자, 폐기중량, 태그수 등 폐기물 관련 자료는 한국환경공단 'allbaro 시스템'을 활용하여 산출하므로 제출 불요	○'22.5차 심의위 의결내용 반영
58	**[대상기관 유형별]** □ **(치료의료기관 직접비용)** ○ 삭제 ○ **(폐기물처리비 증빙서류)** 지정 또는 해제공문, 폐기물처리 ① 용역비 관련 계약서류 일체, ② 코로나19 폐기물 전용용기 구입내역(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 폐기물종류, 배출일자, 폐기중량, 태그수 등 폐기물 관련 자료는 한국환경공단 'allbaro 시스템'을 활용하여 산출하므로 제출 불요	○제출서류 간소화 (시스템 자료 활용)
59	□ **(코호트격리 중 확진자 치료 폐쇄의료기관 직접비용)** ○ 요양기관(직접비용) 확인서[붙임4] ○ 역학조사서, 코호트격리 관련 보고서 등 ○ 코호트격리(폐쇄) 지자체 공문(기간명시, 확진자 치료 확인) ○ (폐기물처리비 증빙서류) ① 용역비 관련 계약서류 일체 및 지출내역(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등) ② 코로나19 폐기물 전용용기 구입내역(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 폐기물종류, 배출일자, 폐기중량, 태그수 등 폐기물 관련 자료는 한국환경공단 'allbaro 시스템'을 활용하여 산출하므로 제출 불요	○'22.5차 심의위 의결에 따른 증빙서류 추가
63	□ **(의사·약사·조산사 입원·격리 요양기관) 입원·격리 통지서, 대체인력 고용 및 인건비 지급 근거, 격리기간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 근거 등** ○ **(격리 근거)** 지자체가 의사·약사·조산사를 입원·격리 통보한 공문 또는 입원·격리 통지서* - 의료기관은 의사(약사, 간호사, 직원의 격리 근거는 제외), 약국은 약사 및 조산원은 조산사의 격리 근거만 제출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대한 격리통지서 등 요구 자제 협조 요청 (중앙방역대책본부-7793, 2022.3.2..) 사항 반영

페이지	주요 개정사항	비고
	*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입원·격리 통지서, 문자, SNS 등의 통지 캡쳐본 등	
65~66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미이용자 조사표, 입원·격리 통지서, 서비스 미이용자의 상급침실이용, 등급외자 확인서류** ○ **(상급침실이용 근거)** 서비스 미이용자가 상급침실을 이용하였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본** 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실제 지급받은 통장거래내역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등급외자 근거)** 서비스 미이용자가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은자가 아니거나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 르게 급여를 이용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본 및 공단 정보시스템 입·퇴소 등록 내역 등 ○ **(회복기간 손실) 8일 이상** 전체폐쇄·출입금지 명령을 이행한 장기요양기관 중 **해제 후 이용자** 또는 **장기요양수입이 감소**된 경우* 최소 3일에서 **최대 7일까지 회복기간**(폐쇄·출입금지기간 - 5일) 급여비 손실분 보상 * (전제조건) 폐쇄·출입금지 개시 월 대비 해제 월* ① 이용자 수 감소 또는 ② 장기요양수입이 감소된 경우 (* 해제 월이 개시 월과 동일한 경우 익월로 비교) **= (명령이행기간 미이용자 평균 1일당 급여비) × (최소 3일 ~ 최대 7일)** - 적용시기: **'21년 11월 조치명령부터 적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서비스 미이용자 급여비 등) 활용으로 자료 제출 불요	○증빙서류 추가 및 구체화 ○'22.2차 심의위 의결내용 반영
76	□ **폐기물만 신청(의료기관)** **폐기물만 신청(기접수된 코호트 건에 한정)** Y/N ○ 기 접수된 코호트 건이 있는 경우 'Y', 그 외의 경우 'N' 체크 * 'Y' 체크시 폐기물 외 지자체 조치명령 및 이행 내역 등은 신청할 수 없음	○코호트격리 치료 폐쇄의료기관 직접비용(폐기물) 관련 손실보상청구 시스템 개선내용 반영

<table>
<tr><th>페이지</th><th>주요 개정사항</th><th>비고</th></tr>
<tr><td>86</td><td>

□ 폐기물 내역

<table>
<tr><th rowspan="2">순번</th><th colspan="2">구분</th></tr>
<tr><th>코호트</th><th>확진자 치료</th></tr>
<tr><td>1</td><td>Y/N</td><td>Y/N</td></tr>
</table>

* 코호트 및 확진자 치료 전부 'Y' 선택 시 하단에 코로나 폐기물 처리비(용역비 및 부대비용-코로나19 폐기물 전용용기, 전자태그) 입력 가능

<폐기물 처리비(용역비)>

○ **(조치명령)** 시작일자 및 종료일자는 지자체가 조치한 공문(또는 조치명령서) 상 기재된 이행 기간을 기재

* 조치명령이 2회 이상인 경우 각각 입력

○ **(계약기간)** 계약서에 명시된 조치명령 기간 포함한 계약기간 기재

○ **(계약구분)** 계약서에 명시된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총액계약 및 단가계약으로 선택가능

○ **(계약금 총액)** 계약서에 명시된 총액금액으로 기재

○ **(단가/kg당)** 계약서에 명시된 일반 의료폐기물과 코로나19 격리 의료폐기물로 구분하여 기재

○ **(중량,kg)** 조치명령 기간 안에 처리한 폐기물 중량을 일반 의료폐기물과 코로나19 의료폐기물로 구분하여 기재

<폐기물 처리비(부대비용-코로나19 폐기물 전용용기, 전자태그)>

○ **(조치명령)** 시작일자 및 종료일자는 지자체가 조치한 공문(또는 조치명령서) 상 기재된 이행 기간을 기재

○ **(계약구분, 부대비용)** 계약서에 명시된 전자태그 포함과 전자태그 미포함으로 선택가능

○ **(전용용기 수, 전자태그 수)** 조치명령 기간 안에 처리한 코로나19 전용용기 수와 전자태그 수를 기재

* 폐기물처리비는 통상의 폐기물처리 비용 대비 증가한 비용(용역비 등)을 보상하므로 보상액이 적거나 없을 수 있음

</td><td>○폐기물처리비용 입력 추가
○코호트격리 치료 폐쇄의료기관 직접비용(폐기물) 관련 손실보상청구 시스템 개선내용 반영</td></tr>
<tr><td>89</td><td>

〈 **전담병원, 전체폐쇄 의료기관 의료부대사업** 〉

□ **대상 영업장 정보 작성**

<table>
<tr><th>①구분</th><th>②유형</th><th>③사업자등록 번호</th><th>④ 상호명</th><th>⑤~⑦ 중략</th><th>⑧기타 전달사항</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상호별로 행을 추가하여 작성

</td><td>○사업자등록번호 추가</td></tr>
</table>

<table>
<tr><th>페이지</th><th>주요 개정사항</th><th>비고</th></tr>
<tr><td>91</td><td>

〈 전담병원 건강검진사업 〉

□ 요양기관 정보 작성

<table>
<tr><th>①요양기관기호</th><th>②요양기관명</th><th>③~⑤
중략</th><th><u>⑥기준 검진수입 연도</u></th><th>⑦기타
전달
사항</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td><td>○기준검진수입연도 추가</td></tr>
<tr><td>99~101</td><td>

Ⅴ. 치료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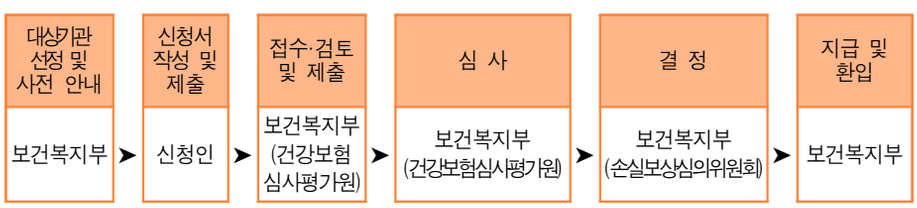

※ 결정·지급된 손실보상금 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 증빙)

1 정산 대상기관 안내 : 보건복지부

□ **대상 기관**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조치**에 따라 **치료의료기관 등**으로 **지정**되어 **개산급을 지급받은 기관** 등에 대해 정산(精算)

- 지정해제일, 건강보험요양급여 심사결정일 등 고려 정산 대상 기관을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안내

□ **안내 사항**

○ (정산 관련 정보*) 정산 절차 및 추가지급·환입 발생가능 안내

* 필요시 운영형태 또는 거점전담 및 감염병 전담병원의 경우 회복기 보상일수

○ **(요양급여비용 심사 청구 안내)** 손실보상 대상 기간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청구가 완료**되었고 정산을 신청하면 추가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제한될 수 있음

○ 정산 심사 결정내역에 따라 추가 **지급 및 환입금** 발생에 대한 안내 및 이의신청 절차 안내

○ 접수 경로(절차) 및 제출 서류 등

</td><td>○치료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정산 내용 추가 ('22.10, 11차 심의위원회 의결내용 반영)</td></tr>
</table>

페이지	주요 개정사항	비고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인(신청기관)

□ **작성방법**

○ **(제출 자료 확인)** 개산급 접수화면 참고

- 기지급된 개산급의 내역과 산출 자료 확인(병상수, 1일당 진료비 등)

* 확인 경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코로나 관련 신고 ►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

○ **(작성)** 손실보상 정산신청서 및 치료의료기관 정산 확인서 작성

○ **(제출)** 작성자 및 지급계좌 정보 → 관련문서* 첨부 → 최종 제출

- 정산신청서
- 치료의료기관 정산 확인서 등 *붙임16 참고
- 기타 서류 등

※ 세부 증빙서류

구분	요양기관(의료기관)
신청서 (공통)	○손실보상 정산신청서(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붙임15] ○치료의료기관 등 정산 확인서 [붙임16] ○치료의료기관 등 정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붙임17] ○손실보상 정산 신청 위임장 [붙임18]
증빙서류 (공통)	○손실보상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 진료비 손실 근거 : 별도 제출 불필요(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 활용)
증빙서류 (선택)	<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 전담병원 운영기간 이후 원상복구 공사계약서, 의료기관 휴업신고서, 운영현황자료 등 * 공사기간, 휴업기간 및 운영 재시작일 확인 가능한 자료

3 심사·결정·지급 (보건복지부)

□ **심사**

○ 제출된 자료와 손실보상 대상 기간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자료(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금액 등)를 활용하여 심사

페이지	주요 개정사항	비고
	□ **결정**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 이의신청 기회 1회 부여 □ **지급 또는 환입** ○ **(지급)** 기지급금액(개산급) 대비 지급 금액 발생 기관 추가 지급 ○ **(환입)** 기지급금액(개산급)에 비해 정산금액 적은 기관의 환입 진행 **4 이의신청** < 이의신청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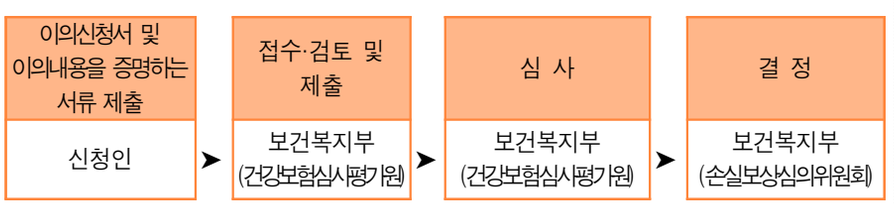 ○ 신청인은 결정·지급된 손실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임의서식, 이의신청 사유를 상세히 기술) 및 이의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 ※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 증빙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문서 시행	
110	**붙임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붙임2 내용은 본문 참고**	
113	**붙임4 요양기관 확인서** ○ 의료기관(직접비용) **보건복지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발신처 추가
	붙임6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확인서 : 삭제	○ 폐기물처리업자 제출용으로 현재 미사용으로 삭제

<table>
<tr><th>페이지</th><th>주요 개정사항</th><th>비고</th></tr>
<tr><td>119</td><td>붙임8 손실보상금 청구 안내문

< 손실보상 대상 유형 및 보상 항목 >
<table><tr><th>손실보상 대상 유형</th><th>보상 항목</th></tr><tr><td>○ (요양기관)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한 의료기관, 약국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3,4호</td><td>-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소독비용
- 코호트(동일집단)격리 중 확진자 치료 폐쇄 의료기관 폐기물처리 비용
- 폐쇄·업무정지 기간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
- 8일 이상 폐쇄·업무정지된 경우 회복기간(최대 7일)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td></tr><tr><td>○ (요양기관) 환자 발생·경유하거나 정부·지자체에 의해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약국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5호</td><td>-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소독비용
- 정보공개 후 7일(공개일 포함) 동안의 진료(영업) 손실</td></tr><tr><td>○ (기타)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4호</td><td>-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소독비용
- (일반영업장) 폐쇄·출입금지·소독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
- (사회복지시설) 명령이행기간 동안의 서비스 미이용자의 급여비 및 상급 침실이용료(비급여) 손실, 전체폐쇄(8일 이상) 후 회복기간 손실</td></tr></table></td><td>○ 보상항목 추가
-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폐쇄 의료기관 폐기물처리 직접비용 추가, 사회복지시설 보상항목 추가</td></tr>
<tr><td>121</td><td>붙임9 손실보상금 미지급 안내문

< 손실보상 대상 유형 및 보상 항목 >
<table><tr><th>손실보상 대상 유형</th><th>보상 항목</th></tr><tr><td>○ (요양기관) 정부·지자체가 폐쇄 · 업무정지 · 소독 등 조치한 의료기관, 약국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3,4호</td><td>-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소독비용
- 코호트(동일집단)격리 중 확진자 치료 폐쇄 의료기관 직접비용(폐기물처리비용)
- 폐쇄·업무정지 기간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
- 8일 이상 폐쇄·업무정지된 경우 회복기간(최대 7일)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td></tr><tr><td>○ (기타)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4호</td><td>-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소독비용
- (일반영업장) 폐쇄·출입금지·소독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
- (사회복지시설) 명령이행기간 동안의 서비스 미이용자의 급여비 및 상급 침실이용료(비급여) 손실, 전체폐쇄(8일 이상) 후 회복기간 손실</td></tr></table></td><td>○손실보상 항목 추가</td></tr>
</table>

페이지	주요 개정사항	비고
124	**붙임12 손실보상 결정 통지서** ○ 결정통지서 - 의료기관用/ (분할지급) 1차 지급用 ▸(직접비용) ① 정부·지자체의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소독비용 ②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처리 용역비용 (종전보다 추가된 비용에 한해 인정) ③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처리 부대비용 (전용용기, 전자태그)	○직접비용 항목 추가
126	**붙임12 손실보상 결정 통지서** ○ 결정통지서 - 사회복지시설用 ▸ 회복기간 손실 = (명령이행기간 미이용자 평균 1일당 급여비) × (최소 3일 ~ 최대 7일) * 8일 이상 전체폐쇄 장기요양기관에 한함	○'22.2차 심의위 의결내용 반영
127	**붙임12 손실보상 결정 통지서** ○ 결정통지서 - 전담병원·전체폐쇄의료기관 의료부대사업用 ▸ 지급결정액 = [{(1일당 영업손실액) × (전담병원 운영일수)} - {(전담병원 운영기간 실제매출액) × (총 이익률(%))}] × (운영기간 평균 병상소개율에 따른 보상비율) - 1일당 영업손실액 = (영업이익+고정비용) ÷ (365일) * ('22년도 전담병원운영 의료기관 의료부대사업) = (21년도 영업이익+고정비용) ÷ 365일 - 총 이익률(%) = (영업이익+고정비용) ÷ (매출액) × 100 * 전담병원 운영기간 중 신규사업장 = (1일당 영업손실액) × (전담병원 운영일수) ※ 병상확보 행정명령 적용기관은 '21년 8월분부터, 그 외 감염병 및 거점전담병원은 '21년 11월분부터 운영일자별 병상소개율*에 따라 구간별 보상비율 적용. * 병상소개율 대상기관 해당 시 적용	○'21.11차 심의위 의결내용 반영

페이지	주요 개정사항	비고
128	**붙임12 손실보상 결정 통지서** ○ 결정통지서 – 전담병원 건강검진사업用 ▶ 지급결정액 = [{(1일당 국가검진수입) × (전담병원 운영일수) × (1 + 해당연도별 검진기관의 종별 평균 검진수입 변동률*) - {(운영기간 해당년도 1일당 국가검진수입) × (전담병원 운영일수)} × (1+ 종별 본인부담 검진수입 비율)]× (운영기간 평균 병상소개율**에 따른 보상비율) * 전년도 대비 평균 검진수입 변동률이 양의 값이면 "0"으로 간주 ** 병상소개율 대상기관 해당시 적용 - 1일당 국가검진수입 = (국가검진수입) ÷ (연간평균 영업일수*) * 공휴일 제외	○'22.2차 심의위 의결내용 반영
133~138	**붙임14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정산 안내문: 신설** **붙임15 손실보상 정산 신청서: 신설** **붙임16 치료의료기관 등 정산 확인서: 신설** **붙임17 치료의료기관 등 정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설** **붙임18 손실보상 정산 신청 위임장: 신설** **붙임19 손실보상 정산 결정통지서: 신설** **※ 붙임14~19 내용은 본문 참고**	○치료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정산 내용 추가('22.10, 11차 심의위원회 의결내용 반영)
147~156	□ **[별첨] 대상유형별 작성 화면** ○ 의료기관: 시스템 개선 화면 변경 ○ 약국: 그림 화질 제고 ○ 일반영업장: 그림 화질 제고 ○ 사회복지시설: 그림 화질 제고 ○ 전체폐쇄의료기관 의료부대사업: 그림 화질 제고 ○ 감염병전담병원 등 의료부대사업: 그림 화질 제고 ○ 감염병전담병원 등 건강검진사업(신설) ○ 치료의료기관 직접비용 : 시스템 개선 화면 변경 **※ 대상유형별 작성 화면 내용은 본문 참고**	○대상유형별 작성 화면 업데이트

페이지	주요 개정사항	비고
164	**붙임24** **지자체용 Q&A** **Ⅰ. 손실보상 대상 및 범위** **Q1. 국가에서 보상하는 손실범위는?**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손실보상)제1항에 따른 손실만 보상 □ 코로나19 ①**환자 치료의료기관** 및 ②**방역 협력 의료기관** ①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긴급치료병상 운영병원,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 △준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 △기타 치료의료기관 ② △생활치료센터 협력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의료기관* * '22.8.1.부터 손실보상 지급 중단('22년 제8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의결)	○'22.8차 심의위 의결내용 반영 ○내용 현행화
167	**Ⅰ. 손실보상 대상 및 범위** **Q12. 임시검사(생활)시설*(입점 영업장 포함)의 손실보상 대상 여부?** * 해외입국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후 검사결과 대기 및 국내 거주지가 없는 해외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의 격리를 위한 시설로 '포스트 오미크론 해외입국 관리' 개정으로 '22.6.9.부터 운영을 종료함.	○내용 현행화
174	**Ⅲ. 의료기관** **Q2.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및 방역협력기관(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등)에 확진자 발생·경유로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 시 손실보상 청구방법은?** □ 폐쇄·업무정지·소독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손실보상업무 수행 * (접수) 지자체, (심사·지급) 보건복지부 ○ 단,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금(개산급) 지급 시 중복 지원되는 항목은 제외하고 지급 *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은 '22.8.1.부터 손실보상 지급 중단('22년 제8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의결)	○'22.8차 심의위 의결내용 반영

페이지	주요 개정사항	비고
174	**Ⅲ. 의료기관** **Q3. 직접비용 중 소독비용 외 기타 비용이 있을 경우 손실보상 여부?** □ 국가가 보상하는 직접비용은 소독비용과 코호트(동일집단)격리 중 확진자를 치료한 폐쇄 의료기관의 폐기물 처리비용에 한정하여 지원함 ○ 지자체 판단으로 소독조치 이외 다른 조치명령으로 발생한 비용은 지자체*가 보상 ※ (예시) 코호트격리 조치 기간 중 입소자 및 종사자 도시락, 생수 등은 손실보상 대상 항목 아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따라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각 시·도에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가능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중 확진자 치료 폐쇄 의료기관 폐기물처리 비용 추가, 손실보상 제외되는 대표적 항목 기재
177	**Ⅳ. 약국·일반영업장** **Q2. 공공기관(비의료기관), 비영리민간단체(기관) 등 손실보상 가능한지?** □ 공공기관(비의료기관), 비영리민간단체(기관) 등은 원칙상 손실보상(기회비용) 대상 아님	○내용 구체화 (공공기관 중 의료기관은 기회비용 보상 가능)
189~ 190	**Ⅶ.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및 방역협력기관** **Q2. 개산급을 지급한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① 및 방역협력기관②은?** □ ①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긴급치료병상 운영병원,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 준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 ②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협력 의료기관 **Q5. 직접비용 보상항목 및 대상기관 유형은?** ※ 기타 유형(생활치료센터 협력 의료기관(④),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⑤),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⑧), 오염된 물건·음식물의 폐기, 의료인·의료업자 등의 동원(⑨))은 별도 사업예산으로 설치·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므로 직접비용 보상대상 아님	○본문과 문구 일치 ○내용 현행화

목 차(1)

Ⅰ. 손실보상 개요 ····· 1

Ⅱ. 손실보상 대상유형별 산정기준 ····· 9

Ⅲ. 손실보상 대상기관 및 청구(접수)기관 ····· 39

Ⅳ. 손실보상 처리절차 ····· 43

Ⅴ. 치료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정산 ····· 97

Ⅵ. 지자체 조치사항 ····· 103

Ⅶ. 붙임 ····· 107

목 차(2)

[붙 임]

1. **손실보상청구서**(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서식]) ····· 109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치료의료기관 등 정산 외 用) ····· 110
3. **손실보상 청구 위임장** ····· 111
4. **요양기관 확인서** ····· 113
5. **의료부대사업장 휴·폐업 사실 확인서** ····· 116
6. **손실보상금 분할지급 신청서**(병원급 의료기관) ····· 117
7.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미이용자 조사표**(사회복지시설) ····· 118
8. **손실보상 청구 안내문** ····· 119
9. **손실보상금 미지급 안내문** ····· 121
10.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안내문**(일반영업장) ····· 122
11. **지급절차 동의서**(일반영업장) ····· 123
12. **손실보상 결정통지서** ····· 124
13. **이의신청서** ····· 132
14.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정산 안내문** ····· 133
15. **손실보상 정산 신청서** ····· 134
16. **치료의료기관 등 정산 확인서** ····· 135
17. **치료의료기관 등 정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136
18. **손실보상 정산 신청 위임장** ····· 137
19. **손실보상 정산 결정통지서** ····· 138
20. **코로나19 손실보상 모니터링 매뉴얼**(시·도) ····· 139
21. **코로나19 손실보상 조사표 작성 매뉴얼**(시·군·구) ····· 141
22. **영업시간 외 보건소에서 직접 소독한 경우 손실보상 업무처리** ····· 158
23. **손실보상금 분할지급** ····· 159
24. **지자체용 Q&A** ····· 160
25. **손실보상 대상 및 범위 관련 법령** : 감염병예방법·시행령 ····· 191
26. **손실보상금 지급 유사사례 보상절차** ····· 195

Chapter I

손실보상 개요

Ⅰ. 손실보상 개요

1 개 요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70조

○ **(보상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손실**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운영, 감염병환자 진료·격리, 의료기관 등 폐쇄·업무정지, 오염장소 소독 등

○ **(보상범위) 시설·장비·인력 등의 투입비용,** 해당 자원을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회비용 등 고려**하여 산정

※ 손실을 발생·확대 시킨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 감액 또는 미지급(법 제70조제3항, 시행령 제28조의2,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 기준에 관한 고시(제2021-90호))

<손실보상 대상 및 범위>

구분	손실보상 대상 (법 제70조제1항)	손실보상 범위 (시행령 제28조제1항)
의료기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	설치·운영 비용 시설·장비·인력 손실 비용
	감염병환자, 의사환자 등 진료	시설·장비·인력 소요 및 손실 비용
	의료기관 폐쇄 또는 업무정지 등	시설·장비·인력 손실 비용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의 공개**	상기에 준하는 손실
격리시설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	설치·운영 비용 시설·장비·인력 손실 비용
약국 등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의 공개**	의료기관 손실에 준함
기타	방역 조치에 따른 **폐쇄, 출입금지**, 이동제한, 오염물건 폐기	시설·장비·인력 손실 비용 소독 및 필요 조치 비용 음식물, 물건의 평가액 등
	환자 발생 및 오염장소 **소독 및 필요 조치** 등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음식물, 물건 폐기, 공중위생시설/장소 소독, 어로 사용 제한 등	

2 기본 원칙

○ **(국가 조치의 이행) 정부·지자체 지시·요청의 이행**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합리적 보상**

※ 자발적 행위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님

- 병상확보, 폐쇄·업무정지, 소독 등 조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자료** (공문서, 중대본 공식통계 및 지자체 보고자료 등)**를 기준으로 보상 인정**

- 단, 정부·지자체의 조치 명령 이전에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응급실 폐쇄 등 **자발적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소관 지자체가 해당 조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지자체의 조치명령 이행기간으로 편입 가능**

○ **(환자치료 기여도 고려)**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적극 참여한 의료기관** (감염병전담병원 등)에게 **합리적 보상**으로 향후 정부의 감염병 대응조치에 **적극적인 협력** 유도

○ **(중복보상의 방지)** 旣 지급된 보상금*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불필요한 예산누수를 방지**하되, **실제 발생한**(또는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손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손실보상)에 따라 지자체가 지급한 손실보상금

3 재원 부담

○ **정부의 직접적인 조치 및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지자체 조치는 **국고**로 손실보상 지원하되,

- 정부 지침과 **별도의 지자체 자체 조치**는 **지자체 부담**

4 손실보상 주체 및 역할

○ **(법률상 주체)** 감염병예방법* 상 **손실보상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

> **제70조(손실보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주체별 역할)**

- **(복지부) 재원(국비) 확보,** 손실보상 대상유형별 **보상항목 및 산정기준 마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손실보상금 지급** 등 손실보상 업무 총괄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차관, 법률·손해사정·분쟁조정·건강보험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다만, 행정 효율성, 심사 전문성, 보상대상 유형·규모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심사 수행**

  * 요양기관 진료비 심사 전문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 운영, 약국·일반영업장 등은 손해사정사회 용역**

- **(지자체)** 관할 지역의 손실보상 **대상 확인** 및 **청구 지원**

  · 코로나19 **대응조치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시행**하므로, 손실보상 **청구 안내**, 손실보상 대상기관의 **청구서류 접수 및 1차 검토** 등은 지자체에서 수행

<손실보상금 지자체(시군구) 청구·접수 유사사례>

► **(대상사업)** 가축전염병 손실보상금·가축전염병 생계안정비용(가축전염병예방법), 곤충 손실보상금(곤충산업법), 식물 손실보상금(식물방역법), 기립불능소 보상금(축산물위생관리법) 등

► **(청구·접수절차)** 손실을 입은 자가 관할 **시군구에 보상금 청구(시군구에서 접수)**
→ **시군구별 평가반이 손실여부 및 손실범위 확인** 후 예상 보상금액 산정하여 **검토확인서 작성**

5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 손실보상심의위원회

○ **(목적)**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원칙·대상·기준 등)의 **심의·의결**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2(손실보상심의위원회)

○ **(위원구성) 공동위원장**(2인: 보건복지부 제2차관, 민간전문가)**, 관계 분야 전문가 등*** **총 14인**

* 법률·손해사정·분쟁조정·건강보험 등 전문가 8인, 의협·병협·약사회·간협 추천 4인, 정부 2인(간사 포함)

○ **(임기)** 3년

○ **(운영)**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 개최 및 심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손실보상전문위원회

○ **(목적)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심의**를 위한 **전문가 사전 검토**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8조의3제7항

○ **(위원구성)** 심의위원회 위원 중 관계분야 전문가 등* **총 9인**

* 법률·손해사정·분쟁조정·건강보험 등 전문가 5인, 의협·병협·약사회 추천 3인, 정부 1인

○ **(임기)** 3년

○ **(운영)** 심의위원회의 전문위원회 소집 요청 등의 경우 회의 개최 및 심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6 추진 경과

○ **(복지부→ 지자체) 손실보상 업무 안내[1판] 배포** 및 **청구지원 준비 요청**('20.7.15), **지자체 설명회**(영상, '20.7.20)

○ **(지자체) 손실보상 대상기관 선정*** **및 사전 안내, 손실보상청구 접수 및 검토**('20.7.15~)

* '20.6월 이전 손실발생 기관부터 우선 선정

* 사실확인 등 검토한 내용을 조사표 작성 및 증빙자료 등록 후 복지부에 제출(공문 발송)

○ **(심평원)** 손실보상 관련 업무화면 **오픈**('20.7.2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내 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업무화면 개발**(7월~)

○ **(심평원, 한국손해사정사회) 손실보상 심사**('20.7.27~)

* 손실보상 심사위탁 계약 체결(복지부-심평원, 7.22, 심평원-한국손해사정사회, 7.30)

○ **(복지부)** 1차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손실보상전문위원회 논의**('20.8.25),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20.8.28)

○ **(복지부→ 지자체) 손실보상 업무 안내 [2판]**('20.7.24), **[3판]**('20.7.31.), **[4판] 배포**('20.9.11) **및 지자체 설명회**(영상, '20.9.15), **[5판]**('20.11.7), **[6판]**('20.12.31.), **[7판]**('21.2.10), **[8판]**('21.4.30), **[9판]**('21.8.20) **배포, [10판]**('22.2.7) **배포**

○ **(복지부→ 청구인) 손실보상금 지급**

- **'20년 1차**('20.8.31), **2차**('20.9.25), **3차**('20.10.29), **4차**('20.11.27), **5차**('20.12.24)
- **'21년 1차**('21.1.29.), **2차**('21.2.26), **3차**('21.3.31), 4**차**('21.4.28), **5차**('21.5.31.), **6차**('21.7.30.), **7차**('21.8.30.), **8차**('21.9.30.), **9차**('21.10.28.), **10차**('21.11.30.), **11차**('21.12.28.)
- **'22년 1차**('22.1.27.), **2차**('22.2.25), **3차**('22.3.31), **4차**('22.4.29), **5차**('21.5.31.), **6차**('21.6.30.), **7차**('22.7.29.), **8차**('22.8.31.), **9차**('22.9.30.), **10차**('22.10.28.)

* (복지부 → 지자체 → 청구인) 손실보상금 결정 내역 통보, 청구인에게 손실보상 결정통지서 개별 안내

※ 손실보상청구 접수·심사를 상시화하고 **매월 손실보상전문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손실보상금 지급 정례화**

Chapter II

손실보상 대상유형별 산정기준

Ⅱ. 손실보상 대상유형별 산정기준

1 손실보상 대상유형 분류

분류	손실보상 대상유형	법적 근거
요양기관	1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	법 제70조제1항제1호, 2호
	2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한 요양기관	법 제70조제1항제3호, 4호
	3 환자 발생·경유하거나 그 사실이 공개된 요양기관	법 제70조제1항제5호
	4 생활치료센터 협력 의료기관	법 제70조제1항제1호
	5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법 제70조제1항제1호
요양기관 이외	6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등	법 제70조제1항제4호
	7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사회복지시설	법 제70조제1항제4호
	8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법 제70조제1항제1의2호
	9 오염된 물건·음식물의 폐기, 의료인·의료업자 등의 동원	법 제70조제1항제4호

2 '22년도 손실보상 대상유형별 보상항목 및 산정방식

◇ 손실보상은 정부·지자체 조치이행에 **직접 소요된 비용(직접 비용)**과 해당 시설·장비·인력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비용(기회 비용)**을 **보상**
⇨ **직접 비용 + 기회 비용**

요양기관 (의료기관·약국)

1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법 제70조제1항제1호, 제2호)

□ 대상기관

○ **(감염병전담병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관리를 전담하는 병원

* 「감염병예방법」 제36조 또는 제37조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 중 국가·지자체로부터 병원 또는 병동 전체를 비워 음압·격리병실을 확보토록 지시·요청받은 의료기관

○ **(거점전담병원)** 코로나19 중환자 및 고위험군의 효율적인 치료를 위하여 병상 전체 또는 일부 소개하여 코로나19 환자를 전담으로 치료하는 중환자병상, 준-중환자병상, 중등증환자병상을 갖춘 병원

* 「감염병예방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으로부터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긴급치료병상** 운영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또는 긴급치료병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감염병관리기관

* 「감염병예방법」 제36조 및 「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질병관리청예규 제7호)」 제2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 감염병 위기시 음압격리병상으로 전환하여 감염병 환자 진료에 사용하는 병상

○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준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 코로나19 확진 중환자, 준중환자만을 치료하기 위해 장비·시설 등의 조치가 완료되고 진료가 가능한 병상을 확보하여 중수본으로부터 전담치료병상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 **(기타 치료의료기관)**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관리를 요청받은 의료기관*

* 정신질환 코로나19 확진환자 진료 협조를 요청받은 의료기관 포함

□ 산정방식

① **(직접 비용)** 정부·지자체 조치이행을 위해 시설철거, 폐기물처리 등에 **소요된 직접 비용**

【직접비용 항목별 보상기준】

직접비용 보상 원칙		▲**(중복배제)** 별도 예산으로 지원되는 항목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 손실보상 대상항목 중 기 지원 확인 시(폐기물처리비 등) 공제하고 지급 * (예시) 선별진료소 폐기물처리비, 질병관리청의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비(전담병상과 함께 운영시 사용병상 비율만큼 직접비용 공제), 지자체 지원금 등 ▲**(인과관계)** 코로나19 환자 치료, 조치명령과 비용 발생 간의 인과관계 및 적정성 확인 * 코로나19 환자 치료, 정부·지자체 소독명령 등과 관련 없는 일상적 업무수행으로 발생한 비용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 ※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의 인건비 및 공공요금, 소모품 등의 기타운영비는 별도 예산, 건강보험 수가 등으로 지원하고 있어 보상대상 아님
보상항목	**①시설철거비**	정부·지자체의 지정 해제 명령으로 시설철거비가 발생한 경우 적정 여부 검토 후 보상 – **(보상내용)** 정부·지자체의 지정 해제 명령으로 해당병상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물이나 물건의 철거비용 및 이에 따른 일부 공사비 – **(제출서류)** 지정해제(병상조정 포함) 공문, 공사 계약서 및 영수증, 공사 전·후 비교사진, 병상 원상복귀에 따른 공사 전·후 도면, 기타 적정성 심사 시 추가 요청 자료 – **(신청대상)** 정부·지자체로부터 전체 지정 해제 명령을 받은 의료기관 ※ 지정해제 전 병상조정(감축)으로 시설 일부 철거한 경우에도 전체 지정해제 후 최종 철거 시 합산하여 지급 – **(기타사항)** ㉮ 적정성 심사 후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병동·병상의 전체 리모델링 등 과도한 철거비용과 병상의 구조변경 및 전반적인(전체) 도색·타일교체 등 병상운영을 위한 과도한 수리비*는 보상에서 제외 ※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시 사용된 시설물이나 물품 등을 철거한 후 해당 병상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일부 수리비는 지원

【직접비용 항목별 보상기준】

		* **(수리비 예시)** 시설철거에 따른 병상 운영 시 불가피한 공사비용으로 격막제거에 따른 파손된 천장 부분 및 바닥 타일 보수를 위한 부분 수리비 등 ㉯ 시설·장비비는 별도 사업예산 지원 중(중수본 환자병상관리반, 질병관리청(방대본 자원지원팀, 의료대응지원과)으로 보상대상 아님 ㉰ 장비* 해체는 시설철거비가 아니며, 손실보상 대상 아님 * (예시) ECMO, CRRT, 이동형 음압기, 이동형 X-Ray, 산소치료기, 심전도기 등 이동형 진료장비 ㉱ 계약서 및 공사 전·후 도면 미제출 시 손실보상 불가 ※ 시설철거 공사계약 전 시설철거비 보상 대상 여부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033-739-1760, 1767, 1776, 1781, 1785) 사전 문의
	②폐기물처리비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관련되는 폐기물처리비 보상 - **(보상내용)**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관련되는 폐기물처리비(용역비, 전용용기, 전자태그 비용, 내부봉투 구입비) 보상 ※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해 폐기물처리비가 종전보다 많이 발생한 경우 그 증가액만큼 보상 - **(보상기간)** 병상 운영시작일 ~ 지정해제일
	③환자전원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지자체의 병상 소개명령으로 일반환자를 전원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원내 차량은 유류비만 보상) - **(보상내용)**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지자체의 병상 소개명령으로 일반환자를 전원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 * 소개명령 수반되지 않는 환자전원, 코로나19 환자 전원은 직접비용 보상대상 아님(코로나19 환자 전원 지원은 중수본 환자병상지원팀 소관) - **(보상기간)** 병상 소개시작일~병상 운영시작일 전일 - **(제출서류)** 환자소개명령 공문, 영수증, 구급차 운행기록 등
직접비용 지급시기		▲예산지원과의 중복 지급 방지를 위해 지정 해제 등 대응상황이 종료된 기관에서 신청한 접수순서에 따라 순차적 지급

※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의 소독비, 인건비 및 공공요금, 소모품 등의 기타운영비는 별도 예산, 건강보험 수가 등으로 지원하고 있어 보상대상 아님

② **(기회비용)** 아래 ❶ + ❷ + ❸에 해당하는 손실

❶ **(미사용 병상 손실)** 정부·지자체의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수) × (1일당 병상단가)

[세부 산식(이하 동일)] ·····

◆ **환자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수 = {∑(정부·지자체 지시·요청에 따라 비운 병상 수)} -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수)}**

ⓐ (산출방법) : 정부·지자체 지시에 의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확보한 병상(이하 '확보병상')을 기준으로 산출

▸ 감염병전담병원(중등증 병상): 확보 병상(환자치료 사용 시 사용병상 1개당 비운 병상 1개 추가 인정) 및 확보병상을 만들기 위해 소개한 병상(이하 '소개병상')

* 병상확보율(확보병상 / (확보병상 + 소개병상))이 50% 미만인 경우, 확보된 치료병상 수에 맞춰 소개병상 인정

** 코로나19 전담병상을 일반병상으로 전환하여 감축한 병상은 소개병상으로 불인정

***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환자가 사용한 경우 손실보상에서 제외('22.4월부터)

**** (코로나19 확진자 산모에서 출생한 신생아 병상보상) 코로나19 확진자 산모에서 출생한 신생아가 생후 24시간 이내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한 경우, 사용병상 1개당 비운 병상 1개 추가 인정('22.3.2.부터 전담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위하여 확보된 병상에 입원한 경우 해당)

※ 검사기간 인정일수: 생후 24시간 이내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2회 실시한 경우 최대 2일 인정, '22.3.8. 이후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1회 실시한 경우 1일 인정

※ 검사기간 동안 중등증 병상 보상기준 적용,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신생아 상태(중증도)에 따라 병상 보상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긴급치료병상 운영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수(단,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의 의무확보 병상은 미사용시 보상 제외), 긴급치료병상 수

-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환자치료 사용 시 사용병상 1개당 비운 병상 9개 추가 인정하되, '21.12.17.부터는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 재원일수에 따라 차등 보상

* (입원~5일) 사용병상 1개당 비운 병상 13개 추가 인정, (6~10일) 사용병상 1개당 비운 병상 9개 추가 인정, (11일~20일) 사용병상 1개당 비운 병상 5개 추가 인정('21.12.17.~'22.5.7.)

** (입원~5일) 사용병상 1개당 비운 병상 9개 추가 인정, (6~10일) 사용병상 1개당 비운 병상 7개 추가 인정, (11일~20일) 사용병상 1개당 비운 병상 5개 추가 인정('22.5.8.~'22.9.30.)

*** (입원~5일) 사용병상 1개당 비운 병상 6개 추가 인정, (6~10일) 사용병상 1개당 비운 병상 4개 추가 인정, (11일~20일) 사용병상 1개당 비운 병상 2개 추가 인정('22.10.1.~'별도 결정 시까지)

**** 20일 이후 격리해제된 경우에는 미보상 (증상 발생 후 20일 경과 시 격리해제 관련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변경 안내, 방대본-28072(2021.12.14.)호)

- 준-중환자 전담치료병상 : 환자치료 사용 시 사용병상 1개당 병상 4개 추가 인정(~'22.7.31.), 환자치료 사용 시 사용병상 1개당 병상 2개 추가 인정('22.8.1.~별도 결정시까지)

▶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 지정받은 전담치료병상 수에 비례하여 인정

-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 환자치료 사용 시 사용병상 1개당 비운 병상 9개 추가 인정

미사용 시 지정병상 1개당 비운 병상 4개 추가 인정(~'22.9.30.), 미사용 시 지정병상 1개당 비운 병상 1개 추가 인정('22.10.1.~별도 결정시까지)

다만, 사용병상의 경우 '21.12.17.부터는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 재원일수에 따라 차등 보상*

* (입원~5일) 사용병상 1개당 비운 병상 13개 추가 인정, (6~10일) 사용병상 1개당 비운 병상 9개 추가 인정, (11일~20일) 사용병상 1개당 비운 병상 5개 추가 인정('21.12.17.~'22.5.7.)

** (입원~5일) 사용병상 1개당 비운 병상 9개 추가 인정, (6~10일) 사용병상 1개당 비운 병상 7개 추가 인정, (11일~20일) 사용병상 1개당 비운 병상 5개 추가 인정('22.5.8.~'22.9.30.)

*** (입원~5일) 사용병상 1개당 비운 병상 6개 추가 인정, (6~10일) 사용병상 1개당 비운 병상 4개 추가 인정, (11일~20일) 사용병상 1개당 비운 병상 2개 추가 인정('22.10.1.~별도 결정 시까지)

**** 20일 이후 격리해제된 경우에는 미보상 (증상 발생 후 20일 경과 시 격리해제 관련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변경 안내, 방대본-28072(2021.12.14.)호)

- 준-중환자 전담치료병상 : 환자치료 사용 시 사용병상 1개당 병상 4개 추가 인정(~'22.7.31.), 환자치료 사용 시 사용병상 1개당 병상 2개 추가 인정('22.8.1.~별도 결정시까지), 미사용 시 지정병상 1개당 비운 병상 1개 추가 인정(미사용병상 1개 추가 인정은 '21.12.1.~'22.5.7.)

※ (중증환자 퇴실명령) 중증환자 재원 적정성 평가에 따른 퇴실명령 미이행 시 퇴실명령 익일 다음날부터 추가 보상 제외

(전원·전실명령) 코로나19 치료종료 환자 전원·전실명령 미이행 시 전원·전실명령 다음날부터 미보상

ⓑ 정부·지자체의 지시 또는 요청일(지시를 이행한 날)부터 종료일(지정해제일 전일)까지 매일 계산하여 합산

◆ 1일당 병상단가('22년) = {(ⓐ급여진료비) + (ⓑ비급여진료비)} ÷ (진료비 산출연도의 연평균 신고 병상 수) ÷ (ⓒ연간평균 영업일수) × (1 + ⓓ종별 환산지수 증가율)

ⓐ 급여진료비(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포함) = 입원 급여 심사결정액(약제 및 치료재료 제외)* + {외래 급여 심사결정액(약제 및 치료재료 제외) × 입원 관련 외래진료비 비율**}

* '21년 11월 이후 신규 유입 치료의료기관은 '21년, 기존 기관은 '19년 진료비 적용

** 입원 관련 외래진료비 비율 = (입원+외래 중복환자수 ÷ 외래환자수) × 100

ⓑ 비급여진료비 = {상기 ⓐ급여진료비 ÷ 요양기관 종별 보장률(법정본인부담 포함)*} − {상기 ⓐ급여진료비}

* ’21년 11월 이후 신규 유입 치료의료기관은 ’20년, 기존 기관은 ’19년

ⓒ 연간평균 영업일수 = 365일(’19년 이후 개설기관은 개설 이후 영업일수)

ⓓ 종별 환산지수 증가율

(’20년) 종별 환산지수 인상률, (’21년) 10% 인상률, (’22년) 종별 환산지수 인상률

* ’21년부터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의 1일당 병상단가가 종별 평균 병상단가(21년: 상급종합병원 537,324원, 종합병원 316,650원, 병원 161,585원, 22년: 상급종합병원 544,847원, 종합병원 321,083원, 병원 163,847원) 보다 낮은 경우 종별 평균 병상단가로 조정(거점전담병원은 지정일부터 적용)하되,

- 감염병전담병원(전담요양병원 제외), 거점전담병원은 병상단가 인상률(110% 혹은 종별 환산지수 인상률) 적용 이전 1일당 병상 단가의 200%,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은 150%를 초과할 수 없음(평균 병상 단가보다 낮은 의료기관의 인상률 상한 적용은 ’21.7.1부터 시행)

** 중등증병상의 소개병상은 1일당 병상단가로 적용하되, ’21년 8월 이후 운영중인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은 1일당 병상단가가 전국 요양병원 평균 병상단가[76,300원(21년), 77,368원(22년)]보다 낮은 경우 전국 요양병원 평균 병상단가로 조정(’21.7.1부터 시행)

*** 상기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의 병상단가는 병상단가 인상률(110% 혹은 종별 환산지수 인상률) 적용 이전 1일당 병상단가의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소개 병상단가는 ’21년 1일당 병상단가 적용(’21.7.1부터 시행)

※ 1일당 병상단가(**’20년**) = {(ⓐ급여진료비) + (ⓑ비급여진료비)} ÷ (’19년 연평균 신고 병상수) ÷ (ⓒ연간평균 영업일수)

ⓐ 급여진료비(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포함) = {(’19년 입원 급여 심사결정액(약제 및 치료재료 제외)) + (’19년 외래 급여 심사결정액(약제 및 치료재료 제외)) × (입원 관련 외래진료비 비율*)} × (1 + ’20년도 종별 환산지수 증가율)

ⓑ 비급여진료비 = {상기 ⓐ급여진료비 ÷ ’18년도 요양기관 종별 보장률(법정본인부담 포함)} − {상기 ⓐ급여진료비}

※ 1일당 병상단가(**’21년**) = {(ⓐ급여진료비) + (ⓑ비급여진료비)} ÷ (’19년 연평균 신고 병상수) ÷ (ⓒ연간평균 영업일수) × 병상단가 인상률(110%)

ⓐ 급여진료비(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포함) = ’20년도 산정방식과 동일

ⓑ 비급여진료비 = {상기 ⓐ급여진료비 ÷ ’19년도 요양기관 종별 보장률(법정본인부담 포함)} − {상기 ⓐ급여진료비}

❷ **(사용 병상 손실)**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 {(1일당 병상단가) ×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 수)} -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발생한 진료비*}

* 입원+외래(입원 관련), 급여+비급여 수입 포함 / 약제·치료재료 제외

❸ **(일반환자 감소 손실)**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간(지정병원의 경우 운영기간) 동안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진료비 손실

= {(1일당 진료비) × (치료기간) × (1 - 의료기관의 평균 진료비 감소율)} - {(치료기간의 실제 진료비*) + (상기 ❶ + ❷ 보상액)}

* 입원+외래, 급여+비급여 수입 포함 / 약제·치료재료 제외

[세부 산식 (이하 동일)] ·····

◆ **1일당 진료비('22년) = {(ⓐ급여진료비) + (ⓑ비급여진료비)} ÷ (ⓒ연간평균 영업일수)**

ⓐ 급여진료비(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포함) = (급여 심사결정액(약제 및 치료재료 제외)*) × (1 + '20년도 종별 환산지수 증가율) × (1 + 종별 환산지수 증가율)**

* '21년 11월 이후 신규 유입 치료의료기관은 '21년, 기존 기관은 '19년

** '21년 11월 이후 신규 기관은 '22년, 기존 기관은 '20~'22년 증가율 적용

ⓑ 비급여진료비 = {상기 ⓐ급여진료비 ÷ '19년도 요양기관 종별 보장률(법정본인부담포함)} - {상기 ⓐ급여진료비}

* '21년 11월 이후 신규 유입 치료의료기관은 '20년, 기존 기관은 '19년

ⓒ 연간평균 영업일수 = 365일('19년 이후 개설기관은 개설 이후 영업일수)

* 종별 평균 병상단가 조정과 관계없이 개별 의료기관의 진료비 적용

◆ **평균 진료비 감소율**

= {(1일당 진료비) × (월별 일수) - (월별 실제 진료비)} ÷ {(1일당 진료비) × (월별 일수)}

* 종별·월별 적용

* 종합병원급 이상은 코로나19와 무관한(환자치료·폐쇄·업무정지 등 조치기관 제외) 의료기관의 평균 진료비 감소율 적용(상급종합병원은 모두 치료의료기관에 해당하므로 종합병원의 치료-미치료 기관 감소율 차이와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여 미치료 의료기관의 감소율 산출)

※ ‘코로나19 대응 파견인력 지원·운영 지침(이하, 파견인력 지침)’에 의한 파견기간 초과 시점부터 파견인력 수당을 손실보상에서 공제

- (대상) 의사, 간호사 등 중수본에서 파견받은 의료인력(요양보호사는 미공제)
- (공제범위) ‘파견인력 지침’에 따라 지급된 수당(교육·초과근무수당은 제외)

병상가동률	파견인력 수당 공제율	공제시점
-	의사 50%, 간호사 등 의료인력 30%	’21.8월부터 기산, 20차 개산급(’21.11월)부터 적용
-	의사 80%, 간호사 등 의료인력 50%	’22.5월부터 기산, 27차 개산급(’22.6월)부터 적용
50% 이상	의사 80%, 간호사 등 의료인력 50%	’22.8월부터 기산, 30차 개산급(’22.9월)부터 적용
50% 미만	의사 100%, 간호사 등 의료인력 100%	

- (직종별 공제금액)

① 병상가동률 50% 이상 : 의사 16,200천원, 간호사 3,500천원, 간호조무사 1,750천원, 임상병리사 2,750천원, 방사선사 3,125천원

② 병상가동률 50% 미만 : 의사 20,250천원, 간호사 7,000천원, 간호조무사 3,500천원, 임상병리사 5,500천원, 방사선사 6,250천원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추가 보상* : 아래 ❹ + ❺ + ❻ 에 해당하는 손실>

※ 환자치료 등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한 점을 고려하여 추가 보상

❹ **(회복기간 손실)** 전담병원 운영 종료 후 회복기간(최대 12개월(365일) 범위 내) 동안의 진료비 손실

= {(1일당 진료비) × (회복기간) × (1 - 의료기관의 평균 진료비 감소율)} - (회복기간의 실제 진료비*)

* 입원+외래, 급여+비급여 수입 포함 / 약제·치료재료 제외

[세부 산식 (이하 동일)] ·····

◆ **병상 소개율 및 운영 기간에 따른 회복기 손실보상 기간 산출기준**

병상 소개율*	20% 미만	20% 이상~ 50% 미만	50% 이상~ 80% 미만	80% 이상	거점전담병원 전체 소개
운영일수 대비 회복기간 산정비율	운영일수의 50%	운영일수의 100%	운영일수의 150%	운영일수의 200%	운영일수의 200%
최대 보상기간	최대 6개월				최대 1년

- 병상소개율: (확보병상 + 소개병상) / 신고병상(허가병상)

  * 병상소개율 : 전담병원 운영 기간 평균 병상소개율 적용

- 운영일수 : 지정일 ~ 해제 전일 기준

◆ **회복기간 중 재 지정되는 전담병원의 회복기 손실보상 기준**

- 재지정된 전담병원은 회복기 손실보상을 종료하고 병상보상, 일반환자 감소 손실 등 적용
- 재지정 전담병원의 회복 기간은 재지정 후 병상 소개율, 운영일수 등에 따라 재산정함

◆ **진료 규모 변동이 큰 경우 기대진료비(1일당 진료비) 감액 조정**

- 의사 수가 20% 이상 감소(전담병원 지정 전과 비교)한 경우, 의사 수 감소 비율에 비례하게 해당 월에 즉시 기대진료비 감액 조정

  · 다만, 짧은 사전 예고로 지정 해제된 경우 2개월 경과 후 적용

- 전담병원 원상복구 공사 기간을 2주까지만 인정하고, 나머지 공사 기간은 회복기 손실보상 제외하되, 보상기간에 산입

- 영업정지, 폐업 등 의료기관 귀책 사유가 있는 기간만큼 기대진료비 감액 조정

❺ **(의료부대사업 손실)** 전담병원 운영기간 동안의 장례식장, 매점 등 의료부대사업 손실

= {(1일당 영업손실액) × (전담병원 운영일수)} - {(운영기간 매출액) × (총 이익률(%))}

*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세부 산식 (이하 동일)] ·····

◆ **1일당 영업손실액 = ('21년 영업이익+고정비용) ÷ (365일)**

※ ('21년도 지정기관) = ('19년도 영업이익+고정비용) × (1+ '20년 1~12월 평균 물가상승률(0.54%)) ÷ 365일 또는 ('20년도 영업이익+고정비용) ÷ 365일

※ ('22년도 신규 지정기관) '21년 영업손실액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산출이 불가할 경우 '20년 영업손실액 적용 ('21.11월 이후 지정기관은 '22년 산정방식 준용)

* 일반영업장도 상동 (上同)

◆ **총 이익률(%) = ('21년 영업이익+고정비용) ÷ ('21년 매출액) × 100**

◆ **전담병상 확보 행정명령 적용 병원은 '21년 8월분부터, 그 외 병원은 '21년 11월분부터 운영일자별 병상소개율에 따라 구간별 보상비율 적용**

병상 소개율*	20% 미만	20% 이상~50% 미만	50% 이상~80% 미만	80% 이상
보상비율(%)	10	40	70	100

* 병상소개율: (확보병상 + 소개병상) / 신고병상(허가병상)

※ 병상소개율은 전담병원 운영기간 평균적인 병상소개율을 의미

❻ **(건강검진사업 손실)** 전담병원 운영기간 동안 건강검진 수입 감소 등 건강검진사업 손실

※ 제2차 건강검진(21년) 손실보상 지급분부터 적용

= [{(1일당 국가검진수입) × (전담병원 운영일수) × (1 + 해당연도별 검진기관의 종별 평균 검진수입 변동률*) - (운영기간 해당년도 1일당 국가검진수입) × (전담병원 운영일수)} × (1+ 종별 본인부담 검진수입 비율)]× (운영기간 평균 병상소개율**에 따른 보상비율)

* 전년도 대비 평균 검진수입 변동률이 양의 값이면 "0"으로 간주

** 병상소개율 대상기관 해당시 적용

[세부 산식(이하 동일)] ·····

◆ **1일당 국가검진수입 = (국가검진수입*) ÷ (연간평균 영업일수)**

* '21년도 지정기관은 19년 또는 20년 국가검진수입, '22년도 지정기관은 '21년 국가검진수입을 기준으로 산출

◆ **검진기관의 종별 평균 검진수입 변동률 및 종별 본인부담 검진수입 비율**

(단위:%)

항목 / 적용 연도	전년도 대비 평균 검진수입 변동률	
	종합병원	병원
'20년도	△6.1	△4.2
'21년도	10.7	10.4
'22년도	'23.1월 이후 산출	'23.1월 이후 산출

항목 / 적용 연도	(본인부담)/ (건강검진) 비율	
	종합병원	병원
'19년도	46.5	34.5
'20년도	55.7	40.6
'21년도	89.7	66.4

◆ **해당연도 운영기간 실제 국가검진수입 = (1일당 국가검진수입) × 전담병원 운영일수**

◆ **연도별 적용 산식**

○ 21년 운영기관 = [{('19년 또는 '20년 1일당 국가검진수입) × (전담병원 운영일수) × (1 + 20년대비 21년 검진기관의 종별 평균 검진수입 변동률) - {('21년 운영기간 1일당 국가검진수입) × (전담병원 운영일수)} × (1+ '19년 또는 '20년 종별 본인부담 검진수입 비율)]× (운영기간 평균 병상소개율에 따른 보상비율)

◆ **전담병상 확보 행정명령 적용 병원은 '21년 8월분부터, 그 외 병원은 '21년 11월분부터 운영일자별 병상소개율에 따라 구간별 보상 적용.**

병상 소개율*	20% 미만	20% 이상~50% 미만	50% 이상~80% 미만	80% 이상
보상비율(%)	10	40	70	100

* 병상소개율 : (확보병상 + 소개병상) / 신고병상(허가병상)

<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유형별 보상기준('22.10.1.~) >

<table>
<tr><th colspan="3" rowspan="2">유형</th><th rowspan="2">감염병전담
병원
(중등증)</th><th colspan="2">준-중환자전담병상</th><th colspan="3">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th><th colspan="2">거점전담병원</th></tr>
<tr><th>일반병상
개조</th><th>국가지정/
긴급치료병상</th><th></th><th>일반병상
개조</th><th>국가지정/
긴급치료병상</th><th>그 외</th><th>거점소아
전담병원</th></tr>
<tr><td rowspan="6">병상보상</td><td rowspan="5">확보병상*</td><td rowspan="4">사용</td><td rowspan="3">(병상수×
병상단가×2배)
- 실제 진료비[1)]</td><td colspan="2" rowspan="3">(병상수×
병상단가×3배) - 실제
진료비[1)]</td><td>재원
1~5일</td><td>(병상수×
병상단가×7배)
- 실제 진료비</td><td>(병상수×
병상단가×7배)
- 실제 진료비</td><td rowspan="5">병상
유형별
적용</td><td rowspan="5">병상
유형별
적용
('22.3.2.
~4.15.
보상기준)</td></tr>
<tr><td>재원
6~10일</td><td>(병상수×
병상단가×5배)
- 실제 진료비</td><td>(병상수×
병상단가×5배)
- 실제 진료비</td></tr>
<tr><td>재원
11~20일</td><td>(병상수×
병상단가×3배)
- 실제 진료비</td><td>(병상수×
병상단가×3배)
- 실제 진료비</td></tr>
<tr><td colspan="6">1) 실제 진료비 수입은 실제 사용병상 1개에서만 차감, 2) 격리 해제 시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 3)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임상시험 시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td></tr>
<tr><td>미사용</td><td>병상수 ×
병상단가×1배</td><td colspan="2">병상수 ×
병상단가×1배</td><td colspan="2">병상수×
병상단가×2배</td><td>병상수 ×
병상단가×1배</td></tr>
<tr><td colspan="2">소개
병상**</td><td>병상수×
병상단가×1배
(최대 확보병상
수 만큼 인정)</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r>
<tr><td colspan="3">일반환자
감소손실</td><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d>○</td><td>○</td></tr>
<tr><td colspan="3">회복기간 손실</td><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d>○</td><td>(한시적
운영임을
감안)</td></tr>
<tr><td colspan="3">의료부대 사업
및 건강검진
사업 손실</td><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d>○</td><td>-</td></tr>
</table>

* (확보병상 단가) 종별 평균병상단가보다 낮은 경우 전담병원(거점, 감염병)은 병상단가 인상률(110% 혹은 종별 환산지수 인상률) 적용 이전 1일당 병상단가의 200%를 상한 적용하고, 중증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은 1일당 병상단가의 15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은 병원급 평균병상단가 적용(21.7.1부터 시행)

** (감염병전담병원 소개병상 단가) 개별병원 병상 단가 적용, 단,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은 전국 요양병원 평균 병상단가보다 낮은 경우 전국 요양병원 평균 병상단가로 조정(21.7.1부터 시행)

◆ 비수도권 행정명령(감염병전담병원, '21.9.10., 12.10.) 의료기관 보상기준

- ○ (공사기간) 확보병상과 소개병상에 대해 **소개병상 단가 적용**
- ○ (공사완료 후) 확보병상과 소개병상에 대해 **소개병상 단가를 적용하되**, 일반환자 치료병상으로 활용 시 전용된 병상수는 제외
- ○ (운영시작) 이행내역에 따라 **확보병상 및 소개병상 단가 적용**

* **일반환자 감소손실 보상**은 운영시작일부터 인정

2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한 요양기관(법 제70조제1항제3호, 4호)

□ 대상기관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지자체로부터 폐쇄,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요양기관

□ 산정방식

① **(직접비용)**

1) 정부·지자체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소독비용

- 소독명령 중 확진자 발생·경유와 관계없는 예방적 소독*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및 소독 관련 지침에서 권고하고 있는 일반적 소독 외 증기멸균소독은 손실보상에서 제외

  * (예방적 소독) 장기 폐쇄, 확진자 다수 발생 시설 등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도 감염 예방을 위해 수시로 하는 경우

※ 국가가 보상하는 직접비용은 소독비용으로 한정하며, 지자체 자체판단으로 소독 조치 이외 다른 조치명령으로 발생한 비용은 지자체가 보상 책임

2)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중 확진자를 치료한 폐쇄 의료기관의 폐기물 처리비 추가지급

  * 전담병상 운영 중인 치료의료기관 제외(별도 청구)

- (대상기관) 정부·지자체의 코호트 격리 조치명령(공문 등)에 따라 의료기관 폐쇄 중 확진자 치료로 인하여 "코로나 격리의료폐기물"을 배출한 의료기관

  * 확진자 치료로 인한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에 한하며, 일반 접촉자인 환자 및 종사자의 폐기물, "일반 격리의료폐기물"은 코로나 격리의료폐기물 불인정

- (보상항목) 코호트 격리 기간 중 통상의 의료폐기물 비용 대비 증가한 폐기물 처리용역비, 부대비용(전용용기 및 전자태그)

- (보상기간) 조치명령일 기준 '21.11.1. 이후 코호트 조치명령(폐쇄 등)을 받은 의료기관부터 소급 적용

  * 단, 추후 방역대응체계 변경(코호트 미조치)시 보상 제외

- (중복배제) 별도 예산으로 지원되는 항목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 손실보상 대상항목 중 기 지원 확인 시 공제하고 지급

※ (예시) 선별진료소 폐기물처리비, 질병관리청의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비(전담병상과 함께 운영시 사용병상 비율만큼 직접비용 공제), 지자체 지원금 등

※ 지자체 자체 판단으로 소독조치 및 코호트격리 조치 이외 다른 조치명령으로 발생한 비용은 지자체가 보상 책임

② (기회비용) 폐쇄·업무정지기간과 8일 이상 폐쇄·업무정지된 기관에 회복기간(최소 3일~최대 7일) 동안의 진료(영업)비 손실 보상

1) (의료기관) = (1일당 진료비) × (명령이행기간)

※ **전체폐쇄 또는 업무정지** 의료기관의 **의료부대시설**(장례식장, 주차장, 매점 등) 손실도 보상

※ 코호트격리, 폐쇄 등으로 해당 기간 실제 발생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차감 후 보상

[세부 산식(이하 동일)] ·····

◆ **1일당 진료비 = {(ⓐ급여진료비) + (ⓑ비급여진료비)} ÷ (ⓒ연간평균 영업일수)**

ⓐ 급여진료비(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포함) = ('21년 급여 심사결정액(약제 및 치료재료 제외)) × (1 + '22년도 종별 환산지수 인상률)

* '21년 전체 심사결정금액 산출이 불가한 시기의 조치명령의 경우 '21년도 산출 가능한 진료비 반영

ⓑ 비급여진료비 = {상기 ⓐ급여진료비 ÷ '20년도 요양기관 종별 보장률(법정본인부담 포함)} - {상기 ⓐ급여진료비}

ⓒ 연간평균 영업일수 = 365일('21년 이후 개설은 '21년 영업일수)

* 다만, 입원실이 없는 의원급의 경우 법정 공휴일은 보상 제외하되, 예외적으로 법정공휴일 근무 사실을 입증할 경우 법정공휴일 포함하여 산정

※ 1일당 진료비**('21년 조치명령)**

ⓐ 급여진료비(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포함) = ('19년 급여 심사결정액(약제 및 치료재료 제외)) × (1 + '20년도 종별 환산지수 증가율) × (1 + '21년도 종별 환산지수 증가율)

* '19년 1일당 진료비를 기준으로 하되, '20년 진료비가 더 높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심사

ⓑ 비급여진료비 = {상기 ⓐ급여진료비 ÷ '19년도 요양기관 종별 보장률(법정본인부담포함)} - {상기 ⓐ급여진료비}

※ 1일당 진료비**('20년 조치명령)**

ⓐ 급여진료비(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포함) = ('19년 급여 심사결정액(약제 및 치료재료 제외)) × (1 + '20년도 종별 환산지수 증가율)

ⓑ 비급여진료비 = {상기 ⓐ급여진료비 ÷ '18년도 요양기관 종별 보장률(법정본인부담포함)} - {상기 ⓐ급여진료비}

◆ **명령이행 기간**

- (1일 이하인 경우) 영업시간(9:00~21:00) 내의 명령이행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0.5일, 5시간 이상인 경우 1일로 산정
- (1일 초과인 경우) 명령이행 시작일과 종료일을 각각 상기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시작일과 종료일 시간의 합이 5시간 미만인 경우 총 0.5일로 산정

2) (약국) = (1일당 영업손실액) × (명령이행기간)

※ 방역지침 상 시설 소독 후 환기시간이 최대 1일임을 고려하여 '22년 조치명령부터 최대 **1일 보상**

- 다만, 약국 내 집단감염 등 확진자가 연속하여 발생한 경우 지자체에서 일별 확진자 발생현황, 역학조사서 등 해당내용 증빙 시 예외적으로 1일 초과 보상 인정

[세부 산식 (이하 동일)] ·····

◆ **약국의 1일당 영업손실액 = ('21년 영업이익+고정비용) ÷ (연간평균 영업일수*)**

* 법정 공휴일 제외한 영업일수이며, 예외적으로 법정공휴일 중 근무 사실을 입증할 경우 영업일을 365일로 계산

** (예외적용) ('20년도 영업이익+고정비용) × (1 + '21년 1~12월 평균 물가 상승률(2.5%)) ÷ (연간평균 영업일수)

※ ('21년도 조치명령) : ('19년도 영업이익+고정비용) × (1+ '20년 1~12월 평균 물가 상승률(0.54%)) ÷ (연간평균 영업일수) 또는 ('20년도 영업이익+고정비용) ÷ (연간평균 영업일수)

* '19년도, '20년도 중 유리한 영업이익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음

3) (회복기간 손실) 8일 이상 전체 폐쇄·업무정지된 요양기관에 한하여 **회복기간**(최소 3일~최대 7일) **동안의 진료(영업)비 감소분** 보상

- **(산정방식)**
  - **(의료기관)** = {(1일당 진료비) × (회복기간) × (1 - 의료기관의 평균 진료비 감소율)} - (회복기간의 실제 진료비*)

    * 입원+외래, 급여+비급여 수입 포함 / 의약품·치료재료 미포함

  - **(약국)** = {(1일당 영업손실액) × (회복기간) × (1 - 약국의 평균 급여비 감소율)} - {(회복기간의 실제 매출액) × (총 이익률(%))}

[세부 산식(이하 동일)] ·····

◆ **회복기간 = (폐쇄·업무정지기간) - (5일) ※ 단, 최소 3일 ~ 최대 7일**

* 폐쇄·업무정지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산입하며, 입원실이 없는 의원 및 약국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보상 제외(다만, 예외적으로 법정공휴일 중 근무 사실을 입증할 경우 보상)

ex) 폐쇄·업무정지 기간이 9일(1일~9일)인 경우, 회복기간은 4일(10일~13일)

◆ **(의료기관) 평균 진료비 감소율**

= {(1일당 진료비) × (월별 일수) - ('22년 월별 실제 진료비)} ÷ {(1일당 진료비) × (월별 일수)}

* 종별·월별 적용

* 종합병원급 이상은 코로나19와 무관한(환자치료·폐쇄·업무정지 등 조치기관 제외) 의료기관의 평균 진료비 감소율 적용(상급종합병원은 모두 치료의료기관에 해당하므로 종합병원의 치료-미치료 기관 감소율 차이와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여 미치료 의료기관의 감소율 산출)

◆ **(약국) 평균 급여비 감소율**('20년도 매출자료 기준)

= {('20년 급여 심사결정액) ÷ (연간평균 영업일수*) × (월별 일수) × (1 + '21년 약국 환산지수 증가율) - ('21년 월별 급여 심사결정액)} ÷ {('20년 급여 심사결정액) ÷ (연간평균 영업일수*) × (월별 일수) × (1 + '21년도 약국 환산지수 증가율) × (1 + '22년도 약국 환산지수 증가율)

* 법정 공휴일 제외한 영업일수이며, 예외적으로 법정공휴일 중 근무 사실을 입증할 경우 영업일을 365일로 계산

** 월별 적용

3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요양기관(법 제70조제1항제5호)

□ 대상기관

○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경유하거나 정부·지자체에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그 사실을 공개하여 손실이 발생한 요양기관

□ 산정방식

① **(직접비용)** 정부·지자체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소독비용**

- 소독명령 중 확진자 발생·경유와 관계없는 예방적 소독*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및 소독 관련 지침에서 권고하고 있는 일반적 소독 외 증기멸균소독은 손실보상에서 제외

* (예방적 소독) 장기 폐쇄, 확진자 다수 발생 시설 등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도 감염 예방을 위해 수시로 하는 경우

※ 국가가 보상하는 직접비용은 소독비용으로 한정하며, 지자체 자체판단으로 소독조치 이외 다른 조치명령으로 발생한 비용은 지자체가 보상 책임

② **(기회비용)** 장소공개 여부, 의사·약사·조산사의 격리 여부 및 운영형태별 구분

※ 조치명령이 2개 이상 중복된 경우, 중복된 기간은 금액이 큰 쪽으로 보상, 중복되지 않은 기간은 각각 산정된 금액으로 보상

1) 확진자 발생·경유하였으나 **장소가 공개되지 않은 경우**

ⓐ 정부·지자체의 **소독명령 이행에 따른 진료(영업)비 손실**

= {1일당 진료비(영업손실액)} × {명령이행기간}

2) 확진자 발생·경유로 **장소가 공개된 경우**

ⓐ 정부·지자체의 **소독명령 이행에 따른 진료(영업)비 손실**

ⓑ 장소공개로 인하여 **일정기간 환자감소로 발생한 손실**

※ 환자진료가 아닌 여행 등 개인적 사유로 확진되어 장소가 공개된 경우 제외

- **(의료기관)** = {(1일당 진료비) × (7일(정보공개일 당일 포함)) × (1 - 의료기관의 평균 진료비 감소율)} - (7일 동안의 실제 진료비*)

* 입원+외래, 급여+비급여 수입 포함 / 약제·치료재료 제외

- (약국) = {(1일당 영업손실액) × (7일(정보공개일 당일 포함)) × (1 - 약국의 평균 급여비 감소율)} - {(7일 동안의 실제 매출액) × (총 이익률(%))}

3) 확진자 발생·경유로 **전체 의사·약사·조산사**가 **입원·격리조치, 휴업한 경우**

※ 의사·약사의 입원·격리 조치에 따라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요양기관 내에서 환자진료* 등 사유로 한정하며, 여행 등 개인적 사유로 입원·격리 조치된 경우 제외)

* 의료기관·약국에서 확진자(의심자) 명단을 지자체에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확진자 확인하여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등록

※ 입원·격리 시작일 혹은 종료일에 실제진료비/매출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해당 일자 휴업보상은 0.5일 반영(다만, 의료기관의 경우 외래만 운영하는 경우 적용)

ⓐ 휴업기간 동안의 **진료(영업)비 손실**

= {(1일당 진료비(영업손실액)) × (휴업일수)}

ⓑ 장소가 공개된 경우, 장소공개로 인하여 **일정기간(정보공개후 7일) 환자감소로 발생한 손실** (상기 2)의 ⓑ와 동일)

ⓒ 격리기간 중 BCP*(Business Contuity Plan 업무연속성계획)에 따른 진료(영업)비 손실

= {(1일당 진료비(영업손실액)) × (보상일수**)} - (격리기간 실제진료비 수입)

* 병원내 의료인 감염증가로 진료기능 유지를 위한 업무연속성 계획으로 격리기간 중 단계적으로 근무를 허용하고 있음

** 격리통지서의 격리기간, 공휴일 제외

4) 확진자 발생·경유로 **전체 의사·약사·조산사**가 **입원·격리조치, 대체인력 고용**한 경우

※ 의사·약사·조산사의 입원·격리 조치에 따라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요양기관 내에서 환자진료 등 사유로 한정하며, 여행 등 개인적 사유로 입원·격리 조치된 경우 제외)

ⓐ 대체 의사·약사·조산사의 **인건비**

ⓑ 장소가 공개된 경우, 장소공개로 인하여 **일정기간(정보공개후 7일) 환자감소로 발생한 손실** (상기 2)의 ⓑ와 동일)

5) 확진자 발생·경유로 **일부 의사·약사·조산사**가 **입원·격리조치된 경우**

※ 의사·약사의 입원·격리 조치에 따라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요양기관 내에서 환자진료 등 사유로 한정하며, 여행 등 개인적 사유로 입원·격리 조치된 경우 제외)

※ 입원·격리 시작일 혹은 종료일에 실제진료비/매출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해당 일자 휴업보상은 0.5일 반영(다만, 의료기관의 경우 외래만 운영하는 경우 적용)

○ **(대상)** 의사·약사·조산사 **격리비율이 50% 이상**이면서 격리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기간 동안의 **진료(영업)비 감소율이 70% 이상**인 경우

○ **(산정방식)** 격리 조치로 인한 진료(영업)비 손실을 보상

- **(대체인력 고용한 경우)** 의사·약사·조산사 **격리비율이 50% 이상**일 때 대체인력 고용 시에는 **진료(영업)비 감소율에 무관**하게 **인건비 보상**(진료비 감소분은 별도 보상하지 않음)

- **(휴업한 경우)** 진료(영업)비 손실 중 격리된 의사·약사·조산사 비율만큼 보상

  = (1일당 진료비(영업손실액)) × (휴업일수) × (격리된 의사·약사·조산사 비율)

- **(휴업하지 않은 경우)** 실제 진료(영업)비 수입을 차감한 진료(영업)비 손실을 보상 (평균 진료비 감소율은 차감)

  · **(의료기관)** = (1일당 진료비) × (격리 중 영업기간) × (1 - 의료기관의 평균 진료비 감소율) - (격리 중 영업기간 동안의 실제 진료비)

  · **(약국)** = (1일당 영업손실액) × (격리 중 영업기간) × (1 - 약국의 평균 급여비 감소율) - (격리 중 영업기간 동안의 실제 매출액 × 총이익률(%))

4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법 제70조제1항제1호)

□ 대상기관

○ 코로나19 확진환자 중 경증·무증상 환자 대상 격리·치료를 위하여 설치·지정한 생활치료센터*에 의료인력을 파견한 의료기관

* 감염병예방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요양소

□ 산정방식

① **(직접 비용)**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필요한 보호구·검사물품 등 **소모품 구입, 시설임차 및 운영비** 등은 예산 지원 중으로 손실보상 제외

② **(기회 비용)** 의료인파견 등 진료지원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료비 손실**

* 1의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의 경우 ❸일반환자 감소 손실에 포함하여 보상

** 5의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은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인한 손실과 생활치료센터 진료지원으로 인한 손실을 각각 더하여 100% 범위 내에서 보상

= {(1일당 진료비) × (파견기간) × (파견의사수 ÷ 전체의사수) × (1 - 의료기관의 평균 진료비 감소율)} - (생활치료센터 진료비 수입*)

* 입원+외래, 급여+비급여 수입 포함 / 약제·치료재료 제외

5 선별진료소 운영병원(법 제70조제1항제1호)

□ 대상기관

○ 감염병 의심환자를 선별하기 위한 격리된 진료공간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의료기관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병원

* 선별진료소 현황 및 운영시간 등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등록한 의료기관

□ 산정방식

① **(직접 비용)**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 구입·대여 비용, 소모품비(폐기물처리 용역비, 폐기물전용용기 포함) 등에 대하여 예산 지원(질병관리청) 중으로 손실보상에서 제외

② **(기회 비용)** 선별진료소 운영기간 동안 ①**외래 기대 진료비 손실분의 전체(100%) + ②입원 기대 진료비 손실분의 50%***

※ '22.8.1.부터 선별진료소 손실보상 지급 중단

* △선별진료소 운영시, 외래환자 감소에 따른 **입원환자 감소 영향은 일부**일 수 있는 점, △**환자치료기관 - 미치료 의료기관간 차등적 보상 필요** 등 종합적으로 고려

** 1의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의 경우 ❸일반환자 감소 손실에 포함하여 보상

= {(전체 진료비 감소액) × (입원 진료비 감소액 비중) × 50%} + {(전체 진료비 감소액) × (외래 진료비 감소액 비중) × 100%}

[세부 산식 (이하 동일)] ·····

◆ **전체 진료비 감소액**

= {(1일당 진료비) × (선별진료소 운영기간) × (1 - 평균 진료비 감소율)} - (선별진료소 운영기간의 실제 진료비(약제 및 치료재료 제외))

* 입원 진료비 감소분 및 외래 진료비 감소분도 동일 산식 적용

◆ **입원(또는 외래) 진료비 감소액 비중**(100%를 넘는 경우 100%로 산정)

= 입원(또는 외래) 진료비 감소액 ÷ 전체 진료비 감소액

요양기관 이외

6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등(법 제70조제1항제4호)

□ 대상기관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경유하여 정부·지자체로부터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일반영업장 등

*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제2호로 인한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등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산정방식

① **(직접비용)** 정부·지자체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소독비용**

- 소독명령 중 확진자 발생·경유와 관계없는 예방적 소독*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및 소독 관련 지침에서 권고하고 있는 일반적 소독 외 증기멸균소독은 손실보상에서 제외

* (예방적 소독) 장기 폐쇄, 확진자 다수 발생 시설 등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도 감염 예방을 위해 수시로 하는 경우

※ 국가가 보상하는 직접비용은 소독비용으로 한정하며, 지자체 자체판단으로 소독조치 이외 다른 조치명령으로 발생한 비용은 지자체가 보상 책임

② **(기회비용) 폐쇄·출입금지·소독(소독후 휴업)** 등에 따른 **휴업 손실**

= {1일당 영업손실액} x {명령이행기간}

▣ 영업시간 내 조치명령 이행의 경우만 기회비용 보상 대상이며, 영업시간 외 조치 건은 기회비용 미대상임

※ 방역지침 상 시설 소독 후 환기시간이 최대 1일임을 고려하여 '22년 조치명령부터 최대 **1일 보상**

- 다만, 영업장 내 집단감염 등 확진자가 연속하여 발생한 경우 지자체에서 일별 확진자 발생현황, 역학조사서 등 해당내용 증빙 시 예외적으로 1일 초과 보상 인정

※ 일부폐쇄조치 등으로 해당 기간 실제 매출액이 있을 경우 차감 후 보상 또는 해당 구역에 대한 손실액 산정

[세부 산식(이하 동일)] ·····

◆ **1일당 영업손실액 = ('21년 영업이익+고정비용) ÷ (365일)**

* (예외적용) ('20년도 영업이익+고정비용) × (1 + '21년 1~12월 평균 물가 상승률(2.5%)) ÷ 365일

※ ('21년도 조치명령) : ('19년도 영업이익+고정비용) × (1+ '20년 1~12월 평균 물가 상승률(0.54%)) ÷ 365일 또는 ('20년도 영업이익+고정비용) ÷ 365일

* '19년도, '20년도 중 유리한 영업이익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음

◆ **명령이행 기간**

- 실제 영업시간 내에서 조치 이행시간에 따라 명령이행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0.5일, 5시간 이상인 경우 1일로 산정

* 예외적으로 1일(24시간) 초과 보상 인정 시, 12시간 단위로 0.5일씩 가산하여 산정

※ 청구인은 상기 산식의 **일반지급절차**와 **간이·정액 지급절차*** 중 **선택 가능**

* (간이·정액지급절차) **매출증빙자료 등 별도 입증서류 제출 불요,** 폐쇄·업무정지·소독 등의 조치기간에 관계없이 **정액(100,000원) 지급**

7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사회복지시설(법 제70조제1항제4호)

□ 대상기관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경유하여 정부·지자체로부터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사회복지시설*

* 급여비 손실 등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직접비용(소독비용)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외의 사회복지시설도 대상으로 함

□ 산정방식

① **(직접 비용)** 정부·지자체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소독비용**

- 소독명령 중 확진자 발생·경유와 관계없는 예방적 소독*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및 소독 관련 지침에서 권고하고 있는 일반적 소독 외 증기멸균소독은 손실보상에서 제외

* (예방적 소독) 장기 폐쇄, 확진자 다수 발생 시설 등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도 감염 예방을 위해 수시로 하는 경우

※ 국가가 보상하는 직접비용은 소독비용으로 한정하며, 지자체 자체판단으로 소독조치 이외 다른 조치명령으로 발생한 비용은 지자체가 보상 책임

② **(기회 비용) 지자체 조치(폐쇄 등)**로 인한 **서비스 미이용자의 급여비** 및 **상급침실이용료**(비급여) 손실

※ 어린이집, 정부·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제외

= (Ⓐ미이용자의 급여비 손실) + (Ⓑ상급침실이용료 손실)

[세부 산식 (이하 동일)] ·····

◆ 미이용자의 급여비 손실

= {(미이용자(명)) × (1일당 급여비) × (명령이행기간) × (1 - 시설유형별 변동비용비율*)} - {미이용자의 급여비 등 정부지급액**}

* 기존 이용자의 시설 미이용에 따른 변동비용의 감소 반영

** 외박비용, 미이용 급여비용 등 미이용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비 등

【시설 유형별 변동 비용 비율(장기요양기관 패널 경영실태조사 결과 적용)】 (단위:%)

시설유형 / 적용연도 (조사연도)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2020년(2018년)	9.9	13.6	13.7	16.1
2021년(2019년)	8.9	12.4	13.4	15.3
2022년(2020년)	11.3		13.3	15

* 단기보호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은 모두 재가급여인 특성을 고려, 재가급여 통합비율(11.3%) 적용

◆ 상급침실이용료 손실

= (상급침실 미이용자(명)) × (기관의 1일당 상급침실이용료) × (명령이행기간)

③ **(회복기간 손실) 8일 이상 전체폐쇄·출입금지 명령**을 이행한 장기요양기관 중 **해제 후 이용자** 또는 **장기요양수입**이 **감소**된 경우* 최소 3일에서 **최대 7일까지 회복기간**(폐쇄·출입금지 기간 - 5일) 급여비 손실분 보상

* **(전제조건)** 폐쇄·출입금지 개시 월 대비 해제 월* ① **이용자 수 감소** 또는 ② **장기요양수입**이 **감소**된 경우 (* 해제 월이 개시월과 동일한 경우 익월로 비교)

= (명령이행기간 미이용자 평균 1일당 급여비) × (최소 3일 ~ 최대 7일)

- 적용시기: **'21년 11월 조치명령부터 적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서비스 미이용자 급여비 등) 활용으로 자료 제출 불요

8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법 제70조제1항제1의2호)

□ 대상기관

○ 감염병환자 등과의 접촉자, 검역관리 지역 등에 체류하거나 경유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등 감염병 의심자를 격리하는 시설(예, 접촉자 격리시설, 임시생활(검사)시설 등)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가 감염병예방법 제39조의3에 따라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하고, 해당 시설 주체가 격리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

* 현재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운영은 해당 시설 주체와 계약(협의)으로 시설을 임차하고, 임차료 지급 등을 통해 예산지원 중이므로, 손실보상 대상 아님

* 시설 내 부대시설의 경우 격리시설로 직접 활용된 시설이 아니며, 시설 주체(임대인)과 부대시설(임차인)간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대시설에 대해 임대인의 의무(민법 제623조)를 이행할 사항으로 손실보상 대상 아님

□ 산정방식

① **(직접 비용)** 격리시설 **설치·운영에 소요된 직접 비용**

② **(기회 비용)** 기관을 **원래 목적대로 운영하지 못해 발생된 손실**

9 의료인 등의 동원, 오염된 물건·음식물 폐기(법 제70조제1항제4호)

① **(인건비) 동원기간 동안의 인건비**

= {1일당 인력 인건비} × {동원된 일수}

*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예산 지원 중

② **(폐기물건 등 평가액)** 폐기, 소각 등 처분된 음식물, 물건의 **평가액**

* 폐기비용은 보상대상 아님(규정 없음)

Chapter

III

손실보상 대상기관 및 청구(접수)기관

Ⅲ. 손실보상 대상기관 및 청구(접수)기관

1 손실보상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지자체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관할 지역 내 병상확보, 폐쇄·업무정지, 소독 등 **조치하여 손실이 발생한 기관** ('붙임25 손실보상 대상 및 범위 관련 법령' 참조)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기관**>

① **(자발적 조치기관)** 정부·지자체의 강제적 조치가 아닌 **자발적으로 소독, 휴업 등 자체 조치한 기관**

② **(예방적 조치기관)** 정부·지자체가 법 제4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11호, 제14호에 따라 **집합제한** 등 **예방적으로 조치한 기관**

< 손실보상 대상기관 유형 분류 >

○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및 방역 협력의료기관**

- **(환자 치료의료기관)**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긴급치료병상 운영병원,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준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 기타 치료의료기관

- **(방역 협력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한 기관 등**

- **(요양기관)**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 및 소독 등 조치하거나, 환자발생·경유하거나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 **(일반영업장)**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 및 소독 등 조치한 음식점, 숙박업소, 상점(슈퍼마켓, 편의점, 정육점, 서점, 문구점 등) 등

- **(사회복지시설)**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 및 소독 등 조치한 노인요양시설 등

2 손실보상 대상기관별 청구(접수)기관

<손실보상 대상기관별 청구(접수)기관>

구 분	손실보상 대상유형 (p6 참고)		청구(접수)기관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및 방역 협력의료기관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긴급치료병상 운영병원,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 준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한 의료기관	1 4 5	→	보건복지부 (심평원)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한 기관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2 3 6 7	→	지자체 (시군구)

○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및 방역 협력의료기관**
→ 보건복지부(심평원)에 청구

- 환자치료를 위한 음압병상 설치·운영에 따른 의료장비·소모품, 의료인력 투입 등 확인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전년도 건강보험 급여진료비 등으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므로,

- 요양기관 진료비 심사 전문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직접 손실보상청구서를 접수하여 1차 검토**

○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한 기관 등 → 지자체(시군구)에 청구**

- **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소독 및 자가격리 등 행정조치**를 하였고, 이에 대한 **사실확인이 가능**하므로,

- **지자체가 손실보상청구서를 접수하여 1차 검토**
  * 조치사유 및 내용, 이행여부, 장소공개 여부 등

※ 처분 담당부서에서 통보받은 “방역수칙 위반 등 손실보상 제한 사유 관련 처분(처벌)내용”을 확인하여 입력 조치

※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및 방역 협력의료기관**이더라도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은 지자체(시·군·구)**에 청구

Chapter Ⅳ

손실보상 처리절차

Ⅳ. 손실보상 처리절차

대상기관 선정 및 사전 안내		청구서 작성 및 제출		접수·검토 및 제출		심 사		결 정		지 급
지자체 (시군구)	➤	청구인	➤	지자체(시군구), 심평원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손해사정사회)	➤	보건복지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	보건복지부

※ 결정·지급된 손실보상금 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 증빙)

1 대상기관 선정 및 사전 안내 : 지자체(시·군·구)

◇ 손실보상 대상은 정부·지자체의 조치에 따라 발생한 손실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자체가** 관할 지역 내 병상확보, 폐쇄·업무정지, 소독 등 **조치하고,** 그 조치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므로, **지자체가 손실보상 대상여부 및 손실규모 확인** 가능

◇ 따라서,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기관의 무분별한 청구 및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지자체가 손실보상 대상기관을 우선 선정**한 후 **선정된 대상기관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

○ 지자체(시군구)는 그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조치한 기관 중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대상기관별 손실보상 청구서류를 포함하여 사전 안내 (서면, 문자, 이메일, 팩스 등)**

(붙임8 '손실보상 청구안내문' 참조)

※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8조의2**(손실보상금의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90호)에 따라 **방역지침 준수 명령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처벌(예정사항 포함)을 받은 경우 손실보상 지급 제외 내지 감액 지급될 수 있음"**(처분 예정시 지급보류)을 안내

※ '**영업시간 외 보건소에서 직접 소독한 기관**'은 손실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음을 **사전 안내**하고, 손실보상 **청구는 하지 않도록 안내**('붙임22 영업시간 외 보건소에서 직접 소독한 경우 손실보상 업무처리' 참조)

<손실보상금 청구 사전안내 유사사례>

► **(대상사업)** 가축전염병 생계안정비용(가축전염병예방법)

► **(지원대상)**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지자체의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명령 또는 도태 명령을 이행한 자

► **(사전안내절차) 시군구가** 생계안정비용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지원대상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 → 지원대상은 시군구에 지원 신청서 제출

2 청구서 작성 및 제출 : 청구인(청구기관)

[대상기관별] 손실보상 청구서류

○ 대상기관의 청구인은 **손실보상청구서** 및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시군구)/의료기관**(코로나19 환자치료 의료기관 직접비용 및 의료부대사업, 건강검진 등)**에 제출**

※ 세부 증빙서류 안내는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분</th><th colspan="2">요양기관</th><th rowspan="2">일반영업장</th><th rowspan="2">사회복지시설</th></tr>
<tr><th>의료기관</th><th>약국</th></tr>
<tr><td colspan="2">신청서
(공통)</td><td colspan="4">[공통]
○손실보상청구서(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붙임1]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붙임2]
○손실보상 청구 위임장 [붙임3]</td></tr>
<tr><td rowspan="2">증빙서류</td><td>청구인</td><td colspan="4">[공통]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 폐쇄 등 조치명령 근거(공문, 명령서, 사후확인공문*)
*구두 조치명령 등 당시 근거가 문서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지자체가 '조치명령 했음(조치명령 일자 및 내용, 이행기간 등 기재)'을 사후에 확인하는 내부결재 공문
○소독 조치이행 근거(소독증명서, 소독비용 영수증 등)
※ 보건소가 직접 소독한 경우 손실보상 대상 아니므로, 서류 제출 불필요
※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의 소독비용을 신청할 경우 확진자 발생일에 대한 증빙자료 추가 제출
○손실보상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td></tr>
<tr><td colspan="4">[대상기관 유형별]
<table><tr><td><의료기관>
○요양기관 확인서 [붙임4]
※진료비 손실 근거 : 별도 제출 불필요(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 활용)</td><td><약국, 일반영업장>
○요양기관 확인서 [붙임4]
※일반영업장은 제출 불필요
○사업자등록증
※폐업시 폐업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증 제출 불필요)
○지급절차 동의서 [붙임11]
○영업손실 근거: 매출액 및 고정비 관련 서류
※영업시간 외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한 경우 이하 서류 제출 불필요
① 표준재무제표증명
※ 표준재무제표 제출 시 고정비 증빙 불요
①—1 표준재무제표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 (매출액)</td><td><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서비스미이용자 조사표 [붙임7]
○급여비 손실근거 별도 제출 불필요
※장기요양급여 수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 등 활용
○미이용자 근거
※공문, 입원·격리통지서 등</td></tr></table></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분</th><th colspan="2">요양기관</th><th rowspan="2">일반영업장</th><th rowspan="2">사회복지시설</th></tr>
<tr><th>의료기관</th><th>약국</th></tr>
<tr><td colspan="2"></td><td></td><td>·(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간이과세자) 사업소득명세가 포함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고정비) 해당되는 고정비 증빙서류 제출하되, 증빙서류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유사업종 표준고정비 적용
② 당해년도 신규사업장
- 약국
· (매출액) 약국의 모든 매출내역이 확인되는 매출장(조제약+일반의약품 전체 판매내역, 카드+현금 판매내역이 모두 포함된 매출관리프로그램(POS, EDI, 기간별 조제현황 자료 등) 첨부)
· (고정비) 위와 동일
- 일반영업장
· (매출액) 월별 매출장(개업월부터 폐쇄·업무정지 종료월까지)
· (고정비) 위와 동일</td><td></td><td>○미이용자 상급 침실 이용근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본 또는 기타 증빙서류, 실제 지급받은 통장거래 내역 등
○ 등급외자 근거
※계약서,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 부본 및 공단 정보시스템 입·퇴소 등록 내역 등)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폐업시 폐업사실 증명원(사업자등록증 제출 불필요)</td></tr>
<tr><td colspan="2"></td><td><분할지급 신청 의료기관>
○분할지급 신청서 [붙임6]
※ 8일 이상 폐쇄·업무정지 조치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td><td rowspan="2">-</td><td><간이·정액 지급절차 선택 일반영업장>
○사업자등록증
○지급절차 동의서 [붙임11]
※영업손실 근거는 별도 제출 불필요</td><td rowspan="2">-</td></tr>
<tr><td colspan="2"></td><td><전담병원, 전체폐쇄 의료기관 의료부대사업>
※ 의료기관이 각 영업장별 증빙서류를 취합하여 제출
○손실보상청구서(의료기관)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의료기관, 위탁·임대 영업장)
○사업자등록증(의료기관, 위탁·임대 영업장)
※ 폐업시 폐업사실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제출 불필요)</td></tr>
</table>

구분	요양기관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위탁·임대계약서 ○일별매출장(전담병원 지정 및 전체폐쇄조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영업 손실 근거 : 매출액 및 고정비 관련 서류 ※약국, 일반영업장과 동일 ○ 부대사업장 개설 신고증명서(의료법인)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 전담병원 운영기간 중 부대사업장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휴·폐업 사실 확인서 [붙임5] ○ 손실보상 제한 대상인 경우 관련 서류			
	<전담병원 건강검진 손실보상> ○ 손실보상청구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검진기관지정서(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요양기관(검진기관) 확인서 [붙임4] ○ 손실보상 제한 대상인 경우 관련 서류			
	<치료의료기관 직접비용> ○손실보상청구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요양기관(직접비용) 확인서 [붙임4] ○ 시설철거비 ※지정해제(병상조정 포함) 공문, 공사 계약서, 영수증, 철거전·후 비교사진, 공사전·후 도면			

구분	요양기관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 환자전원비 ※ 일반환자 소개명령 공문, 영수증, (원외차량 이용시) 구급차 실비 영수증, (원내차량 이용시) 운행기록 확인 가능한 구급차 운행기록 등 ○ 폐기물처리 용역비(용역비 계약서류) ○ 폐기물처리 부대비용 ※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구입증빙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코호트격리 중 확진자 치료 폐쇄의료기관 직접비용> ○ 손실보상청구서[붙임1]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2] ○ 요양기관(직접비용) 확인서[붙임4] ○ 역학조사서, 코호트격리 관련 보고서 등 ○ 코호트격리(폐쇄) 지자체 공문(기간명시, 확진자 치료 확인) ○ (폐기물처리비 증빙서류) ① 용역비 관련 계약서류 일체 및 지출내역(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등) ② 코로나19 폐기물 전용용기 구입내역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 폐기물종류, 배출일자, 폐기중량, 태그수 등 폐기물 관련 자료는 한국환경공단 'allbaro 시스템'을 활용하여 산출하므로 제출 불요			
	<장소공개 요양기관> ○(의료기관) 별도 제출 불필요 *심평원 청구자료 활용 ○(약국) 일별 매출장(정보공개일(당일)부터 7일까지) * 약국의 모든 매출 내역이 확인되는 매출장(조제약+일반의약품 전체 판매내역, 카드+현금 판매내역이 모두 포함된 매출관리 프로그램(POS, EDI, 기간별 조제현황 자료 등) 첨부)		-	-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분</th><th colspan="2">요양기관</th><th rowspan="2">일반영업장</th><th rowspan="2">사회복지시설</th></tr>
<tr><th>의료기관</th><th>약국</th></tr>
<tr><td rowspan="4"></td><td rowspan="2"></td><td colspan="2"><8일 이상 폐쇄·업무정지 요양기관>
○(의료기관) 별도 제출 불필요 *심평원 청구자료 활용
○(약국) 일별 매출장(폐쇄·업무정지 종료일 다음날부터 7일까지)
* 위와 동일</td><td rowspan="3">-</td><td rowspan="3">-</td></tr>
<tr><td colspan="2"><의사·약사·조산사 입원·격리 요양기관>
○(환자진료에 따른) 의사·약사·조산사의 입원·격리 시 입원·격리 근거(공문, 통지서)
※ (촉탁의·지도의사 등) 근로계약서, 근무표·역학조사서 등
○(환자진료에 따른) 의사·약사·조산사의 입원·격리기간 동안 대체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급 근거(고용계약서 및 지출을 증빙하는 통장거래내역 등)
○(일부 약사 입원·격리 시) 일별 매출장(입원·격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 위와 동일</td></tr>
<tr><td rowspan="2">지자체</td><td colspan="2"><장소공개 요양기관>
○(확진자 동선 공개에 따른) 장소공개 근거(공문, 지자체 홈페이지 화면, 역학조사서, 사후확인공문*, 지자체 브리핑 자료, 홈페이지 로그기록 등)
* 장소공개 당시의 근거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지자체가 장소공개 했음(대상기관, 공개일 기재)을 사후에 확인하는 내부결재 공문</td></tr>
<tr><td rowspan="2"></td><td colspan="2"><의사·약사·조산사 입원·격리 요양기관>
○(청구인이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조치명령 근거(공문, 명령서), 입원·격리 통지서</td><td rowspan="2"></td><td rowspan="2"></td></tr>
<tr><td colspan="2"><손실보상 제한관련 처분 등 서류>
○손실보상 제한(지급제외, 감액) 근거가 될 수 있는 지자체의 처분 및 처벌 관련 증빙서류</td></tr>
</table>

구분		요양기관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청구인		<표> 고정비 지출 증빙서류			
		고정비용 계정	표준재무제표증명이 불가능한 약국, 일반영업장 (기존사업자)	당해년도 신규 개설한 약국, 일반영업장 (신규사업자)	
	1	급여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급여지급이체내역(개업일~조치해당월)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대장(개업일~조치해당월) * 근로자 개인정보는 삭제	
	2	임차료	부동산 및 기계류 임대차계약서 (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상이한 경우 1년치 통장이체내역)	임대차계약서	
	3	광고선전비	광고선전계약서, 광고선전비 이체내역	광고선전계약서(일회성/연속성 확인), 광고선전비 이체내역	
	4	보험료	보험증권 사본 (유효계약건, 영업장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영업용차량보험에 한함)	보험증권 사본 (영업장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영업용차량보험에 한함)	
	5	복리후생비	·급여대장, 급여지급명세(복리후생비를 포함하여 급여 지출된 경우에 한함)		
	6	세금과공과	·벌과금을 제외한 세금 납부 내역(고정적 지출에 해당하는 세금만 인정)		
	기타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증빙서류 제출 불가 시 유사업종 표준 고정비 적용		
		※ 1~6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유사업종 표준 고정비 적용			

1 신청서

[공통]

□ **손실보상청구서**(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붙임1]

○ 청구인은 **반드시** 법적 서식인 **'손실보상청구서'** 작성·**제출**

【참고】 손실보상청구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

처리기간	30일	
① 청구인	성명 *(법인) 법인명 (개인) 사업주명*	주민등록번호 *(법인) 법인 or 사업자등록번호 (개인) 사업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기재*	경영자 또는 소유자와의 관계
	주소	
② 경영자 또는 소유자	성명 *(법인) 법인 대표 정보 (개인) 사업주 정보*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손실 세부 사항	③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시설 명칭 *사업장명*	
	④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시설 소재지	
	⑤ 요양기관기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⑥ 손실 내용 *조사표 작성으로 갈음합니다.*	
	⑦ 손실 발생기간 *조사표 작성으로 갈음합니다.*	
	⑧ 손실보상 요구 금액 *조사표 작성으로 갈음합니다.*	
	⑨ 손실보상 요구 금액 산출 근거 *조사표 작성으로 갈음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⑩ 년 월 일

청구인 *(법인) 법인명* *(법인) 법인직인*
(개인) 사업주명 *(개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접 수	심의 및 사실확인	보상금액 결정	지 급
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	보건복지부장관·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	보건복지부장관·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	

210mm×297mm(일반용지 60g/㎡)

○ 작성 방법

① **(청구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정보, ▵공동사업자인 경우 대표 공동사업자 정보(나머지 공동사업자의 위임장 첨부),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 정보(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재, 전화번호는 휴대전화번호, e-mail 기재

② **(경영자 또는 소유자)** ▵개인사업자 및 공동사업자인 경우 청구인과 동일,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 대표자 정보 기재

③~⑨(손실 세부사항)

- **(③~⑤)** ▵(요양기관)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소재지 주소, 요양기관기호 기재, ▵(일반영업장) 영업장명(등록된 상호명 및 지점명), 영업장 소재지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사회복지시설) 시설명, 시설 소재지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및 장기요양기관기호 모두 기재
- **(⑥~⑨)** 별도의 조사표(시군구 작성)에 손실 세부사항의 상세내용을 작성하므로 '조사표 작성으로 갈음'

⑩ **(년월일)** 손실보상 청구일자를 반드시 기재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붙임2]

○ 청구인은 손실보상 심사를 위해 청구인의 정보를 심사기관에 제공함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제출**

□ 손실보상 청구 위임장 [붙임3]

○ '손실보상 청구 위임장(일반용)'

- 손실보상청구 전체 또는 일부를 위임하는 경우, **구체적인 위임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

※ 예시) '청구 전체를 위임함', '통장 사본만 위임함' 등

○ '손실보상 청구 위임장(공동사업자용)'

- 청구인이 개인사업자 공동대표(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자 모두로부터** 손실보상 청구를 대표 공동사업자에게 위임함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

2 청구인 증빙서류

[공통]

□ **조치명령 근거, 조치이행 근거, 입금계좌 통장사본**

○ **(조치 근거)** 지자체가 대상기관에 조치한 **공문** 또는 **조치명령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상 '방역조치 관련 서식(참고)'으로 조치한 경우 동 서식을 조치명령서로 인정

※ 청구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지자체가 증빙(구두 조치명령 등 당시 근거가 문서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지자체가 '조치명령 했음(조치명령 일자 및 내용, 이행기간 등 기재)'을 사후에 확인하는 내부결재 공문)

※ 청구인은 **동일 조치명령 건에 대해 중복청구가 되지 않도록** 손실보상청구서 작성 및 지자체 제출 시 유의해야 함

○ **(이행 근거)** 지자체의 조치에 따라 대상기관이 이행한 근거

- 지자체의 소독조치에 따라 대상기관에서 이를 이행한 경우 **소독증명서, 소독비용 영수증 등**

  ※ **보건소가 직접 소독**한 경우 손실보상 대상 아니므로, **서류 제출 불필요**

- 지자체가 대상기관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경우 지자체 공문 또는 확인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의 소독비용을 신청할 경우 확진자 발생일에 대한 증빙자료 추가 제출

○ **(통장 사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청구인 명의의 통장 사본**

- 만일, 청구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위임장, 위임받은 자의 통장 사본

【참고】 조치명령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서식13 방역조치 관련 서식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서

해당 시설	명칭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조치의 내용	조치의 구분					이행기간
	일시적 폐쇄	출입금지	이동제한	의료기관 업무정지	소독	2020. . . 00:00 ~ 2020. . . 00:00
조치대상	범위	시설 전체			시설 일부 (범위 한정 시 구체적으로 기재)	
준수사항	**환자 이용 공간(구역)**은 **소독을 실시**한 후, **시설별 사용 재개 기준은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사멸하나, 사용 재개 시점의 결정은 소독제별 특성이 상이하여 일괄 적용이 불가하므로 제품별 주의사항 고려해야합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1,000ppm이상) 사용하여 소독한 경우 충분히 환기한 다음 장소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소독하고 다음날까지 사용을 제한하고 충분한 환기 후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호(일시적 폐쇄, 출입금지, 이동제한), 제2호(의료기관 업무정지), 제5호(소독)에 따라 위와 같이 일시적 폐쇄·출입금지·이동제한·의료기관 업무정지·소독실시를 조치합니다. 동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월 일

OOO 보건소장
(관인생략)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유의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일시적 폐쇄·출입금지·이동제한·의료기관 업무정지·소독실시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상기관 유형별]

□ (의료기관) 요양기관 확인서[붙임4]

○ **(진료비 손실 근거)** 별도 제출 불필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 활용

□ (분할지급 신청 의료기관*) 분할지급 신청서[붙임6]

* **8일 이상 폐쇄·업무정지** 조치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여 분할지급을 신청한 기관

* **(제외대상)** 손실보상금 규모가 작아 분할지급의 실익이 없는 △**7일 이하** 폐쇄·업무정지 기관, △이미 **개산급으로 손실보상금 긴급지원을 받은** 기관, △**의원급 의료기관** 등은 신청 제외 / 분할지급 신청기관이라도 △1개월 이내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액 산출될 예정이거나, △산정한 분할지급액이 미미(100만원 미만)한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 △방역지침 준수 명령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처벌(예정사항 포함)을 받은 기관**은 심사 및 지급 보류

※ '붙임23 손실보상금 분할지급' 참조

□ (전담병원, 전체폐쇄 의료기관 의료부대사업) 감염병전담병원 및 거점전담병원, 전체폐쇄 의료기관에서 운영(직영, 위탁·임대)하는 각 영업장(장례식장, 주차장, 매점 등)의 **사업자등록증, 영업손실 근거 등**

* 의료부대사업 손실보상 청구는 **의료기관이 각 영업장별 증빙서류를 취합**하여, △**전담병원**은 의료기관 담당자가 직접 제출, △**전체폐쇄의료기관**은 지자체에 청구 후 지자체가 시스템에 제출

※ **(의료부대사업)**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 ①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 5.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부대사업)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2.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및 서점
2의2.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및 식품판매업(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제외한다). 다만,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산후조리업
4. 목욕장업
5. 의료기기 임대·판매업. 다만,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숙박업, 여행업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
7.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
8. 장애인보조기구의 제조·개조·수리업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에게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
가. 이용업 및 미용업
나. 안경 조제·판매업
다. 은행업
라.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운영(의료관광호텔에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진료과목이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과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 **손실보상청구서**(의료기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의료기관, 위탁·임대 영업장)

○ **사업자등록증**(의료기관, 위탁·임대 영업장)

※ 폐업시 폐업사실증명원 제출(사업자등록증 제출 불필요)

○ **위탁·임대계약서**

○ **일별매출장**(월별 합계 기재)

* △**전담병원**은 지정일부터 해제일까지, △**전체폐쇄의료기관**은 전체폐쇄조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 **(영업 손실 근거) 매출액 및 고정비 관련 서류**

※ 약국, 일반영업장과 동일(지침 59~60p 참조)하나, 고정비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 **미제출 시 해당 계정과목 산정 제외**(다만, 퇴직급여 및 감가상각비는 미제출 시 유사업종 표준고정비 적용)

※ ’21년도 운영기간의 경우, ’19년도 혹은 ’20년도 중 영업이익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선택한 해당연도 매출증빙자료 제출

※ **환자식 및 직원식 동시 운영 중인 위탁급식업체**의 경우,

① ’19년도 전체 매출(재무제표 등) 및 환자식/직원식을 구분계리한 전체 매출현황

② 전담병원 운영기간의 전체 매출현황 및 동기간 환자식/직원식을 구분계리한 일별 매출현황(월별 합계 기재)

* 환자식대는 치료비에 포함되어 전담병원에 개산급 형태로 보상 중

○ 의료법인에 한해 **부대사업장 개설 신고증명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 전담병원 운영기간 중 부대사업장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휴·폐업 사실 확인서** [붙임5]

○ **손실보상 제한 대상**인 경우 관련 서류(처분서, 고발장, 판결문, 과태료 납부내역, 의견제출 및 청문진행, 역학조사서(전체 일별 확진자 발생현황, 현장점검 결과, 상황보고 등), 기타 손실 발생과 위반행위 인과성 증빙자료 등

□ (**전담병원 건강검진 손실보상**) 감염병전담병원 및 거점전담병원의 건강검진사업 운영 근거 등

○ **검진기관 지정서**(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요양기관(검진기관) 확인서**[붙임4]

○ **손실보상 제한 대상**인 경우 관련 서류(처분서, 고발장, 판결문, 과태료 납부내역, 의견제출 및 청문진행, 역학조사서(전체 일별 확진자 발생현황, 현장점검 결과, 상황보고 등), 기타 손실 발생과 위반행위 인과성 증빙자료 등

□ **(치료의료기관 직접비용)**

○ **요양기관(직접비용) 확인서**[붙임4]

○ **(시설철거비 증빙서류)** 지정해제 공문, 계약서, 영수증, 철거전후 비교사진

○ **(폐기물처리비 증빙서류)** 지정 또는 해제공문, 폐기물처리 ①용역비 관련 계약서류 일체, ②코로나19 폐기물 전용용기 구입내역(세금계산서, 내역서 등)

※ 폐기물종류, 배출일자, 폐기중량, 태그수 등 폐기물 관련 자료는 한국환경공단 'allbaro 시스템'을 활용하여 산출하므로 제출 불요

○ **(환자전원비 증빙서류)** 환자소개명령 공문, 계약서, 영수증 등

□ **(코호트격리 중 확진자 치료 폐쇄의료기관 직접비용)**

○ **요양기관(직접비용) 확인서**[붙임4]

○ 역학조사서, 코호트격리 관련 보고서 등

○ **코호트격리(폐쇄) 지자체 공문**(기간명시, 확진자 치료 확인)

○ **(폐기물처리비 증빙서류)** ① 용역비 관련 계약서류 일체 및 지출 내역(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등) ② 코로나19 폐기물 전용용기 구입내역(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 폐기물종류, 배출일자, 폐기중량, 태그수 등 폐기물 관련 자료는 한국환경공단 'allbaro 시스템'을 활용하여 산출하므로 제출 불요

□ **(약국, 일반영업장)** 사업자등록증, 영업 손실 근거 등

○ **(약국) 요양기관 확인서**[붙임4]

○ **사업자등록증**

※ 폐업시 폐업사실증명원 제출(사업자등록증 제출 불필요)

○ **(일반영업장) 지급절차 동의서** [붙임11]

○ **(영업 손실 근거) 매출액 및 고정비 관련 서류**

※ 조치명령 연도별 제출자료
('20년도) '19년도 표준재무제표, ('21년도) '19년도 혹은 '20년도 표준재무제표
('22년도) '21년도 표준재무제표 제출

※ **'22년도 상반기 조치명령**에 한하여, '20년도, '21년도 중 유리한 영업이익을 선택할 수 있으며, '21년도 영업이익을 선택할 경우 공적자료 발급시점('21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3월), 표준재무제표증명(5~6월)) 이후 청구 가능

* 결정·지급된 손실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등록 → 공적 증빙서류 발급 시점에 자료 첨부

① **(매출액 및 고정비) 표준재무제표증명**

※ 표준재무제표 제출 시 별도 고정비 증빙서류 제출 불요

①—1 표준재무제표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 **(매출액)**
  - ·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 **(간이과세자) 사업소득명세가 포함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고정비)** 해당되는 **증빙서류**(아래 표 참조)**를 모두 제출**하되,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유사업종 표준고정비 적용
  - · 기타 고정비(퇴직급여, 감가상각비)는 일괄 유사업종 표준고정비 적용

② 당해년도 신규사업장

- **(매출액) 월별 매출장**(개업월부터 폐쇄·업무정지 종료월까지)

※ 약국의 경우 모든 매출내역이 확인되는 매출장(조제약+일반의약품 전체 판매내역, 카드+현금 판매내역이 모두 포함된 매출관리프로그램(POS, EDI, 기간별 조제현황 자료 등) 첨부)

- **(고정비) 위와 동일**

< 고정비 지출 증빙서류 >

	고정비용 계정	표준재무제표증명이 불가능한 약국, 일반영업장 (기존사업자)	당해년도 신규 개설한 약국, 일반영업장 (신규사업자)
1	급여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급여지급이체내역 (개업일~조치해당월)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대장(개업일~조치해당월) * 근로자 개인정보는 삭제
2	임차료	·부동산 및 기계류 임대차계약서 (계약서와 이체내역이 상이한 경우 1년치 통장이체내역 첨부)	·임대차계약서
3	광고선전비	·광고선전계약서 ·광고선전비 이체내역	·광고선전계약서 (일회성/연속성 확인), 광고선전비 이체내역

	고정비용 계정	표준재무제표증명이 불가능한 약국, 일반영업장 (기존사업자)	당해년도 신규 개설한 약국, 일반영업장 (신규사업자)
4	보험료	·보험증권 사본 (유효계약건, 영업장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영업용차량보험에 한함)	·보험증권 사본 (영업장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영업용차량보험에 한함)
5	복리후생비	·급여대장, 급여지급명세(복리후생비를 포함하여 급여 지출된 경우에 한함)	
6	세금과공과	·벌과금을 제외한 세금 납부 내역(고정적 지출에 해당하는 세금만 인정)	
기타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증빙서류 제출 불가 시 유사업종 표준 고정비 적용	

※ 1~6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유사업종 표준 고정비 적용

※ **'영업시간 외'**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한 경우 영업손실액(기회비용)이 없으므로, 공통 서류(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폐업한 경우))를 제외한 **영업손실 근거서류 제출은 불필요**

□ **(간이·정액 지급절차 선택 일반영업장)** ※ 영업손실 근거서류 제출 불필요

○ **사업자등록증**

○ **지급절차 동의서**[붙임11]

□ **(장소공개 요양기관)** 장소공개일(정보공개일)부터 7일까지의 진료비(영업) 손실 근거

○ **(의료기관)** 별도 제출 불필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 활용

○ **(약국)** 확진자 동선 공개에 따라 지자체가 장소공개일(정보공개일)부터 7일까지의 **일별 매출장**

* 약국의 모든 매출내역이 확인되는 매출장 (조제약+일반의약품 전체 판매내역, 카드+현금 판매내역이 모두 포함된 매출관리프로그램(POS, EDI, 기간별 조제현황 자료 등) 첨부)

* 예시) 정보공개일이 3.2.인 경우 3.2.~3.8.(7일간)의 일별 매출장

□ **(8일 이상 폐쇄·업무정지 요양기관)** 폐쇄·업무정지 종료일 다음날부터 7일까지의 진료비(영업) 손실 근거

○ **(의료기관)** 별도 제출 불필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 활용

○ **(약국) 8일 이상 전체폐쇄·업무정지된 요양기관**에 한하여 **회복기간** (최소 3일~최대 7일) **동안의 일별매출장 제출**

* 회복기간 = (폐쇄·업무정지기간) - (5일) (단, 최소 3일 ~ 최대 7일)

* 예시) 8일 이상의 폐쇄·업무정지 종료일이 3.2.인 경우 3.3.~3.9.(7일간)의 일별 매출장

* 약국의 모든 매출내역이 확인되는 매출장 (조제약+일반의약품 전체 판매내역, 카드+현금 판매내역이 모두 포함된 매출관리프로그램(POS, EDI, 기간별 조제현황 자료 등) 첨부)

※ 장소공개, 업무정지 등 조치된 약국이 손실보상금을 신청한 이후 산정 결과 매출 감소분이 없을 경우(실제매출액이 더 크거나, 영업시간 외 소독조치 등) 보상금이 없을 수 있음

□ **(의사·약사·조산사 입원·격리 요양기관) 입원·격리 통지서, 대체인력 고용 및 인건비 지급 근거, 격리기간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 근거 등**

※ **요양기관**(병·의원, 약국, 조산원)의 **전체 의사·약사·조산사**가 코로나19 **환자 진료로 인해 입원·격리**되었거나,

- 2인 이상이 운영하는 요양기관에서 **▲의사·약사·조산사의 격리비율이 50% 이상**이면서, **▲격리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기간 동안의 진료(영업)비 감소율이 70% 이상인 경우**도 신청 가능(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20.11.25.)
(환자 진료가 아닌 **여행 등 개인적 사유로 입원·격리 조치된 경우 제외**)

※ 입원·격리 시작일 혹은 종료일에 **실제진료비/매출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해당 일자 휴업보상은 0.5일** 반영(다만, 의료기관의 경우 외래만 운영하는 경우 적용) (제13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21.12.23.)

○ **(격리 근거)** 지자체가 의사·약사·조산사를 입원·격리 통보한 **공문 또는 입원·격리 통지서***

- 의료기관은 의사(약사, 간호사, 직원의 격리 근거는 제외), 약국은 약사 및 조산원은 조산사의 격리 근거만 제출

*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입원·격리 통지서, 문자, SNS 등의 통지 캡쳐본 등

※ 촉탁의·지도의사 등 요양기관 외 시설에서 환자 진료에 따라 입원·격리 조치된 의사는 해당 시설과의 근로계약서, 근무표·역학조사서 등 추가 제출(손실보상 청구는 시설 소재지 보건소에서 접수)

○ **(대체인력 고용 및 인건비 지급 근거)** 의사·약사·조산사의 입원·격리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대체인력(의사·약사·조산사)을 고용하여 요양기관을 운영한 경우 **고용계약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실제 인건비를 지급한 **통장거래내역** 등

○ **(진료비(영업) 손실 근거 : 일부 의사·약사·조산사의 입원·격리)**

- **(의료기관·조산원)** 별도 제출 불필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 활용

- **(약국)** 일부 약사의 입원·격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일별 매출장**

* 약국의 모든 매출내역이 확인되는 매출장 (조제약+일반의약품 전체 판매내역, 카드+현금 판매내역이 모두 포함된 매출관리프로그램(POS, EDI, 기간별 조제현황 자료 등) 첨부)

※ 산정결과 진료비감소율이 70% 이상인 경우에만 차액 보상되며, 70% 미만일 경우 보상금 없음

※ 일별매출장 제출양식(예시)

일자	매출액 (A+B+C)	조제약			일반 의약품 (C)
		급여 약제비 (A)		비급여 약제비 (B)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000				

* 위 양식은 '매출관리프로그램'에서 출력

【참고】 입원·격리 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0. 12. 30.>

[ ] 입원·[ ] 격리 통지서

성 명		생년월일	
입원·격리 사유			
입원·격리 내용	입원일·격리시행일		
	입원기간·격리기간		
	입원·격리 장소	[ ] 병원·의원( ) [ ] 자택 [ ] 시설( )	
		주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됨을 통지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2에 따른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미이용자 조사표, 입원·격리 통지서, 서비스 미이용자의 상급침실이용 확인서류

※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미이용자 :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이용자 중 지자체 조치(폐쇄, 격리 등)로 인해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자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 (시설급여기관) 기관의 조치기간 내 기관외 장소로 입원·격리된 자
- (재가급여기관) 기관의 조치기간 내 장기요양 급여계약이 통보*된 자

* 노인장기요양법 제27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제4항,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재2항·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계약통보서를 통보

○ **(미이용자 현황)** 대상기관의 조치이행기간 동안 서비스 미이용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미이용자 조사표**[붙임7]

※ 대상기관의 조치이행기간 동안 서비스 미이용자 현황

○ **(급여비 손실 근거)** 별도 제출 불필요

* 장기요양급여 수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 등 활용

○ **(미이용자 근거)** 지자체 조치로 인한 서비스 미이용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입원·격리통지서** 또는 지자체 **공문**

※ 재가급여기관의 경우 입원·격리통지서 등 제출 불필요(시설급여기관만 제출)

○ **(상급침실이용 근거)** 서비스 미이용자가 상급침실을 이용하였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본** 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실제 지급받은 통장거래내역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등급외자 근거)** 서비스 미이용자가 장기요 양등급 인정을 받은자가 아니거나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급여를 이용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본 및 공단 정보시스템 입·퇴소 등록 내역 등

○ **(회복기간 손실)** 8일 이상 전체폐쇄·출입금지 명령을 이행한 장기요양기관 중 해제 후 이용자 또는 장기요양수입이 감소된 경우* 최소 3일에서 최대 7일까지 회복기간(폐쇄·출입금지기간 - 5일) 급여비 손실분 보상

* (전제조건) 폐쇄·출입금지 개시 월 대비 해제 월* ① 이용자 수 감소 또는 ② 장기요양수입이 감소된 경우(* 해제 월이 개시월과 동일한 경우 익월로 비교)

= (명령이행기간 미이용자 평균 1일당 급여비) × (최소 3일 ~ 최대 7일)

- 적용시기: ’21년 11월 조치명령부터 적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서비스 미이용자 급여비 등) 활용으로 자료 제출 불요

3 지자체 증빙서류

□ **(장소공개 요양기관) 확진자 동선 공개에 따른 장소공개 근거**

○ 확진자 동선 공개에 따라 지자체가 장소를 공개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공개기간 및 방법이 포함된 지자체 **공문** 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지자체 홈페이지 캡쳐화면, 역학조사서, 사후확인공문*, 지자체 브리핑자료, 홈페이지 로그기록 등)

* 장소공개 당시의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지자체가 '장소공개 했음(대상기관, 공개일 기재)'을 사후에 확인하는 내부결재 공문

□ **(의사·약사·조산사 입원·격리 요양기관) 조치명령 근거, 입원·격리 통지서**

※ 청구인이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증빙

○ **(조치 근거)** 지자체가 대상기관에 조치한 공문 또는 조치명령서

○ **(격리 근거)** 지자체가 의사·약사·조산사를 입원·격리 통보한 공문 또는 입원·격리 통지서

□ **(손실보상 제한 관련 처분 등 서류)** 방역수칙 위반 등 손실보상 제한(지급제외, 감액) 근거가 될 수 있는 시·도, 시·군·구 등 지자체의 처분 및 처벌 관련 증빙서류

※ 처분서(과태료, 경고, 영업정지, 운영중단, 폐쇄명령, 과징금, 집합금지 등), 고발장, 판결문, 과태료 납부내역, 의견제출 및 청문진행, 역학조사서(전체 일별 확진자 발생현황, 현장점검결과, 상황보고 등), 기타 손실 발생과 위반행위 인과성 증빙자료 등 포함

※ 의료법 제59조, 감염병예방법 제11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의무 위반 시에는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 적용과 별개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손실보상을 지급하지 않거나 제한 가능하므로 지자체에서 손실보상 청구 시 유의 필요

3 접수·검토 및 제출 : 지자체(시·군·구)

○ **(접수·검토)** 지자체(시군구)는 청구인의 손실보상청구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및 청구인 증빙서류를 **접수**하여 **사실확인 등 검토**

- 단,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라 **지자체가 기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제외**

○ **(손실보상 제한사항 확인)** 법 제70조제3항, 시행령 제28조의2(손실보상금의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90호, '21.3.24. 시행) 관련 사항

- **(제외대상)** 방역수칙 위반 등 손실보상 제한 사유 관련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으로서 방역수칙 위반행위(처벌, 처분의 원인)과 손실발생·확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 중대성 및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손실보상심의위 심의로 감액 가능

- **(지급보류) 고발·형사처벌 절차 진행** 및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인 경우 **지급보류**

  ※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절차 진행 중인 경우 처분여부 결정이후 신청하도록 사전 안내(붙임8: 손실보상 청구 안내문)

- **(환수) 처벌·처분이 손실보상금 지급 이후 확인**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조치**

- **(제한절차) ❶'21.3.24. 이후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지자체 처분부서가 **처벌(처분)현황을 보상담당부서에 통보 ⇒ ❷보상담당부서**는 처벌(처분) 현황 관리 및 보상 청구시 **손실보상업무시스템에 처분현황 입력 ⇒ ❸손실보상심의위원회 손실보상 제한여부 심의**

  ※ **감염병예방법 개정('21.3.9 시행)으로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 처분권자에 시·도지사가 추가되었으므로, 시·도의 처분이 있는 경우 시군구에 통보 필요**

①처분(고발) 실시 및 처분 등 정보 통보	⇨	②손실보상 대상 검토 및 처분(고발) 현황 시스템 입력	손실보상 청구 및 처분(고발) 현황 제출	⇨	③손실보상 대상 및 보상제한 여부 확정	손실보상 지급 및 결과 통보
지자체 (처분담당→보상담당)		지자체 (보상담당)	지자체(보상담당)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청구인

- **(시행일) 고시 시행일('21.3.24.) 이후 방역수칙 위반행위**부터 손실보상 제한 적용(그외 손실보상 제한 사유는 기 시행 중으로 시스템 활용하여 입력)

* **처분 및 처벌내용**(처벌가능성 있는 고발, 처분 진행 등 **예정사항 포함**), **관련서류**(처분서, 고발장, 판결문, 과태료 납부내역, 의견제출 및 청문진행, 역학조사서(전체 일별 확진자 발생현황, 현장점검결과, 상황보고 등), 기타 손실발생과 위반행위 인과성 증빙자료 등 포함)

** 보상담당부서는 **시도, 시군구 처분담당부서**에 사전에 **처분(처벌)현황 통보 요청**(참고2 양식), **처분담당부서**는 **위반행위일 '21.3.24.부터의 처분(처벌) 내용 전부 통보**하고, **보상담당부서는 처분(처벌)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여, 해당 사업장의 **손실보상 청구시 통보내용 입력**

※ 손실보상 신청 접수 이후 **방역지침 위반 등으로 처분(처벌)**이 있는 경우에도 처분담당부서는 **보상담당부서에 반드시 통보**하고 **보상담당부서는 사후 입력(붙임20 매뉴얼 참조), 중수본에 공문 통보 (손실보상금 지급 이후 처분 확인시 "직권신청"으로 입력, 처분 진행 중인 건이 처분(처벌)완료시 중수본·심평원에 공문<참고3> 발송,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조치 가능)**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 청구접수 이후 방역수칙위반 등으로 인한 처분(처벌) 등이 있는 경우가 확인된 경우 손실보상 제한을 위하여 매달 지급 이전에 지급예정기관을 목록화하여 안내하고 있음. 각 지자체는 목록에서 처분(처벌)현황을 확인하여 미처 관리되지 못한 기관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회신 필요

(예시)

구분			Ⓐ, Ⓑ의 인과관계 여부	
Ⓐ	방역수칙위반일	2022.1.2.	없음	**있음**
Ⓑ	조치명령일	2022.1.4.		
손실보상 제한대상 여부			비대상	**대상**

***** Ⓐ 마스크 미착용, 출입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해 Ⓑ **확진자 발생·확산으로** 손실 발생·확대

○ **(조사표 작성)** 지자체(시군구)는 청구건에 대한 사실확인 등 **검토한 내용(손실보상 지급제한 내용 포함)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이하 '포털')에 구현된 **조사표에 청구건별 작성**

* 반드시 조사표에 작성한 내용과 아래 증빙서류의 내용은 일치해야 함

○ **(증빙서류 등록)** 지자체(시군구)는 **①청구인의 제출서류(손실보상청구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청구인 증빙서류)** 및 **②지자체의 증빙서류가 작성한 조사표 내용과 일치하는지 최종 확인 후 포털에 등록**

* **파일명은 '서류명(시도-시군구-대상기관명)'으로 기재,** 가능한 **pdf파일로 변환하여 등록**(파일이 수개인 경우 압축하여 ZIP파일로 등록 가능)

* 파일을 보완하여 재등록하는 경우, **파일명에 '보완' 문구 별도 표시**

※ 약국, 일반영업장의 경우 청구인 증빙서류 중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이 불가할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제출**하며, 이 경우 지자체는 기타전달사항에 확인내용 기재

ex) 제출 파일 예시

- 손실보상청구서(서울-중구-○○약국).pdf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서울-중구-○○약국).pdf
- 통장사본(서울-중구-○○약국).pdf
- 조치공문_조치명령서(서울-중구-○○약국).pdf
- 조치공문_조치명령서(서울-중구-○○약국)._보완pdf
- 소독비용영수증(서울-중구-○○약국).pdf
- 사업자등록증(서울-중구-○○약국).pdf
  * 의료기관은 제출 불필요
- 2019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서울-중구-○○약국).pdf
- 자가격리통지서(서울-중구-○○약국).pdf
- 장소공개공문(서울-중구-○○약국).pdf
- 손실보상 제한 관련 서류(서울-중구-OO약국).pdf

<손실보상 업무시스템 운영 안내>

△ 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를 위한 시스템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 구축**

- **시·도**는 관할 시·군·구의 **손실보상 접수·실적 등 모니터링 가능**
  · **보장기관인증서**를 사용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붙임20]

  * (접속경로) 마이페이지 > 코로나19관련 손실보상 관리 > 코로나19 손실보상 모니터링(시도)

- **시·군·구**는 해당 포털에 **조사표(검토내용) 작성 및 증빙서류 등록, 이후 처리상태 확인, 최종 결정통지서 발급**

  * (접속경로) 코로나관련신고 > 코로나19 손실보상 조사표 작성(지자체)

△ **포털은 상시 운영**하므로, 손실보상모니터링, 조사표 작성 및 증빙서류 등록은 상시 가능

△ **시·군·구**의 **조사표 작성 및 증빙서류 등록 미비 시 보완 요청(반려)됨을 인지**

○ **(공문 발송)** 지자체(시군구)는 포털에 조사표 작성 및 증빙서류 등록 후 손실보상청구서 등을 **제출하는 공문을 보건복지부로 직접 발송***
(월 2회 정도, 접수건수에 따라 지자체가 주기 조정)

※ 방역수칙 위반 등 처분 및 처벌(예정사항 포함) 손실보상 제한 사유 반드시 기재

- 이 때, 손실보상청구서 및 증빙서류는 포털에 등록한 자료로 갈음하므로 **붙임자료는 불필요**

  * 손실보상청구서 등의 제출은 공문을 통해 효력을 발생하며, 포털은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임

【참고1】 손실보상청구서 등 제출 공문 예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수신 보건복지부장관
(경유)
제목 코로나19 손실보상청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총 ○건)

1. 관련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2020.○.○.)호

2. 우리 시(또는 군 또는 구)의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손실보상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2020xOOOOOOOO, 2021xOOOOOOOO, 2022xOOOOOOOO ...

※ *포털에 조사표 작성시 자동부여된 접수번호(2020XOOOOOOOO)로 기재*
※ *접수 건이 여러 건인 경우 본문에 접수번호를 모두 기재하거나, 접수번호 목록을 붙임*

○ 손실보상 제한 여부 : ㅇㅇㅇ법 위반으로 인한 처분(처벌)사업장 00개소(접수번호 2020xOOOOOOOO ...), 처분(고발 등 처벌)예정 사업장 00개소(접수번호 2020xOOOOOOOO ...)

붙임 : 손실보상 청구서 및 증빙서류(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등록). 끝.

주무관	팀장	과장
협조자		
시행		접수

우 00000 ○○시 ○○로 ○ / http://

전화번호 000-0000-0000 팩스번호 000-0000-0000 / 0000@korea.kr /

【참고2】 방역수칙 위반 처분(처벌)내용 현황통보 요청(손실보상 담당부서용)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수신 ○○과장(방역수칙 위반 등 처분담당부서), ○○시도 ○○과장
(경유)
제목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 처분(처벌)사항 통보 요청

1. 관련
   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2021.○.○.)호
   나. 감염병예방법 제70조(손실보상),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2,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90호, 2021.3.24.)

2.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의 손실보상 청구시에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처분(처벌)사항(예정사항 포함) 등 손실보상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손실의 발생·확대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손실보상 지급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귀 처분(방역)담당부서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을 위반(위반행위일 '21.3.24.~)하여 처분 내지 처벌(과태료 등 처분 의견제출, 고발 등 예정사항 포함)이 있는 사업장**(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그 현황을 우리 부서(손실보상담당부서)로 **관련 서류와 함께 즉시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 및 처벌: 과태료, 경고, 운영중단, 폐쇄명령, 과징금, 집합금지, 고발, 형사처벌 등
   ※ 관련서류: 처분서, 고발장, 판결문, 역학조사서, 의견제출 및 청문진행 관련 서류 등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요양기관기호)	대표자	주소	위반행위일	위반법령 및 위반내용	처분(처벌)내용 (예정사항)
OOO 식당 (110-00-000)	OOO	경기 수원시 OO구 OO3로 OOO	'21.3.24. '21.3.25. '21.3.29.	-법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제2호의2 -내용: 종사자 마스크 미착용(위반행위일 3.24), 출입자 명부 미작성(위반행위일 3.25.), 이용인원 준수(5인 미만) 위반(위반행위일 3.29.)	과태료 OO만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21.00.00) -과태료부과통지(00.00) 및 납부기한(00.00)

끝.

주무관 팀장 과장
협조자
시행 접수
우 00000 ○○시 ○○로 ○ / http://
전화번호 000-0000-0000 팩스번호 000-0000-0000 / 0000@korea.kr /

【참고3】 손실보상금 지급 이후 제한사유 발생건(처분완료) 통보 공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수신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보상지원반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경유)

제목 **손실보상금 지급 기관(사업장) 손실보상 제한 심의 직권신청(처분, 처벌완료)**

1. 관련

가. ○○시군구 ○○과(손실보상담당)-○(2021.○.○.)호 (기존 청구문서)

나. 감염병예방법 제70조(손실보상),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2,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90호, 2021.3.24.)

2. 우리 시군구에서 손실보상금 지급이 완료('00.00.00)된 접수번호 ○○○○ (사업장명: ○○○)에 대하여, 손실보상 제한 사유 관련 처분(처벌)이 확정되어 시스템에 입력후 손실보상 제한 직권신청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요양기관기호)	처분일	처벌확정일	위반법령 및 위반내용	처분(처벌) 확정내용
OOO 식당 (110-00-000)	'21.00.00.	'21.00.00.	-법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내용: 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 명부 미작성, 이용인원 준수(5인 미만) 위반	과태료 OO만원 등

끝.

주무관 팀장 과장

협조자

시행 접수

우 00000 ○○시 ○○로 ○ / http://

전화번호 000-0000-0000 팩스번호 000-0000-0000 / 0000@korea.kr /

【참고4】 손실보상 제한 근거 법령 및 고시

< 손실보상 제한 관련 감염병예방법 조항 >

제70조(손실보상)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실을 입은 자가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그 손실을 발생시켰거나 확대시킨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범위와 보상액의 산정, 제3항에 따른 지급제외 및 감액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 운영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과태료** **300만원 이하 과태료(관리자 · 운영자)**

③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 · 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관리자 ·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폐쇄명령 불응)**

< 손실보상금의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8조의2) >

①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손실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29.>

1. 법 제11조에 따른 보고·신고를 게을리하거나 방해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신고한 경우

*** 의사,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및 직원 등의 감염병 발생 보고, 신고**

2.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방해한 경우

*** 일반인 등 그 밖의 신고의무자 신고의무**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 시 금지행위를 한 경우

*** ①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②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③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 은폐하는 행위**

4. 법 제36조제3항 또는 제37조제2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감염병 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전실 및 음압시설 등을 갖춘 1인 병실 등) 설치 의무**

5.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협조의무를 위반한 경우

*** 통행의 제한 및 주민의 대피, 감염병 매개 음식물·물건 등의 폐기·소각,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인력에 대한 임무부여 및 방역물자의 배치, 감염병의심자 입원 및 격리조치, 소독 등 방역관 조치 협조의무**

6.「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지도와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하는 지도와 명령**

7. 그 밖에 법령상의 조치의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②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그 손실의 발생 또는 확대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지 여부와 중대한 원인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와 손실 발생 또는 손실 확대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성격 및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90호) **>**

*** 2021.3.24. 발령 및 시행**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손실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제외 및 감액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법령상의 조치의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손실보상 청구건 조사표 작성방법

※ '손실보상 청구건 조사표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조사표에 작성할 항목 및 증빙자료에 대한 사전 확인 필요

※ (접속경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코로나 관련 신고 > 코로나19 손실보상 조사표 작성(지자체)

※ 반드시 조사표의 내용과 증빙서류의 내용은 일치해야 함

※ 손실보상청구서 상 손실보상 요구금액은 조사표에 작성하지 않음

※ 해당 지자체는 동일 건 중복청구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 신청(조사표 작성)**하여야 하며, 중복 청구된 건*의 경우 최근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보상지원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손실보상부)'으로 반드시 **사유를 명시하여 정정공문 시행하여야** 함 ('2021. 5. 1부)

* 사례 : 동일 조치명령서로 중복청구, 동일 조치에 대한 명령서 2회 이상 발급 등

1 공통 작성사항

□ 폐기물만 신청(의료기관)

폐기물만 신청(기접수된 코호트 건에 한정)
Y/N

○ 기 접수된 코호트 건이 있는 경우 'Y', 그 외의 경우 'N' 체크

* 'Y' 체크시 폐기물 외 지자체 조치명령 및 이행 내역 등은 신청할 수 없음

□ 대상기관 정보

시도	시군구	요양기관 기호	사업자등록번호	장기요양 기관기호	요양기관명 영업장명 시설명	대표자명	기관담당자			간이·정액 지급 절차
							이름	전화번호 (핸드폰)	이메일	
										√

손실보상 제한사유 대상		
대상(지급 전)	대상(지급후 직권신청)	비대상
√	√	√
진행 / 완료	진행 / 완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 **(시도, 시군구)** 대상기관 소재지 관할(손실보상 청구건을 접수한) 시도 및 시군구 선택

○ **(요양기관기호, 사업자등록번호, 장기요양기관기호)** 의료기관, 약국은 요양기관기호, 일반영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 사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기호를 반드시 기재

<대상기관 유형별 작성 항목>

기관유형	요양기관기호	사업자등록번호	장기요양기관기호
의료기관	**필수 기재**	선택 기재	-
약국	**필수 기재**	선택 기재	-
일반영업장	-	**필수 기재**	-
사회복지시설	-	선택 기재	**필수 기재**

○ **(요양기관명, 영업장명, 시설명)** 의료기관, 약국은 요양기관기호 기재 시 요양기관명이 자동으로 표시(별도 기재 불필요)*,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은 기관명(지점인 경우 지점명)을 직접 기재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상 요양기관 현황 정보를 활용하여 요양기관기호가 일치하면 요양기관명, 대표자명이 자동 표시

○ **(대표자명)** 대상기관의 대표자명 기재(의료기관, 약국은 별도 기재 불필요,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은 직접 기재)

○ **(기관담당자)** 대상기관의 손실보상 담당자*의 정보(이름, 전화번호(핸드폰), 이메일) 기재, 대표자가 기관담당자인 경우 대표자 정보 기재

* 청구서류 검토 및 심사 과정에서 연락 가능한 기관담당자 지정

○ **(손실보상 제한 대상 여부)** 방역수칙 위반 등 **처분(처벌) 관련 손실보상 제한대상* 여부에** 대상/비대상 **선택**** ⇒ **"대상" 선택시 진행여부에 처분(처벌) 진행/완료여부 입력 ⇒ 손실보상 제한 사유 현황 입력** 화면으로 전환하여 해당 세부내용 입력***

* 제한사유는 「3 접수·검토 및 제출 - 참고4」 참조

** 최종제출 후 지급완료 전 수정할 경우 심평원에 보완요청(유선 및 공문)후 승인시 대상(원청구)에 입력, 지급완료 후 입력시 원청구 직권신청 버튼 클릭후 입력 진행

*** **실제 손실보상 제한(지급제외, 감액)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며 **손실보상 제한 여부는 지자체 판단사항이 아니므로** 해당사항 반드시 입력하고, 처분(고발 등 처벌 진행)이 진행 중인 경우도 제한대상으로 입력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에 기재된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을 정확히 기재

* 예금주명에 상호명과 대표자명이 함께 기재된 경우 기재 순서, 띄어쓰기, 괄호( ) 등을 확인하여 정확히 기재

○ **(간이·정액 지급절차)** 일반영업장 중 간이·정액 지급절차로 신청한 경우 해당란에 체크(√)

※ 해당 항목은 일반영업장의 조사표에만 구현

□ 지자체 조치명령

※ 지자체가 조치한 **공문, 명령서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며, 작성한 조사표 내용과 공문·명령서의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지자체(시군구)에 조사표 수정을 요청**(조치명령 및 조사표 작성의 권한·책임은 지자체에 부여)

※ **일반영업장**(일반절차, 간이정액지급절차 모두)은 **동일한 영업장의 경우에도** 지자체가 **조치한 공문, 명령서 건별로 각각 구분하여 청구조사표 작성요** ('21.4.30.~)

지자체 조치명령															
일자	방법	범위		내용							이행기간				
		전체	일부	일시 폐쇄	출입 금지	이동 제한	업무 정지	소독	정보 공개	기타	기회 비용 미대상	일반영업 시간 외 운영	시작일시	종료일시	적용 기간 (일)
20-02-15	서면			√				√		(법적근거) (조치내용)	√		20-02-15 15:00	20-02-18 15:00	3

◎ 관련근거: 법 제70조제1항제3호(업무정지), 제4호(일시폐쇄, 출입금지, 이동제한, 소독), 제5호(정보공개)
단,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는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이 아님

◎ 지자체 조치명령 근거자료는 반드시 첨부파일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일자)** 지자체가 조치한 일자(월일) 기재

※ 같은 조치일자로 중복 청구 건의 여부를 확인후 기재

○ **(방법)** 지자체가 조치한 방법을 서면/구두 중 선택

- 원칙적으로 지자체는 서면(공문, 조치명령서)으로 조치하나, 당시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구두 또는 전화 조치한 경우 반드시 지자체 증빙 필요

○ **(범위)** 지자체가 조치한 내용의 범위를 전체/일부 중 해당란에 체크(√)

※ 조치내용의 범위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체크(√)

○ **(내용)** 지자체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일시폐쇄/출입금지/이동제한/업무정지/소독/정보공개 중 조치한 모든 사항에 체크(√)하고, 기타는 조치내용 및 법적근거 직접 기재

※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제2호로 인한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등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이행기간)**

■ 공통사항

- 지자체가 조치한 공문(또는 조치명령서) 상 기재된 이행기간을 시작일시(월일시분)와 종료일시(월일시분)로 구분하여 기재

- **영업시간 내 조치명령 이행**의 경우만 기회비용 보상 대상이며, 영업시간 외 조치 건은 기회비용 미대상임

- **이행기간이 영업시간 외**(진료·영업 종료 후~개시 전)인 경우 및 **기회비용 없이 「직접 소독비용」만 청구**하는 경우 청구조사표 상 **'기회비용 미대상'** 항목 체크(√)

- 지자체가 조치명령 시 소독 후 환기를 일정 시간 권고하고 대상기관이 이를 준수한 경우 환기시간을 포함하여 이행기간 산정

ex) 소독 후 일정 시간 환기를 권고하고 대상기관이 이를 준수한 경우 조사표 작성 예시

공문 또는 조치명령서

조치내용	이행기간
(공문 또는 조치명령서) 소독	2020.02.15. 15:00 ~ 2020.02.15. 18:00
(구두 권고) 소독 후 환기	2시간 정도 후 사용 재개 권고

➔

조사표

이행기간	
시작일시	종료일시
20-02-15 15:00	20-02-15 20:00

- 2가지 이상 조치에 대한 이행기간이 중복될 경우 **이행기간이 긴 조치**의 이행기간으로 기재

ex) 2가지 이상의 조치에 대한 조사표 작성 예시

공문 또는 조치명령서

조치내용	이행기간
일시폐쇄	2020.02.15. 15:00 ~ 2020.02.18. 15:00
소독	2020.02.15. 15:00 ~ 2020.02.15. 18:00

➔

조사표

이행기간	
시작일시	종료일시
20-02-15 15:00	20-02-18 15:00

■ 소독·폐쇄 의료기관

- 24시간 운영 및 일반영업시간(오전9시~오후9시) 이외 시간대에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일반영업시간 외 운영' 항목 체크(√) 및 기타전달사항 기재

- 적용 기간은 이행시작일시와 종료일시 사이의 기간으로 일 단위*로 자동 산정(별도 작성 불필요)

* 1일 5시간 미만인 경우 0.5일로 산정

■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 영업장별 조사표 체크항목 및 기타전달사항 기재사항은 다음표와 같음

구 분	일반영업시간 내 운영업장	일반영업시간 외 운영 업장	
		24시간 영업	그 외
조사표 체크항목	(없음)	'일반영업시간 외 운영'	
기타전달사항	(없음)	'24시간 운영업장임'	'실제영업시간 00시~00시'

- 적용기간은 이행시작일시와 종료일시 사이의 기간으로 자동 산정(별도 작성 불필요)

  * 실제영업시간 내에서 조치이행시간에 따라 이행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0.5일, 5시간 이상인 경우 1일로 산정(예외적으로 1일 이상 인정되는 경우, 12시간 단위 0.5일씩 가산, ('22년 조치명령 부터))

○ **(증빙서류 - 조치명령근거)** 지자체가 조치한 근거(공문/조치명령서 등)를 파일로 첨부

- 만일, 구두 또는 전화로 조치한 경우 조치근거는 조치결과를 보고한 내부결재 공문, 사후확인공문* 등으로 증빙(파일 첨부)

  * 조치명령 당시의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지자체가 '조치명령 했음(조치명령일자 및 내용, 이행기간 등 기재)'을 사후에 확인하는 내부결재 공문

※ **일부폐쇄 등 조치 시** 이행기간 중 발생한 실제매출액이 있을 경우 차감 후 보상 또는 해당 구역에 대한 손실액 산정되므로, 해당 범위 상세제출 및 전체 영업이 불가하였는지 별도 확인하여 청구 시 기타전달사항에 기재

※ 조치명령서나 조치공문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 **보완 후 시스템에 제출**(파일명에 '보완' 표시) **및 '기타전달사항'에 기재**가 **원칙**

○ 부득이하게 공문 보완·제출이 어려운 경우 **변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확인 내용을 '기타 전달사항'에 기재(변경 전후 내역 설명 포함)**

□ 대상기관 조치 이행

대상기관 조치 이행	
직접 이행(소독 등) 소요비용(원)	보건소 조치
800,000	없음
없음	√

○ **(직접 이행)** 지자체의 소독명령(조치)에 따라 대상기관이 직접 소독을 이행한 경우 소요비용을 기재

※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외에는 소요비용에서 세액 제외후 지급

- **(증빙서류 - 비용지출근거)** 대상기관이 직접 이행한 근거(소독증명서, 영수증)를 파일로 첨부

○ **(보건소 조치)** 보건소에서 직접 소독하여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해당란에 체크(√)

※ 영업시간 외 보건소에서 직접 소독한 기관

▸**(대상기관)** 폐쇄 등 조치 없이 **소독 조치만 있고*, 이를 영업시간 외 보건소에서 직접 소독한 기관**

* 요양기관의 경우 소독 조치 외 **정보공개 또는 의사/약사의 자가격리 조치도 없는 기관**

○ **(조치명령 - 이행기간)** '기회비용 미대상' 항목에 체크(√)

○ **(조치이행)** '**보건소 조치**' 항목에 체크(√)

○ **(증빙자료 첨부파일)** 해당 기관에 **안내한 근거**(서면, 문자, 이메일 등 발송내역 등)를 등록

□ 손실보상 제한 사유 현황(처분일별<처분건별> 추가 입력)

손실보상 제한 사유 현황																	
구분	위반행위일	위반법령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벌내용		
		법령명	조항		처분일	과태료(원)	경고	운영중단		폐쇄명령		집합금지		과징금(원)	형사고발일	처벌확정일	세부내용
								시작	종료	시작	종료	시작	종료				
원청구	21-03-24	감염병예방법	49조1항2호의2	종사자 마스크 미착용(21.3.24) 출입자명부 미작성(21.3.25) 이용인원 준수(5인 미만) 위반(21.3.26)	21-04-05	1,500,000	√	21-03-25 00:00	21-04-04 00:00	21-03-25 00:00	21-04-04 00:00	21-03-25 00:00	21-04-04 00:00	2,000,000	21-04-05		벌금 100만원 1심 선고 후 2심 진행 중
직권신청(지급이후)	21-03-29	감염병예방법	18조3항	역학조사 거부, 방해, 회피, 거짓 진술, 거짓자료 제출	21-04-05												

※ 의료법 제59조, 감염병예방법 제11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의무 위반 시에는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 적용과 별개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손실보상을 지급하지 않거나 제한 가능하므로 지자체에서 손실보상 청구 시 유의 필요

○ **(위반행위일)** 처분(방역) 담당부서에서 통보한 손실보상제한 사유별 위반행위일(위반일이 수일, 수회 반복된 경우 **가장 늦은 날**을 기재하되, 위반내용 기재시 위반행위별 위반일 기재)

○ **(위반법령 및 위반법령 조항)** 감염병예방법 제28조의2(손실보상금의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령명(감염병예방법/의료법) 및 법령조항 기재, 단, **방역수칙 준수 명령 위반(제7호)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입력

○ **(위반내용)** 처분담당부서에서 **통보한 위반내용**(수 개의 위반행위는 각 위반일 함께 기재) 입력, **고발 및 형사처벌 절차 진행, 행정처분 진행 등 예정사항** 포함하여 기재

* 처분서상 처분내용 기재하되, 고발은 고발요지 기재

○ **(처분일) 과태료 부과통지일, 운영중단 처분일 등 처분서상 일자 기재,** 단, 과태료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운영중단(폐쇄명령) 관련 청문 등 처분 **진행 중인 경우 미입력**

○ **(처분내용) 과태료 금액(원), 경고, 운영중단 시작 및 종료일, 폐쇄명령 시작 및 종료일, 집합금지 시작 및 종료일, 과징금(원) 등**

○ **(고발일) 형사고발일 기재**(처벌 진행(수사) 중인 경우에도 입력)

○ **(처벌확정일) 최종 판결 확정으로 처벌이 확정된 날짜 기재**

○ **(처벌 세부내용) 형사고발, 처벌내용**(벌금 등 판결문상 선고내용, 재판 진행 중인 사항은 최근 하급심 선고내용), **진행상황** 등 기재

□ 처분(처분통보) 담당자 정보

* 처분담당자가 여러 명인 경우 추가 입력

소속과	직급	이름	이메일	연락처 (사무실)	연락처 (핸드폰)	비고

○ 손실보상 제한 사유별 입력 확인 후 처분통보담당자 정보입력 후 저장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 처분청이 시도인 경우 시도 담당자 기재)

○ 비고: 처분대상 시설종류, 담당부서가 별도로 있는 경우 해당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등 기재

□ 시군구 담당자 정보 등

소속과	직급	이름	이메일	연락처 (사무실)	연락처 (핸드폰)	기타 전달사항

○ **(담당자 정보)** 현재 소속과, 직급, 이름, 이메일, 연락처(사무실, 핸드폰) 기재

○ **(기타 전달사항)**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필요한 사항*, 사후 확인공문 제출 후 추가 확인사항, 공문으로 제출할 만큼의 주요내용은 아니지만 기타 손실보상 심사 시 참고할 사항 등 자유롭게 기재
(기재사항은 공문으로 갈음)

* ex)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8조의2(손실보상금의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되는 각 호 및 구체적인 사유

2 추가 작성사항

〈 요양기관 〉

□ 영업손실 증빙자료(약국)

※ 의료기관은 별도 제출 불필요

영업손실 증빙자료	
8일 이상 폐쇄·업무정지	**장소공개**
회복기간 일별매출장 (폐쇄,업무정지 종료일 다음날부터 7일까지)	정보공개기간 '일별매출장' (정보공개일 당일 포함 7일)
√	

○ **(8일 이상 폐쇄·업무정지)** 8일 이상 폐쇄·업무정지 조치한 약국의 일별 매출장을 제출받은 경우 해당란에 모두 체크(√)하고, 해당 서류를 파일로 첨부

○ **(장소공개)** 확진자 동선 공개에 따라 지자체가 장소를 공개한 약국의 일별매출장을 제출받은 경우 해당란에 모두 체크(√)하고, 해당 서류를 파일로 첨부

□ 지자체 장소공개 여부

지자체 장소공개 여부	
공개	**비공개**
공개일자 (반드시 장소공개근거 제출)	
20-02-16	
	√

○ **(공개)** 확진자 동선 공개에 따라 지자체가 장소를 공개한 요양기관의 경우 공개된 일자(월일) 기재

- **(증빙서류 - 장소공개근거)** 지자체가 요양기관의 장소를 공개한 근거(공문, 홈페이지 화면, 역학조사서, 사후확인공문*, 지자체 브리핑자료, 홈페이지 로그기록 등)를 파일로 첨부

  * 장소공개 당시의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지자체가 장소공개 했음(대상기관, 공개일 기재)을 사후에 확인하는 내부결재 공문

○ **(비공개)** 지자체가 요양기관의 장소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해당란에 체크(√)

□ 의사·약사·조산사 입원·격리 여부

※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의 **전체 의사·약사·조산사**가 코로나19 **환자 진료로 인해 입원·격리**되었거나,

- 2인 이상이 운영하는 요양기관에서 **▲의사·약사·조산사의 격리비율이 50% 이상**이면서, **▲격리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기간 동안의 진료(영업)비 감소율이 70% 이상인 경우**도 신청 가능(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20.11.25.)
  (환자 진료가 아닌 **여행 등 개인적 사유로 입원·격리 조치된 경우 제외**)

기관명	의사/약사 입원·격리 여부				
	전체 의사/약사수 (명)	입원·격리 의사/약사수 (명)	입원·격리 의사/약사명	격리기간	
				시작일	종료일
OO의원	1	1	ㅇㅇㅇ	20-02-15	20-03-01
OO약국	3	2	ㅇㅇㅇ	20-03-01	20-03-14
			ㅇㅇㅇ	20-03-01	20-03-14

○ **(전체 의사·약사·조산사 수)** 지자체가 입원·격리 조치한 의사·약사·조산사의 조치기간 동안 대상기관에 소속된 실제 인력 수 기재

※ 당시 실제 의사·약사·조산사 수를 기재하되,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신고된 인력 수 정보 활용

○ **(입원·격리 조치된 의사·약사·조산사 수)** 지자체가 입원·격리 조치한 의사·약사·조산사 수 기재

<입원·격리 조치된 의사·약사·조산사가 **2명 이상인 경우 각각에 대한 정보를 모두 기재**>

○ **(입원·격리 조치된 의사·약사·조산사명)** 지자체가 입원·격리 조치한 의사·약사·조산사 성명

○ **(격리기간)** 지자체가 입원·격리 조치한 기간을 시작일(월일)과 종료일(월일)로 구분하여 기재

○ **(증빙서류 - 입원·격리근거)** 지자체가 입원·격리 조치한 근거 **(입원·격리 공문/입원·격리 통지서 등)를 파일로 첨부**

□ (의사·약사·조산사의 입원·격리로 인한) 휴업 여부

(의사/약사의 입원·격리로 인한) 휴업 여부	
휴업	**영업 지속**
√	
	√

○ **(휴업)** 의사·약사·조산사의 입원·격리로 인해 의료기관·약국·조산원을 휴업한 경우 해당란에 체크(√)

○ **(영업 지속)** 의사·약사·조산사가 입원·격리하였으나, 의료기관·약국·조산원의 영업을 지속한 경우 해당란에 체크(√)

□ (영업 지속 시) 대체인력 고용 여부

(영업 지속 시) 대체인력 고용 여부		
대체인력 고용	**대체인력 미고용**	
인건비(원) (반드시 인건비 지출근거 제출)	**일부 의사/약사로 진료**	**기타**
1,200,000	-	-
-	√	-

○ **(대체인력 고용)** 의사·약사·조산사의 격리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에게 지급된 인건비 기재

- **(증빙서류 - 인건비 지출근거)** 대체인력에게 지급된 인건비 지출근거 (고용계약서/통장거래내역* 등)를 파일로 첨부

*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 지급 내역 확인

○ **(대체인력 미고용)** 의사·약사·조산사의 격리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일부 의사·약사·조산사만으로 의료기관·약국·조산원의 영업을 지속한 경우 해당란에 체크(√)

- 그 외 방법으로 영업을 지속한 경우 기타란에 직접 기재

□ 폐기물 내역

순번	구분	
	코호트	확진자 치료
1	Y/N	Y/N

* 코호트 및 확진자 치료 전부 'Y' 선택 시 하단에 코로나 폐기물 처리비(용역비 및 부대비용-코로나19 폐기물 전용용기, 전자태그) 입력 가능

<폐기물 처리비(용역비)>

○ **(조치명령)** 시작일자 및 종료일자는 지자체가 조치한 공문(또는 조치명령서) 상 기재된 이행 기간을 기재

* 조치명령이 2회 이상인 경우 각각 입력

○ **(계약기간)** 계약서에 명시된 조치명령 기간 포함한 계약기간 기재

○ **(계약구분)** 계약서에 명시된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총액계약 및 단가계약으로 선택가능

○ **(계약금 총액)** 계약서에 명시된 총액금액으로 기재

○ **(단가/kg당)** 계약서에 명시된 일반 의료폐기물과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로 구분하여 기재

○ **(중량,kg)** 조치명령 기간 안에 처리한 폐기물 중량을 일반 의료폐기물과 코로나19 의료폐기물로 구분하여 기재

<폐기물 처리비(부대비용-코로나19 폐기물 전용용기, 전자태그)>

○ **(조치명령)** 시작일자 및 종료일자는 지자체가 조치한 공문(또는 조치명령서) 상 기재된 이행 기간을 기재

○ **(계약구분, 부대비용)** 계약서에 명시된 전자태그 포함과 전자태그 미포함으로 선택가능

○ **(전용용기 수, 전자태그 수)** 조치명령 기간 안에 처리한 코로나19 전용용기 수와 전자태그 수를 기재

* 폐기물처리비는 통상의 폐기물처리 비용 대비 증가한 비용(용역비 등)을 보상하므로 보상액이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약국, 일반영업장 〉

□ 영업손실 증빙자료

영업손실 증빙자료 1			
사업자등록증 (필수)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제출(필수)		
	폐업 시	8일 이상 폐쇄·업무정지 *	장소공개*
	폐업사실증명원	회복기간 일별매출장 (폐쇄·업무정지 종료일 다음날부터 7일까지)	정보공개기간 '일별매출장' (정보공개일 당일 포함 7일)
√			
		√	
	√		

*약국만 해당

영업손실 증빙자료 2											
전년도 표준재무제표 증명 발급 가능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 불가능										
	기존 사업장							신규 사업장			
	매출액			고정비용(선택)				매출액	고정비용(선택)		
전년도 표준재무제표 증명(필수)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과세사업자)	전년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필수)	급여	임차료	광고선전비	보험료	월별매출장 (개업월부터 폐쇄·업무정지 종료월까지)	급여	임차료	광고선전비	보험료
		√	√	√				√	√	√		
											√	

○ **(모든 항목)**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의 해당란에 모두 체크(√)하고, 해당 서류를 파일로 첨부

- 고정비용의 경우 해당 계정의 증빙서류가 제출되면 해당 계정에 체크(√)

  * 예)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급여, 임차료 란에 체크

<표> 고정비 지출 증빙서류

	고정비용 계정	표준재무제표증명이 불가능 (기존사업자)	당해년도 신규 개설 (신규사업자)
1	급여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급여지급이체내역(개업일~조치해당월)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대장(개업일~조치해당월) * 근로자 개인정보는 삭제
2	임차료	부동산 및 기계류 임대차계약서(계약서와 이체내역이 상이한 경우 1년치 통장이체내역)	임대차계약서
3	광고선전비	광고선전계약서, 광고선전비 이체내역	광고선전계약서(일회성/연속성 확인), 광고선전비 이체내역
4	보험료	보험증권 사본(유효계약건, 영업장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영업용차량보험에 한함)	보험증권 사본(영업장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영업용차량보험에 한함)
5	복리후생비	·급여대장, 급여지급명세(복리후생비를 포함하여 급여 지출된 경우에 한함)	
6	세금과공과	·벌과금을 제외한 세금 납부 내역(고정적 지출에 해당하는 세금만 인정)	
기타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증빙서류 제출 불가 시 유사업종 표준 고정비 적용	

※ 1~6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유사업종 표준 고정비 적용

〈 사회복지시설 〉

※ 손실보상 대상시설은 지자체가 감염병예방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일시 폐쇄, 출입금지, 이동제한 또는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시설이며,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방적 조치기관은 해당되지 않음**

□ 서비스 미이용자로 인한 손실
: 폐쇄 또는 격리 조치로 인한 서비스 미이용자별 내용 작성

서비스 미이용자로 인한 손실						
미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6자리 (생년월일)	미이용기간		상급침실 이용(반드시 이용근거 제출)		
		시작일	종료일	1인실	2인실	이용안함
홍길동		20-02-20	20-02-28	-		

○ **(미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미이용기간)** 서비스 미이용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6자리(생년월일), 미이용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

- **(증빙서류 - 서비스 미이용자 근거)** 서비스 미이용자 확인 및 미이용기간 근거(입원·격리통지서* 또는 지자체 공문)를 파일로 첨부

  ※ 재가급여기관의 경우 입원·격리통지서 등 제출 불필요(시설급여기관만 제출)

○ **(상급침실 이용)** 서비스 미이용자가 상급침실을 이용한 경우 미이용 기간 직전일 기준 1인실/2인실/이용안함 중 해당란에 체크(√)

- **(증빙서류 - 상급침실이용근거)** 서비스 미이용자가 상급침실을 이용한 근거(본인부담금수납대장 또는 기타증빙서류/통장거래내역)를 파일로 첨부

〈 전담병원, 전체폐쇄 의료기관 의료부대사업 〉

□ 요양기관 정보 작성

① 요양기관기호	② 요양기관명	③입금계좌정보			④손실보상 담당자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이름	전화번호 (핸드폰)	이메일

①~④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명, 입금계좌정보, 손실보상업무담당자 작성

* 청구서류 검토 및 심사 과정에서 연락 가능한 담당자 지정

□ 대상 영업장 정보 작성

①구분	②유형	③사업자 등록번호	④ 상호명	⑤ 대표자	⑥손실보상 담당자			⑦손실보상 제한사유 대상		⑧기타 전달사항
					이름	전화번호 (핸드폰)	이메일	대상	비대상	

* 상호별로 행을 추가하여 작성

① **(구분)** 표준재무제표(손익계산서) 상 의료부대손익계정에 따른 분류를 장례식장/주차장/매점·음식점/기타의료부대수익 중 선택

② **(유형)** 영업장 운영유형을 **직영/위탁/임대 중 선택**

③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장별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④ **(상호명)** 영업장별 상호명 기재

* 반드시 병원명 아닌 **영업장 상호명**으로 기재

⑤ **(대표자)** 위탁 및 임대인 경우 영업장별 대표자명, 직영인 경우 감염병 및 거점전담병원 대표자명 기재

⑥ **(손실보상 담당자)** 영업장별 손실보상 담당자의 정보(이름, 전화번호(핸드폰), 이메일) 기재, 대표자가 손실보상 담당자인 경우 대표자 정보 기재

* 청구서류 검토 및 심사 과정에서 연락 가능한 담당자 지정

⑦ **(손실보상 제한사유 대상)** 방역수칙 위반 등 손실보상 제한 사유 관련 행정처분(처벌)을 받은 경우 기재

⑧ **(기타 전달사항)**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필요한 사항, 기타 손실보상 심사 시 참고할 사항 등 자유롭게 기재

- 의료법인에 한해 '부대사업장 개설 신고증명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23호 서식)' 제출 확인하였는지 등 기재

※ 조치명령 범위가 **의료기관 전체폐쇄가 아닌 개별 영업장**에 대한 소독·폐쇄 명령인 경우, **일반영업장으로 손실보상 청구**

□ 영업손실 증빙자료

영업손실 증빙자료 1			
①사업자등록증 (필수)	②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제출		
	휴업 또는 폐업 시	환자식 및 직원식 동시 운영 중인 위탁급식업체	
	휴·폐업 사실 확인서	전년도 전체 매출장 및 환자식/직원식 구분계리한 전체 매출현황*	전담병원 운영기간의 전체 매출현황 및 동기간 환자식/직원식 구분계리한 일별 매출현황*
√			

*환자식 및 직원식을 동시 운영 중인 위탁급식업체만 해당

영업손실 증빙자료 2 (전년도)											
기존 사업장											
*매출액(필수)			⑥고정비								
③ 표준재무 제표증명	④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⑤ 전년도 일별매출장(월별합계)	⑦ 고정비 없음	급여	임차료	광고 선전비	보험료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			√								

영업손실 증빙자료 3 (운영기간)																			
기존 사업장											전담병원 운영기간 중 신규 사업장								
매출액			⑪고정비								매출액	⑭고정비							
⑧ 표준재무제표증명	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⑩전담병원 운영기간 일별매출장 (월별합계) (필수)	⑫ 고정비 없음	급여	임차료	광고 선전비	보험료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⑬일별 매출장 (월별합계) (전담병원 지정일 부터 해제일 까지)	⑮ 고정비 없음	급여	임차료	광고 선전비	보험료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			√			√				√	√								

〈 전담병원 건강검진사업 〉

□ 요양기관 정보 작성

①요양기관기호	②요양기관명	③대표자명	④손실보상 담당자			⑤손실보상 제한사유 대상		⑥기준 검진수입 연도	⑦기타 전달 사항
			이름	전화번호 (핸드폰)	이메일	대상	비대상		

①~③ **(요양기관기호/요양기관명/대표자명)** 의료기관 정보 기재

④ **(손실보상 담당자)** 기관별 손실보상 담당자 정보(이름, 전화번호(핸드폰), 이메일) 기재

* 청구서류 검토 및 심사 과정에서 연락 가능한 담당자 지정

⑤ **(손실보상 제한사유 대상)** 방역수칙 위반 등 손실보상 제한 사유 관련 행정처분(처벌)을 받은 경우 기재

⑥ **(기준검진 수입년도)** 손실보상 기준 검진수입 연도 선택('19 또는 '20년도)

⑦ **(기타 전달사항)**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필요한 사항, 기타 손실보상 심사 시 참고할 사항 등 자유롭게 기재

4 심사·결정·지급 (보건복지부)

1 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손해사정사회)

<손실보상 대상기관별 심사기관>

구 분	손실보상 대상유형		심사기관
의료기관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긴급치료병상 운영병원,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 준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한 의료기관	1 2 3 4 5	→	심평원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한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2 3 6 7	→	심평원 (손해사정사회)

○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되, 손실보상 심사(손실현황 파악 및 보상금 산정)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수행**

*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

-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자료(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금액 등)를 활용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직접 심사**

- **약국, 일반영업장 등**은 실질적 **영업손실액을 파악**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므로 **손해사정전문기관(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수행(용역)

*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관계 분야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감정·평가·조사 수행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손실보상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2 결정 (손실보상심의위원회)

○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손실보상 대상 및 금액을 **최종 심의·의결**

3 지급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최종 심의·의결된 청구건별 **손실보상금 내역**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등록**하고, 그 내역을 **지자체(시군구)에 통보**

- 이후 청구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직접 지급**

○ **지자체(시군구)**는 포털*에서 청구건별 **손실보상 결정통지서**[붙임19]**를 출력**하여 **청구인에게 개별 안내**(서면, 이메일, 팩스 등)

* (접속경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코로나관련신고 > 코로나19 손실보상 조사표 작성(지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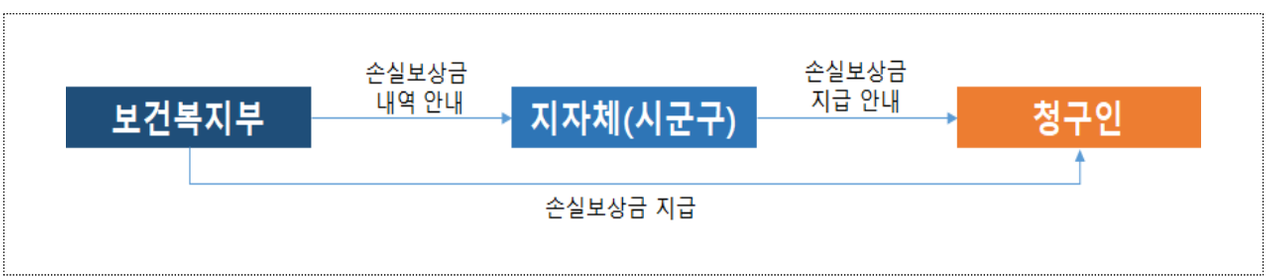

5 이의신청

< 이의신청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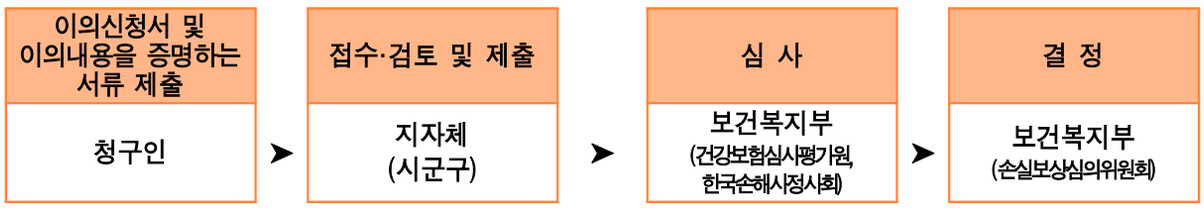

○ 청구인은 결정·지급된 손실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붙임13](임의서식, 이의신청 사유를 상세히 기술) 및 이의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시군구)에 제출**

※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 증빙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문서 시행

-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이의신청건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

<이의신청 결정의 종류>

○ (인용) 이의신청 중 전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용하는 결정
○ (부분인용) 이의신청 중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용하는 결정
○ (기각)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용하지 않은 결정
○ (각하) 이의신청의 형식적인 요건(절차·기간 등)에 흠결이 있어 수용하지 않은 결정

○ 지자체(시군구)는 청구인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최초 청구건과 동일하게 처리**

< 손실보상 업무흐름도 >

구 분	주 체	내 용
대상기관 선정 및 사전 안내	지자체 (시군구)	‣ **손실보상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청구서 작성 및 제출	청구인	‣ **손실보상청구서(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및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시군구)에 제출
접수·검토 및 제출	지자체(시군구), 전담병원	‣ 청구인이 제출한 **손실보상청구서 및 증빙서류 접수 및 검토** ‣ **의료부대사업, 건강검진사업**은 의료기관이 직접 포털에 제출(영업장의 청구서 등 증빙서류 취합)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조사표(검토내용) 작성 및 증빙서류 등록** – **방역수칙 위반 등 손실보상제한 내용 관련 포함** ‣ 보건복지부에 손실보상청구서 및 **손실보상 제한 사유(방역수칙 위반 등),** 증빙서류 **제출(공문 발송)** ‣ **지급 이후 최종 확정된 처분(처벌)사항 입력**시 복지부 **중수본, 심평원**에 처분(처벌) 확정 관련 **공문 통보**
심사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손해사정사회)	‣ **전문기관**을 통해 손실보상 청구건 **심사** –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약국, 일반영업장 등) 한국손해사정사회**
결정	보건복지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손실보상 대상 및 금액 **최종 심의·의결**
지급	보건복지부	‣ 최종 심의·의결된 **손실보상금 내역을 지자체(시·군·구)에 통보** ‣ 청구인에게 **손실보상금 지급**
(이의신청)	청구인	‣ 결정·지급된 **손실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임의서식) 및 이의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시·군·구)에 제출** ※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최초 청구건과 동일하게 처리

Chapter V

치료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정산

V. 치료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정산

※ 결정·지급된 손실보상금 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 증빙)

1 정산 대상기관 안내 : 보건복지부

□ 대상 기관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조치**에 따라 **치료의료기관 등**으로 **지정**되어 **개산급을 지급받은 기관** 등에 대해 정산(精算)

- 지정해제일, 건강보험요양급여 심사결정일 등 고려 정산 대상 기관을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안내

□ 안내 사항

○ **(정산 관련 정보*)** 정산 절차 및 추가지급·환입 발생가능 안내

* 필요시 운영형태 또는 거점전담 및 감염병 전담병원의 경우 회복기 보상일수

○ **(요양급여비용 심사 청구 안내)** 손실보상 대상 기간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청구가 완료**되었고 정산을 신청하면 추가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제한될 수 있음

○ 정산 심사 결정내역에 따라 추가 **지급 및 환입금** 발생에 대한 안내 및 이의신청 절차 안내

○ 접수 경로(절차) 및 제출 서류 등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인(신청기관)

□ 작성방법

○ **(제출 자료 확인)** 개산급 접수화면 참고

- 기지급된 개산급의 내역과 산출 자료 확인(병상수, 1일당 진료비 등)

  * 확인 경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코로나 관련 신고 ►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

○ **(작성)** 손실보상 정산신청서 및 치료의료기관 정산 확인서 작성

○ **(제출)** 작성자 및 지급계좌 정보 → 관련문서* 첨부 → 최종제출

- 정산신청서
- 치료의료기관 정산 확인서 등 * 붙임16 참고
- 기타 서류 등

□ 세부 증빙서류

구분	요양기관(의료기관)
신청서 (공통)	○손실보상 정산신청서(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붙임15] ○치료의료기관 등 정산 확인서 [붙임16] ○치료의료기관 등 정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붙임17] ○손실보상 정산 신청 위임장 [붙임18]
증빙서류 (공통)	○손실보상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진료비 손실 근거 : 별도 제출 불필요(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 활용)
증빙서류 (선택)	<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 전담병원 운영기간 이후 원상복구 공사계약서, 의료기관 휴업신고서, 운영 현황자료 등 * 공사기간, 휴업기간 및 운영 재시작일 확인 가능한 자료

3 심사·결정·지급 (보건복지부)

□ 심사

○ 제출된 자료와 손실보상 대상 기간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자료(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금액 등)를 활용하여 심사

□ 결정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 이의신청 기회 1회 부여

□ 지급 또는 환입

○ **(지급)** 기지급금액(개산급) 대비 지급 금액 발생 기관 추가 지급

○ **(환입)** 기지급금액(개산급)에 비해 정산금액 적은 기관의 환입 진행

4 이의신청

< 이의신청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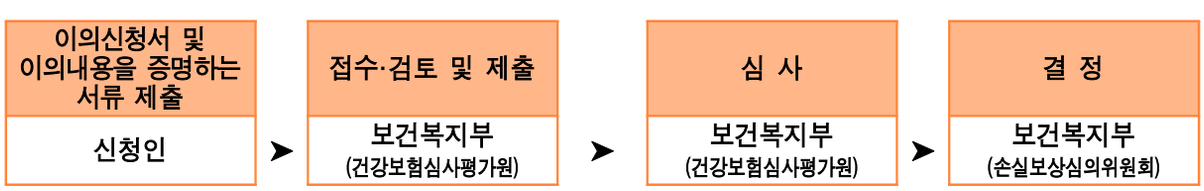

○ 신청인은 결정·지급된 손실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임의서식, 이의신청 사유를 상세히 기술) 및 이의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

※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 증빙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문서 시행

Chapter VI

지자체 조치사항

Ⅵ. 지자체 조치사항

○ 지자체는 손실보상 전담부서(인력)를 지정·배치하여 손실보상청구 접수 신속 실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자료 중 지자체 협조사항>

▸ **(총리 주재, '20.6.28)** 7월 중 각 시군구 단위 손실보상 전담부서(인력) 지정 또는 배치하여 손실보상 접수 및 검토절차 준비할 것

▸ **(장관 주재, '20.8.29)** 폐쇄·소독조치 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접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구 단위 전담부서**에서 **대상기관 안내, 청구서류 접수 등 신속 실시**

* 시·군·구 전담부서가 지정된 9개 시·도(대구,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전북, 경북, 제주) 이외의 8개 시·도 및 시·군·구는 조속히 지정하여 중수본에 통보 요청

○ **손실보상 대상기관 선정 및 사전 안내**

- **'20.6월 이전 손실발생 기관부터 우선 선정**하며, 대상기관이 청구서류 등을 준비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붙임8 손실보상 청구 안내문' 참조)

○ 손실보상 **청구건을 접수**하여 사실확인 등 **검토, 필요시 지자체 증빙서류 첨부(방역수칙 위반 등 손실보상 제한 관련 포함)**

○ **검토한 내용**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내 구현된 **조사표에 작성** 및 **증빙서류 등록** 후 손실보상청구서 등을 **제출하는 공문*을 보건복지부로 직접 발송(⇨ 상시적인 접수체계 유지)**

* 방역수칙 위반 등 손실보상 제한 내용 포함

○ 최종 심의·의결된 손실보상금 내역*을 청구인에게 통지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 청구인별 손실보상 결정통지서 출력 가능

○ 이후 **이의신청건 접수** 시 최초 청구건과 동일하게 처리

Chapter VII

붙 임

붙임1 손실보상청구서[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서식]]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성명** *(법인) 법인명* *(개인) 사업주명*	**주민등록번호** *(법인) 법인 or 사업자등록번호* *(개인) 사업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기재*	**경영자 또는 소유자와의 관계**
	주소	
경영자 또는 소유자	성명 *(법인) 법인 대표 정보* *(개인) 사업주 정보*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손실 세부 사항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시설 명칭 *사업장명*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시설 소재지	
	요양기관기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손실 내용 *조사표 작성으로 갈음합니다.*	
	손실 발생기간 *조사표 작성으로 갈음합니다.*	
	손실보상 요구 금액 *조사표 작성으로 갈음합니다.*	
	손실보상 요구 금액 산출 근거 *조사표 작성으로 갈음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장**

청구인 *(법인) 법인명* *(법인) 법인직인*
(개인) 사업주명 *(개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접 수	심의 및 사실확인	보상금액 결정	지 급
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	보건복지부장관·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	보건복지부장관·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	

210mm×297mm(일반용지 60g/㎡)

붙임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치료의료기관 등 정산 외 用)**

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개 인 정 보 제 공 동 의 서

청구인의 코로나19 손실보상청구서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손실보상청구서 및 손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제공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제공받는 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한국손해사정사회**
제공받는 자의 목적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상 청구 건에 대한 심사**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손실보상청구서 및 증빙서류 상의 손실내용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특정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64조(상사시효)를 준용하여 **거래완료 후 5년 간 보관**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시 손실보상 청구건에 대한 심사 대상에서 제외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나. 고유식별정보 처리고지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손실보상청구서 및 증빙서류상의 손실내용**
개인정보 처리사유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상 청구 건에 대한 심사
처리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손실보상)**

20 년 월 일

청구인 기관명 :

대표자명 : (서명)

보건복지부장관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붙임3 손실보상 청구 위임장

○ 일반용

손실보상 청구 위임장 (일반용)

위임자	성명 (사업장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위임받는 사람과의 관 계		업종	
	주소	☎		
위임 받는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		
위 임 내 용				

위와 같이 위임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업무 일체를 상기인에게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안내사항>

○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른 사람의 인감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공동사업자용

손실보상 청구 위임장 (공동사업자용)

공동사업장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		업종	
대표공동사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공동사업자					
①공동사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주소	☎			
②공동사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주소	☎			
③공동사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주소	☎			

* 전체 공동사업자 작성, 필요시 추가하여 작성

공동사업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업무 일체를 대표공동사업자에게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붙임4 **요양기관 확인서**

○ 의료기관, 약국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확인서

청구인은 동 요양기관의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을 청구함에 있어 **아래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완료**하였고, **추가로 청구할 요양급여비용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의료기관) 폐쇄·업무정지·소독 기간 및 그 종료일 다음날부터 7일이 포함된 해당 월(요양개시일 기준) 까지

(약　　국) 폐쇄·업무정지·소독 기간 및 그 종료일 다음날부터 7일까지

20　　년　　월　　일

청구인　　요양기관명 :

대표자(개설자)명 :　　(서명)

보건복지부장관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주의사항>

○ 동 확인서 제출 시점 이후 추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형법」 상 공무집행방해죄 및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손실보상금이 더 지급되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되며, 추가로 제재부가금이 징수됩니다.

○ 검진기관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기관(검진기관) 확인서

청구인은 동 요양기관의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을 청구함에 있어 아래 기간 동안의 국가건강검진 관련 청구를 완료하였고, 추가로 청구할 국가건강검진내역은 없음을 확인합니다.

○ 전담병원으로 운영된 기간(지정일~해제일)

20 년 월 일

청구인 요양기관명 :

대표자(개설자)명 : (서명)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하

<안내사항>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 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징수됩니다.

○ 의료기관(직접비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기관(직접비용) 확인서

청구인은 동 요양기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손실보상을 청구함에 있어 국가, 지자체(공공병원 본원 포함), (사)대한병원협회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직접비용 내역은 아래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 '직접비용' 관련하여 국가, 지자체(공공병원 본원 포함), (사)대한병원협회 등으로부터 별도지원 받는지 확인

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

○ 별도 지원받은 경우 세부 내역

- 전용용기 …… □
- 전자태그 …… □
- 기타 ( )

※ 별도 지원 받은 경우 증빙자료 제출할 것

20 년 월 일

청구인 요양기관명 :

대표자(개설자)명 : (서명)

보건복지부장관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붙임5 **의료부대사업장 휴·폐업 사실 확인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의료부대사업장 휴·폐업 사실 확인서

청구인은 해당 부대사업장의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청구함에 있어 **아래 기간 동안 휴업 또는 폐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부대사업장 정보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휴업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폐 업 일**) :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부대사업장 대표자(개설자)명 : (서명)

청구인 요양기관명 : (직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하

<안내사항>

○ 폐업한 부대사업장의 경우 폐업일 이후는 손실보상대상이 아닙니다.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 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징수됩니다.

붙임6 **손실보상금 분할지급 신청서(병원급 의료기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병원급 의료기관 손실보상금 분할지급 신청서

청구인은 동 의료기관의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을 청구함에 있어 원활한 병원운영을 위해 손실보상금 분할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의료기관명 :

대표자(개설자)명 : (서명)

보건복지부장관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안내사항>

○ 손실보상 청구(지자체→복지부(심평원) 청구 기준) 3개월 이내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의 70% 우선 지급되며(1차),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금액 기준으로 손실보상금 최종 산정 후 금액 정산이 이루어지므로(2차) **실제진료비 발생 등에 따라 추가지급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붙임7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미이용자 조사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미이용자 조사표

□ 정부·지자체의 조치명령(폐쇄, 출입금지, 이동제한, 업무정지, 소독)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대상자(서비스 미이용자)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장기요양기관명 :
- 장기요양기관기호 :

성명	주민번호 앞 6자리 (생년월일)	미이용기간		상급침실이용		
		시작일자	종료일자	1인실	2인실	이용안함

20 년 월 일

청구인 성명 : (서명)

※ 서비스 미이용자
▸시설급여기관 : 기관의 조치기간 내 기관외 장소로 입원·격리된 자
▸재가급여기관 : 기관의 조치기간 내 장기요양 급여계약이 통보된 자

※ 서비스 미이용 기간
▸시설급여기관 : 기관의 조치기간 내 미이용자의 입원·격리조치 시작일~기관의 조치 종료일
▸재가급여기관 : 기관의 조치기간(조치 시작일~종료일)

붙임8 **손실보상 청구 안내문** ※ 지자체 상황에 맞게 수정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손실보상 청구 안내문

□ 정부·지자체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협조해주신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 정부·지자체의 방역 조치에 따라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의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손실보상 대상 유형 및 보상 항목 >

손실보상 대상 유형	보상 항목
○ (요양기관)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한 의료기관, 약국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3,4호	-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소독비용 - 코호트(동일집단)격리 중 확진자 치료 폐쇄 의료기관 폐기물처리비용 - 폐쇄·업무정지 기간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 - 8일 이상 폐쇄·업무정지된 경우 회복기간(최대 7일)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
○ (요양기관) 환자 발생·경유하거나 정부·지자체에 의해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약국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5호	-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소독비용 - 정보공개 후 7일(공개일 포함) 동안의 진료(영업) 손실
○ (기타)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4호	-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소독비용** - (일반영업장) 폐쇄·출입금지·소독 기간 동안의 영업손실 - (사회복지시설) 명령이행기간 동안의 서비스 미이용자의 급여비 및 상급침실이용료(비급여) 손실, 장기 폐쇄(8일 이상) 후 회복기간 손실

※ 소독명령 중 확진자 발생·경유와 관계없는 **예방적 소독***과 일반적 소독 외 **증기멸균소독**은 **손실보상에서 제외**

* (예방적 소독) 장기 폐쇄, 확진자 다수 발생 시설 등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도 감염 예방을 위해 수시로 하는 경우

□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손실보상청구서 및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에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손실보상 대상유형별 산정기준에 따라 손실보상 심사전문기관*에서 산정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관), (사)한국손해사정사회(약국, 일반영업장 등)

□ 손실보상 청구부터 보상금 지급까지는 최소 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직접 지급하며,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임의양식, 이의신청사유 상세 기술) 및 이의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함)

□ 해당 사업장의 관리자・운영자 등이 **방역수칙 위반, 의료법 제59조(지도명령) 위반** 등으로 처분(처벌)*을 받은 경우 손실보상 지급제외 내지 감액 지급(손실보상 지급 이후 확인시 환수)될 수 있으며,

* 과태료, 경고, 운영중단(영업정지), 폐쇄명령, 과징금, 집합금지, 형사처벌 등

※ 손실보상 제한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2(손실보상금의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90호, '21.3.24.)

- 방역수칙 위반, 의료법 제59조(지도명령) 위반 등으로 고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지급이 보류될 수 있으니, 가급적 처분이 결정된 이후 손실보상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징수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일반영업장의 경우 간이지급절차도 신청 가능함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 제외)

붙임 1. 손실보상 청구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확인서
4. 손실보상 대상기관별 청구서류
5.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안내문 및 지급절차 동의서(일반영업장)

문의처	담당자	○○○	연락처	000-0000-0000 ○○@korea.kr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붙임9 **손실보상금 미지급 안내문** ※ 지자체 상황에 맞게 수정 가능

【진료(영업)시간 외 보건소 직접 소독한 기관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손실보상금 미지급 안내문

□ 정부·지자체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협조해주신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 정부·지자체의 방역 조치에 따라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의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귀 기관의 경우 폐쇄·업무정지 등의 조치 없이 '소독' 조치만 이루어졌으며, 그 소독도 **'진료(영업)시간 외' 시간에 보건소에서 직접 실시**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액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손실보상 대상 유형 및 보상 항목 >

손실보상 대상 유형	보상 항목
○ (요양기관)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한 의료기관, 약국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3,4호	-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소독비용 - 코호트(동일집단)격리 중 확진자 치료 폐쇄 의료기관 직접비용(폐기물처리비용) - 폐쇄·업무정지 기간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 - 8일 이상 폐쇄·업무정지된 경우 회복기간(최대 7일)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
○ (기타)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4호	-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소독비용 - 폐쇄·출입금지·소독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 - (일반영업장) 폐쇄·출입금지·소독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 - (사회복지시설) 명령이행기간 동안의 서비스 미이용자의 급여비 및 상급침실이용료(비급여) 손실, 전체 폐쇄(8일 이상) 후 회복기간 손실

문의처	담당자	○○○	연락처	000-0000-0000 ○○@korea.kr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붙임10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안내문(일반영업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손실보상 지급절차(일반영업장) 안내

□ 정부·지자체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협조해주신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 일반영업장 손실보상 **청구인은** (1)**지자체**(시군구)**에 소독·폐쇄 조치명령 이행여부를 확인받고** (2)**전년도 영업이익** 등을 확인하여 ①**일반지급절차와** ②**간이·정액지급절차 중 지급절차를 선택합니다.**

①**일반지급절차: 매출증빙자료***의 영업이익 및 고정비용** 기준 보상금액 산정

*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고정비 지출 증빙서류

** (영업이익) 총매출액-총비용[고정비용+변동비용], (고정비용 8종)

급여	종업원의 급여, 임금 및 제수당	임차료	부동산 및 기계류 임대차계약상 임차료
퇴직급여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감소분 비용
복리후생비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선전 등 지출비용
세금과공과	조세, 부과금 등	보험료	유형자산, 재고자산의 화재보험 또는 손해보험료

②**간이지급절차: 매출증빙자료 제출 불요,** 조치명령기간 **관계없이 정액(100,000원)** 지급

※ 일반영업장에만 해당(약국, 사회복지시설 등 제외)

○ 예상 손실보상금을 예측하여 정액(100,000원)보다 적을 경우, **간이지급절차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

○ 일반지급절차 선택한 경우, 산정된 보상금이 정액(100,000원)보다 적거나 지급액이 없는 경우에도 **산정된 보상금으로 지급**됨

< 보상금 지급절차 비교표 >

구 분	①일반지급절차	②간이·정액지급절차
심사절차	조치명령 이행여부 확인[지자체]→ 매출증빙서류 제출→ 심사·심의→ 지급	조치명령 이행확인[지자체] → 심사·심의→ 지급
제출서류	1. 손실보상청구서 2. 조치명령서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4. 사업자등록증 5. 통장사본 6. 지급절차동의서 7. 매출액 및 고정비 증빙서류	1. 손실보상청구서 2. 조치명령서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4. 사업자등록증 5. 통장사본 6. 지급절차동의서
소요시간	청구 후 약 3개월 소요	청구 후 약 1개월 소요
손실보상금	전년 매출액과 소득기간 적용 (0원 ~)	**정액 100,000원**

※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비용(자체소독 시 소독비)은 별도지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손실보상 지급절차 동의서

□ 청구인은 정부·지자체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폐쇄, 업무정지, 소독조치 된 일반영업장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보상받는데 있어 아래의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함을 확인합니다.

○ 손실보상 대상 유형 :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등(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4호)

※ 일반영업장에만 해당(약국, 사회복지시설 등 제외)

○ 보상항목 : 폐쇄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

○ 보상절차

절차	손실보상액	선택
일반 지급절차	전문손해사정기관 별도 산정	□
간이·정액 지급절차	정액 100,000원	□

□ 위 보상절차 선택 후 다른 절차로 변경하여 재청구 할 수 없으며, '간이·정액 지급절차'의 경우 정액보상금 지급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불가함을 인지하였음을 동의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성명 : (서명)

보건복지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붙임12 **손실보상 결정 통지서**

□ 원청구

○ 결정통지서 - 의료기관用 / (분할지급) 1차 지급用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 결정통지서

접수번호			
청구인	**기관명**	**대표자명**	
지급대상 여부	**지급대상 □ (분할지급 □, 손실보상제한 □)**		**지급대상 아님 □**
결정내역	**지급액(a+b)**	**직접비용(a)**	**기회비용(b)**
	원	원	원
	1일당 진료비 또는 영업손실액	원	손실보상대상기간 일
	비고		

▸(직접비용)

① 정부·지자체의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소독비용

②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처리 용역비용 [종전보다 추가된 비용에 한해 인정]

③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처리 부대비용(전용용기, 전자태그)

▸(기회비용) 해당 시설·장비·인력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비용으로, 소독·폐쇄·업무정지기간 및 회복기간·정보공개기간·자가격리기간을 고려한 진료 손실액
(단, 명령이행기간 동안 발생한 실제 진료비 차감)

- 1일당 진료비 = {(ⓐ급여진료비) + (ⓑ비급여진료비)} ÷ (ⓒ연간평균 영업일수)

ⓐ 급여진료비(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포함) = ('21년 급여 심사결정액(약제 및 치료재료 제외)) × (1 + '22년도 종별 환산지수 인상률)

ⓑ 비급여진료비 = {상기 ⓐ급여진료비 ÷ '20년도 요양기관 종별 보장률(법정본인부담 포함)} - {상기 ⓐ급여진료비}

ⓒ 연간평균 영업일수 = 365일('21년 이후 개설은 '21년 영업일수)

* 입원실 미보유 의원급은 법정 공휴일 제외한 영업일수로 계산함. 다만 예외적으로 법정공휴일 중 근무 사실을 입증할 경우, 법정공휴일 포함하여 산정

※ 단, 조치명령이 2회 이상으로 1일당 진료비가 다를 경우 낮은 금액으로 고지됨

▸손실보상대상 기간 : 소독·폐쇄·업무정지기간 및 회복기간, 정보공개기간, 자가격리기간을 고려한 기간 (중복기간 제외)

▸손실보상 제한 사유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2(손실보상금의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90호, '21.3.24.)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해당 사업장의 처분(처벌)과 손실 발생·확산의 인과관계 인정시

위와 같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을 결정합니다.

20 년 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안내사항>

○ 손실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받은 날(분할지급 대상기관은 최종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나 관할 법원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징수됩니다.

○ 결정통지서 - 약국·일반영업장用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 결정통지서

접수번호			
청구인	**기관명**	**대표자명**	
지급대상 여부	**지급대상 □ (손실보상제한 □)** **지급대상 아님 □**		
결정내역	**지급액(a+b)**	**직접비용(a)**	**기회비용(b)**
	원	원	원
	1일당 진료비 또는 영업손실액 원	손실보상대상기간 일	

▸(직접비용) 정부·지자체의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소독비용

▸(기회비용) 해당 시설·장비·인력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비용으로 일반영업장은 소독·폐쇄·출입금지기간 동안의 영업손실액, 요양기관(약국)은 소독·폐쇄·업무정지기간 및 회복기간·정보공개기간·자가격리기간을 고려한 진료(영업) 손실액
(단, 요양기관(약국)의 경우 명령이행기간 동안 발생한 실제 진료비 또는 영업손실액 차감)

- 1일당 영업손실액 = ('21년 영업이익+고정비용) ÷ (365일*)

* 약국의 경우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수로 계산함. 다만 예외적으로 법정공휴일 중 근무 사실을 입증할 경우, 영업일을 365일로 계산

※ 단, 조치명령이 2회 이상으로 1일당 영업손실액이 다를 경우 낮은 금액으로 고지됨

▸손실보상대상 기간 : 일반영업장은 소독·폐쇄·출입금지기간, 요양기관(약국)은 소독·폐쇄·업무정지기간 및 회복기간, 정보공개기간, 자가격리기간을 고려한 기간(중복기간 제외)

▸손실보상 제한 사유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2(손실보상금의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90호, '21.3.24.)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해당 사업장의 처분(처벌)과 손실 발생·확산의 인과관계 인정 시

위와 같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을 결정합니다.

20 년 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안내사항>

○ 손실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나 관할 법원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징수됩니다.

○ 결정통지서 - 사회복지시설用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 결정통지서

접수번호			
청구인	**기관명**	**대표자명**	
지급대상 여부	**지급대상 □ (손실보상제한 □)**	**지급대상 아님 □**	
결정내역	**지급액(a+b)**	**직접비용(a)**	**기회비용(b)**
	원	원	원
	▸(직접비용) 정부·지자체의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소독비용 ▸(기회비용) 지자체 조치(폐쇄 등)로 인한 서비스 미이용자의 급여비 및 상급침실이용료(비급여) 손실 ▸급여비 손실 = {(미이용자(명) × (1일당급여비) × (명령이행기간) × (1-시설유형별변동비용비율)} - {미이용자 급여비 등 정부지급액} ▸상급침실이용료 손실 = (상급침실 미이용자(명)) × (기관의 1일당 상급침실이용료) × (명령이행기간) ▸회복기간 손실 = (명령이행기간 미이용자 평균 1일당 급여비) × (최소 3일 ~ 최대 7일) * 8일 이상 전체폐쇄 장기요양기관에 한함 ▸손실보상 제한 사유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2(손실보상금의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90호, '21.3.24.)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해당 사업장의 처분(처벌)과 손실 발생·확산의 인과관계 인정 시		

위와 같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을 결정합니다.

20 년 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안내사항>

○ 손실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90일 이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나 관할 법원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징수됩니다.

○ 결정통지서 - 전담병원·전체폐쇄의료기관 의료부대사업用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 결정통지서

접수번호 (요양기관기호)		
청구인	**기관명**	**대표자명**
지급대상 여부	**지급대상 □ (손실보상제한 □)**	**지급대상 아님 □**
결정내역	**대상 영업장 수**	**개소**
	지급결정액	**원**
	▸지급결정액 = [{(1일당 영업손실액) × (전담병원 운영일수)} - {(전담병원 운영기간 실제매출액) × (총 이익률(%))}] × (운영기간 평균 병상소개율에 따른 보상비율) - 1일당 영업손실액 = (영업이익+고정비용) ÷ (365일) * ('22년도 전담병원운영 의료기관 의료부대사업) = (21년도 영업이익+고정비용) ÷ 365일 - 총 이익률(%) = (영업이익+고정비용) ÷ (매출액) × 100 * 전담병원 운영기간 중 신규사업장 = (1일당 영업손실액) × (전담병원 운영일수) ※ 병상확보 행정명령 적용기관은 '21년 8월분부터, 그 외 감염병 및 거점전담병원은 '21년 11월분부터 운영일자별 병상소개율*에 따라 구간별 보상비율 적용 * 병상소개율 대상기관 해당 시 적용 ▸손실보상 제한 사유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2(손실보상금의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90호, '21.3.24.)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해당 사업장의 처분(처벌)과 손실 발생·확산의 인과관계 인정 시 ▸영업장별 상세 내역은 뒷면 기재	

위와 같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을 결정합니다.

20 년 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안내사항>

○ 손실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90일 이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나 관할 법원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징수됩니다.

○ 결정통지서 - 전담병원 건강검진사업用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 결정통지서

<table>
<tr><td>접수번호
(요양기관기호)</td><td colspan="4"></td></tr>
<tr><td>청구인</td><td colspan="4">기관명 대표자명</td></tr>
<tr><td>지급대상
여부</td><td colspan="4">지급대상 □ (손실보상제한 □) 지급대상 아님 □</td></tr>
<tr><td rowspan="4">결정내역</td><td>구분</td><td>1일당 국가검진수입</td><td>전담병원 운영기간
실제 국가검진수입</td><td>전담병원 운영기간</td></tr>
<tr><td>금액</td><td>원</td><td>원</td><td>일</td></tr>
<tr><td colspan="2">지급결정액</td><td colspan="2">원</td></tr>
<tr><td colspan="4">▸ 지급결정액 = [{(1일당 국가검진수입) × (전담병원 운영일수) × (1 + 해당연도별 검진기관의 종별 평균 검진수입 변동률*) - {(운영기간 해당년도 1일당 국가검진수입) × (전담병원 운영일수)} × (1+ 종별 본인부담 검진수입 비율)]× (운영기간 평균 병상소개율**에 따른 보상비율)
* 전년도 대비 평균 검진수입 변동률이 양의 값이면 “0”으로 간주
** 병상소개율 대상기관 해당 시 적용
- (1일당 국가검진수입) = (국가검진수입) ÷ (연간평균 영업일수*)
* 공휴일 제외
▸손실보상 제한 사유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2(손실보상금의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90호, ’21.3.24.)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해당 사업장의 처분(처벌)과 손실 발생·확산의 인과관계 인정 시</td></tr>
</table>

위와 같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을 결정합니다.

20 년 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안내사항>

○ 손실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90일 이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나 관할 법원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징수됩니다.

○ 결정통지서 - 치료의료기관(직접비용)用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 결정통지서

접수번호	
청구인	**기관명** **대표자명**
지급대상 여부	**지급대상 □** **지급대상 아님 □**

결정내역

구분	시설철거비	폐기물처리비	환자전원비용	기타
금액				
총 직접비용 지급액		**원**		

▸(시설철거비) 정부·지자체의 지정 해제 명령으로 인해 시설철거에 소용된 비용

▸(환자전원비) 코로나19 대응 과정상 병상소개명령으로 환자를 전원한 경우 소요된 비용

▸(폐기물처리비-용역비) 코로나 19 환자 치료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처리비에 소요된 비용 [종전보다 추가된 비용에 한해 인정]

▸(폐기물처리비-부대비용(전용용기, 전자태그)) 코로나 19 환자 치료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처리(부대비용-전용용기, 전자태그)에 소용된 비용

위와 같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을 결정합니다.

20 년 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안내사항>

○ 손실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90일 이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나 관할 법원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징수됩니다.

○ 추가지급/정산/환수 결정통지서 - 치료의료기관 외用 / (분할지급) 2차 지급用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 추가지급·정산·환수 결정통지서

접수번호			
청구인	**기관명**	**대표자명**	
결정내역	**결정액**	**기 지급액**	**추가지급액/정산액/환수액**
	원	원	원
결정이유			

위와 같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을 결정합니다.

20 년 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안내사항>

○ 손실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받은 날(분할지급 대상기관은 최종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90일 이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나 관할 법원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

○ 손실보상 청구(지자체→복지부(심평원) 청구 기준) 3개월 이내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의 70% 우선 지급되며(1차),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금액 기준으로 손실보상금 최종 산정 후 금액 정산이 이루어지므로(2차) 실제진료비 발생 등에 따라 추가지급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징수됩니다.

□ 이의신청

○ 이의신청 결정통지서 - 모든 대상기관用

<table>
<tr><th colspan="6">코로나19 손실보상 이의신청 결정통지서</th></tr>
<tr><td>접수번호
(이의신청)</td><td colspan="2"></td><td>접수번호
(원청구)</td><td colspan="2"></td></tr>
<tr><td>청구인</td><td colspan="2">기관명</td><td colspan="3">대표자명</td></tr>
<tr><td>결정사항</td><td colspan="5">인용 □ 부분인용 □ 기각 □ 각하 □</td></tr>
<tr><td rowspan="2">지급결정 내역</td><td>이의신청 결정액(a)</td><td colspan="2">원청구 지급액(b)</td><td colspan="2">추가 지급액(a-b)</td></tr>
<tr><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이의내용</td><td colspan="5"></td></tr>
<tr><td>결정이유</td><td colspan="5"></td></tr>
</table>

□ 위와 같이 손실보상 이의신청을 결정합니다.

□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참고사항>

○ 인용 : 이의신청 중 전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용하는 결정
○ 부분인용 : 이의신청 중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용하는 결정
○ 기각 : 이의신청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용하지 않은 결정
○ 각하 : 이의신청 형식적인 요건(절차·기간 등)에 흠결이 있어 수용하지 않은 결정

* 필요시 별지 작성 가능

붙임13 **이의신청서**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 결과

이의신청서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경영자 또는 소유자와의 관계
	주소	
이의신청 사유 (상세 기재)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 결과에 대해 상기 사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붙임14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정산 안내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치료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정산 안내문

☐ 정부·지자체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협조해주신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개산급 형태로 지급되던 손실보상금에 대한 정산 시행 예정임을 안내드리며, 위 항목을 확인 후 정산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운영 또는 지정해제기관

☐ 정산 이전에 해당 운영기간 및 회복기간(일부 해당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접수)가 완료 되어져야 하며, 정산 이후 해당기간 요양급여비용의 추가 청구는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산 대상 기관의 정산 신청이 없을 경우, 직권으로 정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산결과에 따라 손실보상금 추가 지급 또는 환입금 발생에 따른 추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직접 지급·환입하며, 통지받은 손실보상금 정산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임의 서식, 이의신청사유 상세 기술) 및 이의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함)

☐ 손실보상 정산 신청부터 결정까지는 최소 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 근거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정산 결정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징수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처	전화번호		e-mail	

붙임15 **손실보상 정산 신청서**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정산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경영자 또는 소유자와의 관계
	주소		
경영자 또는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요양기관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시설 명칭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시설 소재지		
	요양기관기호		
	치료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생활치료센터) 운영 기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요양기관 확인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심의 및 사실확인	보상 금액 결정	통보
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붙임16 **치료의료기관 등 정산 확인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치료의료기관 등 정산 확인서

신청인은 동 요양기관의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 정산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완료**하였고, 이후 **추가 청구 할 내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1.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등 전담병원 운영기간* : 20 ~ 20

   * 감염병·거점전담병원은 운영기간 + 회복기간까지 기재

2. 운영기간*의 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모든 진료) 심사청구년월(최종): 20 . .

   * 감염병·거점전담병원은 운영기간 + 회복기간까지 기재

3. 기 제출 조사표 자료 : □ 이상 있음 □ 이상 없음

   (이상 있는 경우: 내용 기재)

20 년 월 일

신청인 요양기관명 :

대표자(개설자)명 : (서명)

보건복지부장관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주의사항>

○ 동 확인서 제출 시점 이후 추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하는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및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손실보상금이 더 지급되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환수되며, 추가로 제재부가금이 징수됩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 70조 제 1항에 의거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전담병원(병상) 운영 기간 당시 실제 발생한 손실(또는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손실)보전의 목적이 있으며, 건강보험 등에서 지급되는 요양급여비용은 실제 발생한 손실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7 **치료의료기관 등 정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정산

개 인 정 보 제 공 동 의 서

신청인의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정산신청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손실보상 정산신청서 및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제공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제공받는 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받는 자의 목적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상 청구 건에 대한 심사**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손실보상청구서 및 증빙서류 상의 손실내용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특정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64조(상사시효)를 준용하여 **거래완료 후 5년 간 보관**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시 손실보상 청구건에 대한 심사 대상에서 제외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나. 고유식별정보 처리고지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손실보상청구서 및 증빙서류상의 손실내용**
개인정보 처리사유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상 청구 건에 대한 심사
처리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손실보상)**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

대표자명 : (서명)

보건복지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붙임18 **손실보상 정산 신청 위임장**

손실보상 정산 신청 위임장

위임자	성명 (사업장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위임받는 사람과의 관 계		업종	
	주소	☎		
위임 받는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		
위 임 내 용				

위와 같이 위임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정산 신청 업무 일체를 상기인에게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안내사항>

○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른 사람의 인감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붙임19 **손실보상 정산 결정통지서**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정산 결정통지서

접수번호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명**	
결정내역	**결정액(❶+❷+❸+❹)**		**기 지급액**	**추가지급(환입)액**
	원		원	원
	구분	**미사용 병상손실❶**	**사용 병상손실❷**	**일반환자감소손실❸**	**회복기간 손실❹**
	금액	원		원	원
	▶ (미사용 병상 손실) 정부·지자체의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 (사용 병상 손실)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 (일반환자 감소 손실)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간(지정병원의 경우 운영기간) 동안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진료비 손실 ▶ (회복기간 손실) 전담병원 운영 종료 후 회복기간(최대 6개월(180일) 범위 내) 동안의 진료비 손실			

위와 같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을 결정합니다.

20 년 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안내사항>

○ 손실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90일 이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나 관할 법원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징수됩니다.

□ 코로나19 손실보상 모니터링 화면 접속방법

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접속

② 우측상단 로그인 클릭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보장기관 인증서 사용)

③ 코로나19 손실보상 모니터링 화면 접속

- 메뉴: 마이페이지 > 코로나19 손실보상 모니터링(시도)

□ 코로나19 손실보상 모니터링 방법

① 해당 시군구 선택하여 제출현황 조회

- 시·군·구 및 제출현황 목록 클릭하여 상세현황 조회 가능
- 엑셀저장 버튼 클릭하여 제출현황 및 상세현황 엑셀저장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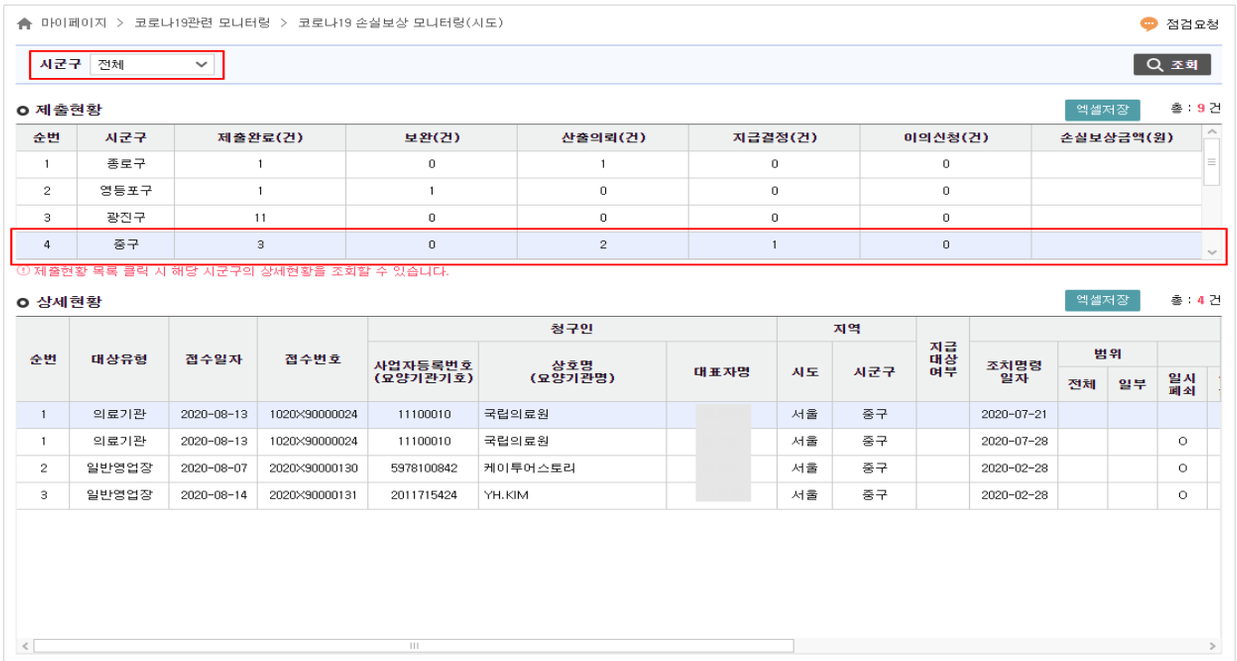

※ 해당 시·도, 시·군·구만 모니터링 가능하며, 기관별 지급내역 및 합계 확인 가능

□ [참고] 시도별 보장기관 계정

순번	계정	시도명	비고
1	nana3803	서울특별시청	
2	dhchaa	부산광역시청	
3	iccity	인천광역시청	
4	qhrjsrhk11	대구광역시청	
5	gwangju	광주광역시청	
6	daejeon0421	대전광역시청	
7	hhealth1399	울산광역시청	
8	gyeonggi	경기도청	
9	jcwbook6881	강원도청	
10	mass0008	충청북도청	
11	namoo511	충청남도청	
12	ohm9191	전라북도청	
13	iamejp1	전라남도청	
14	sangmian	경상북도청	
15	pks0624	경상남도청	
16	suki25	제주특별자치도청	
17	sejong3883	세종특별자치시청	

□ 코로나19 손실보상 조사표 작성화면 접속방법

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접속

② 우측 상단 로그인 클릭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보건소 인증서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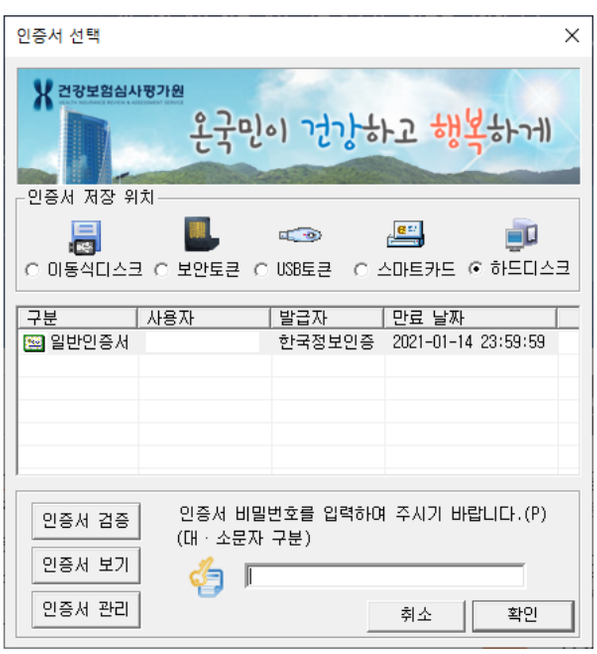

③ 코로나19 손실보상조사표 작성(지자체) 화면 접속

- 메뉴경로: 코로나관련신고 > 코로나19 손실보상조사표 작성(지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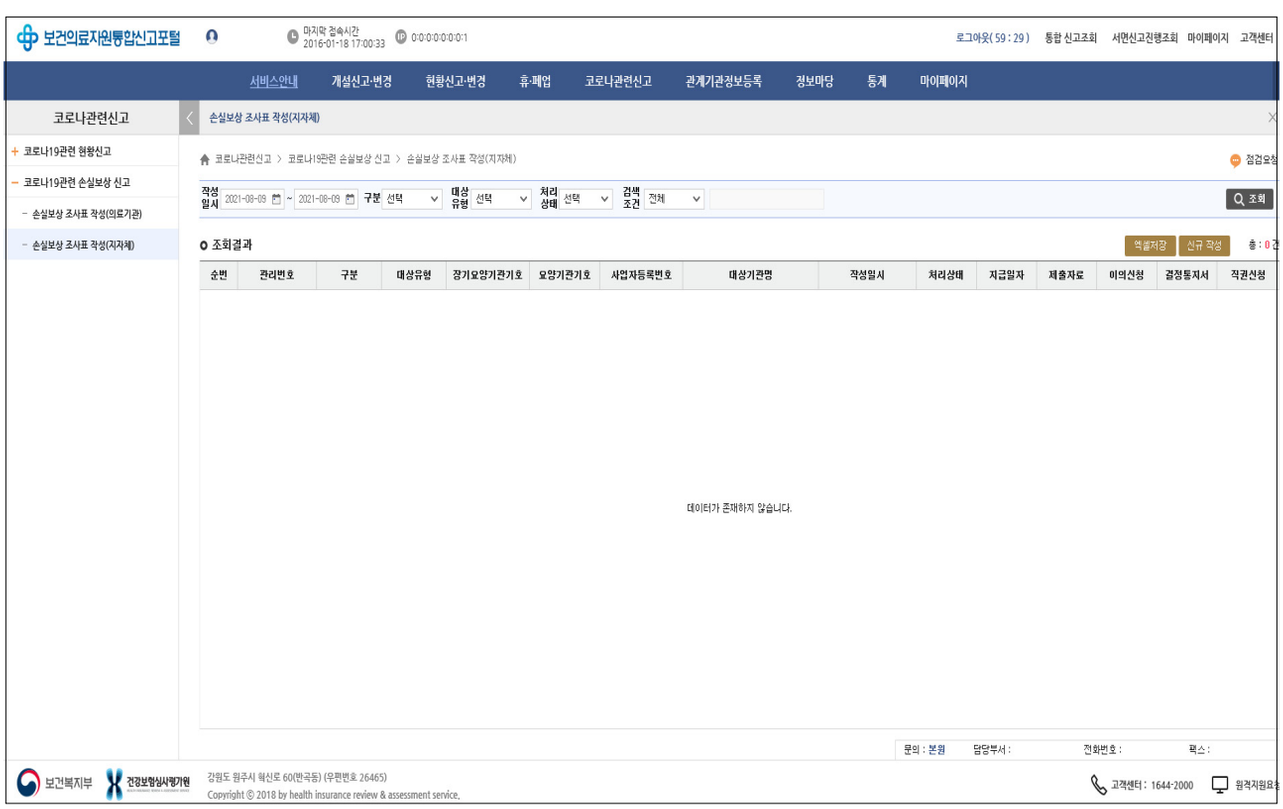

□ 코로나19 손실보상 모니터링 방법

○ 해당 시·군·구 선택하여 제출현황 조회

- 시·군·구 및 제출현황 목록 클릭하여 상세현황 조회 가능
- 엑셀저장 버튼 클릭하여 제출 및 기관별 지급현황 조회 가능

□ (원청구) 코로나19 손실보상 조사표 작성방법

① 조회결과 화면에서 신규 작성 버튼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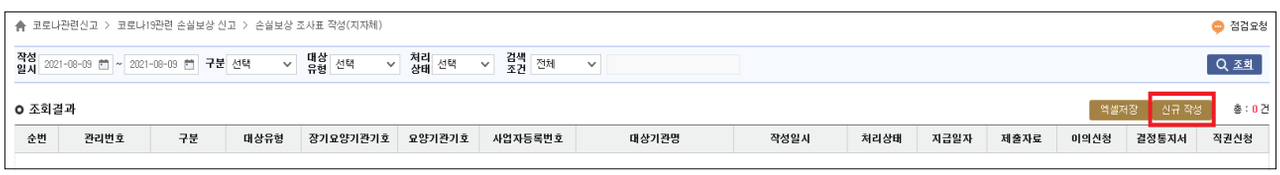

② 팝업화면에서 대상유형 선택하여 작성화면으로 이동

- 대상유형: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의료부대사업

③ 작성화면에서 내용입력 후 최종제출 버튼 클릭하여 자료 제출

- 임시저장 버튼 클릭하여 임시저장 가능

* 항목별 상세설명은 '조사표 작성방법' 참조

④ 조회결과 목록 화면에서 제출내역 확인

- 제출완료 건은 조회 버튼 클릭하여 조회 가능
- **제출완료건**에 대하여 서류보완, 입력사항 추가* 등 필요시 심평원에 **보완요청(유선 및 사유 기재 공문) ⇒ 심평원 승인**후 **"보완요청" 상태**로 변경 후 **내용 수정 및 최종 제출(보완완료), '기타전달사항' 란에 기재**

* 손실보상 조사표 제출완료 이후(손실보상 지급 이전) 방역수칙 위반행위 등 손실보상 제한 사유 입력 필요시 등

- 임시저장 건은 수정 버튼 클릭하여 내용 수정 및 최종 제출 가능

※ 동일 조치명령건 중복체크

- **동일 약국·영업장별 조치명령일자 조회하여 중복여부 확인가능**

□ [이의신청] 코로나19 손실보상 조사표 작성방법

① 조회 결과 화면에서 이의신청 신청 버튼 클릭

*** 지급일자 기준 30일 이내 시스템에 이의신청 등록**

② 작성화면에서 내용입력 후 최종제출 버튼 클릭하여 자료 제출

* 항목별 상세설명은 '조사표 작성방법'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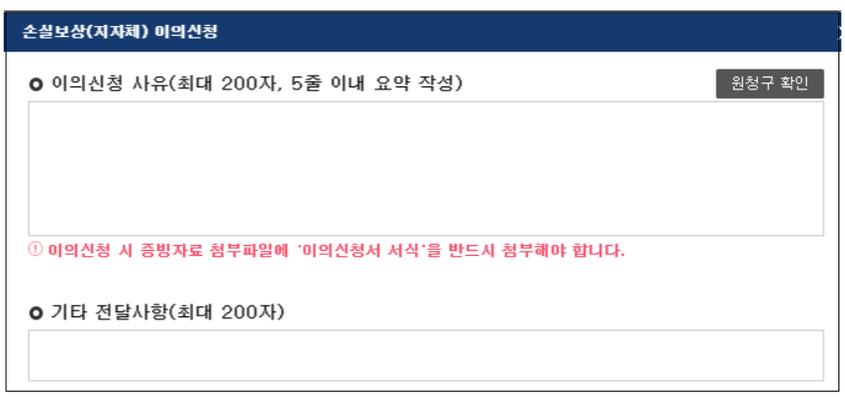

③ 조회결과 목록 화면에서 제출내역 확인

- 제출완료 건은 조회 버튼 클릭하여 조회 가능(제출내역 수정불가)

□ [손실보상 제한 사유] 코로나19 손실보상 조사표 작성방법(지급이후)

① 조회 결과 화면에서 지급 완료된 원청구건에 대해 **"손실보상 제한(직권신청)"** 버튼 클릭

*** 손실보상금 지급 이후 방역수칙 위반 등 손실보상 제한사유 입력시**

② 작성화면에서 내용입력 후 최종제출 버튼 클릭하여 자료 제출

* 항목별 상세설명은 '조사표 작성방법' 참조

- 손실보상 제한 대상 여부: 예, 진행/완료 사항 입력
- 손실보상 제한 사유 현황 입력: 위반행위일, 위반법령, 위반내용, 처분일, 처분내용, 형사고발일, 처벌확정일, 처벌세부내용 등 입력

※ **손실보상금 지급 이후 입력한 <u>진행 중 처분(처벌)건이 확정되어 추가 입력(완료)하는 경우 반드시 복지부 중수본·심평원에 공문 발송</u>**(Ⅳ.손실보상처리절차-3 접수·검토 및 제출-【참고3】), 이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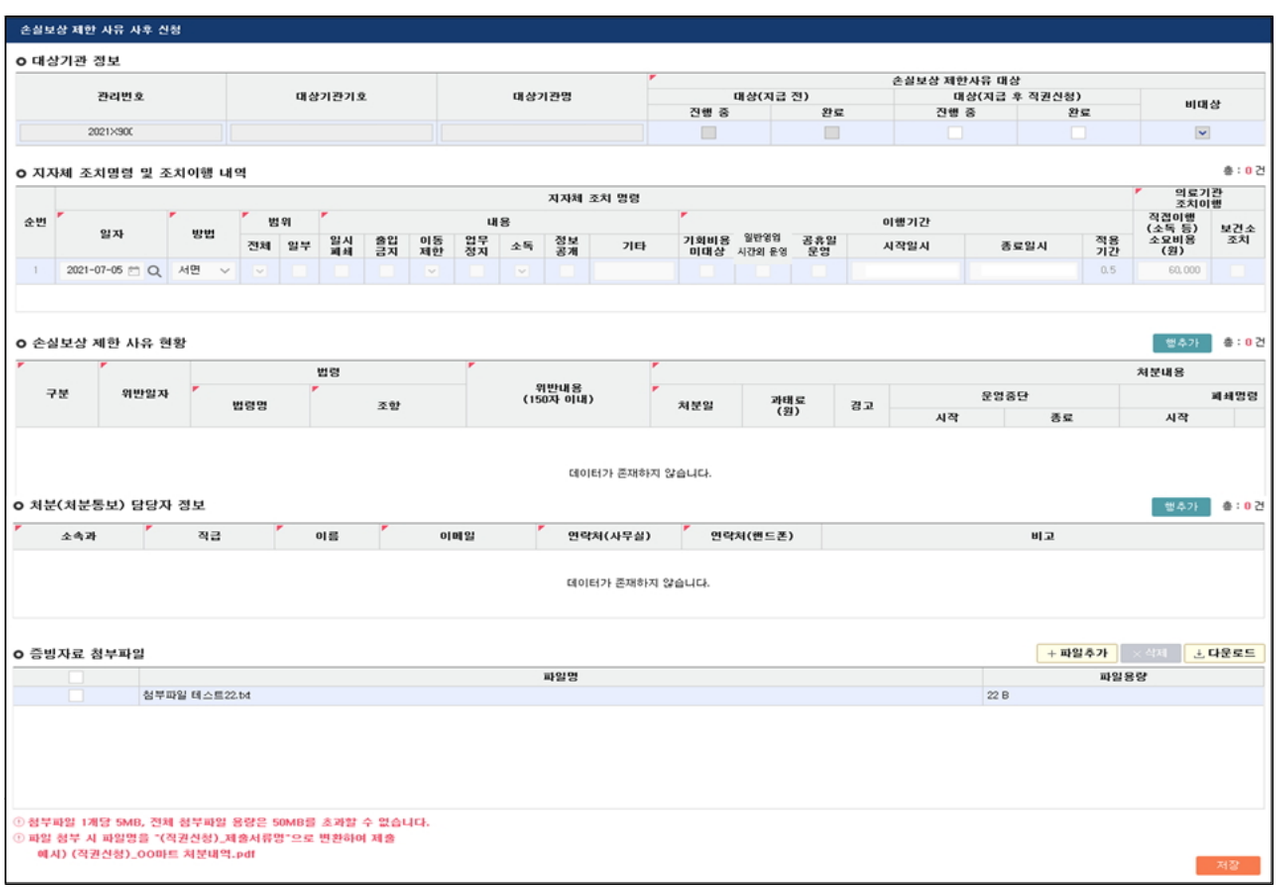

□ [별첨] 대상유형별 작성 화면

○ 의료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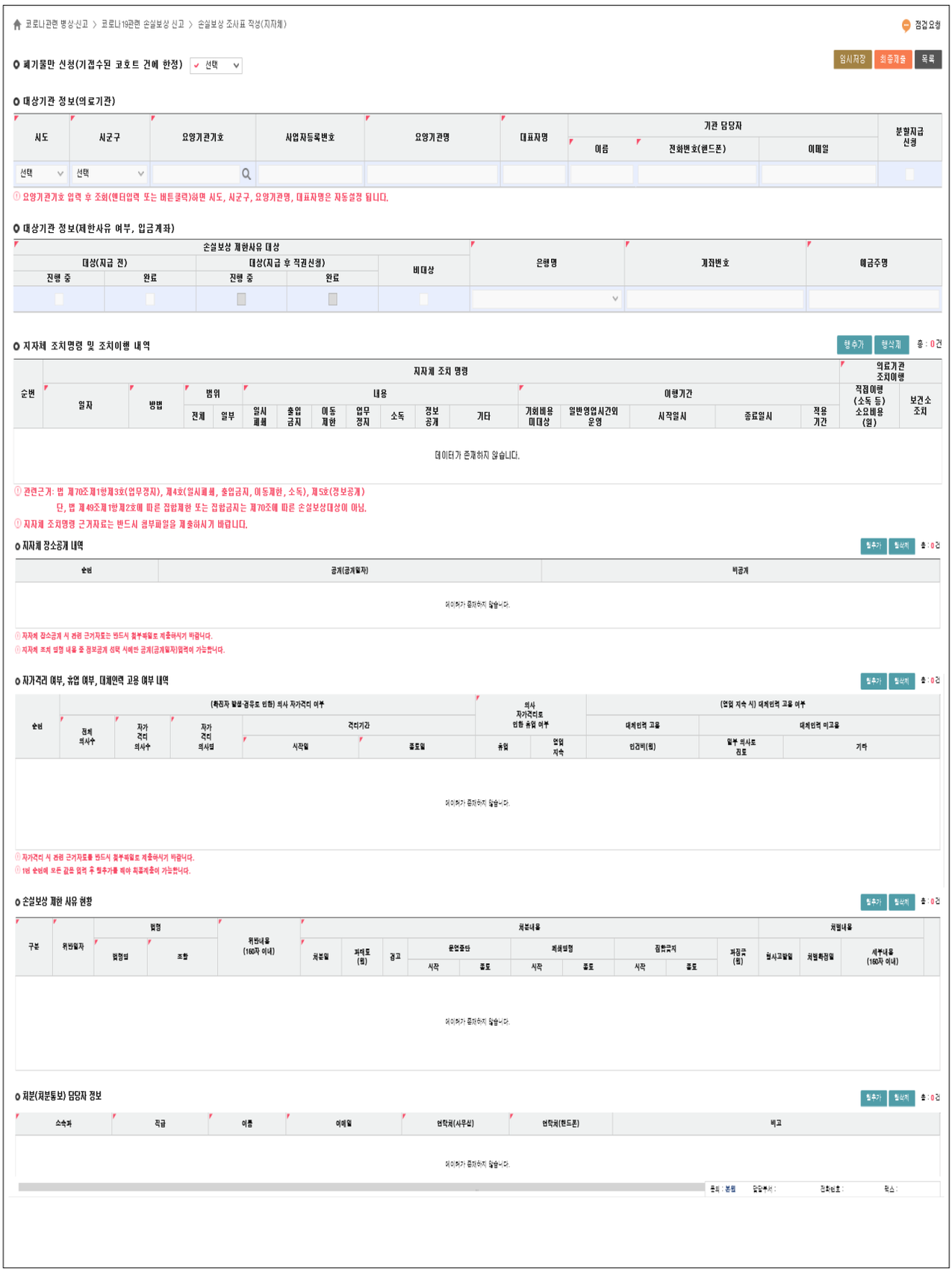

행추가 행삭제

ㅇ 폐기물 내역

순번	구분	
	코호트	확진자 치료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코호트 및 확진자 치료 전부 Y 선택 시 신청가능

ㅇ 폐기물 처리비(용역비)

행추가 행삭제 총 : 0건

순번	조치명령		계약기간		계약구분	계약금 총액	단가(kg당, 원)		총의료폐기물 중량(kg) E=C+D, 자동계산	중량(kg)		처리금액(자동계산) F=(A×C)+(B×D)	비고
	시작일자	종료일자	시작일자	종료일자			일반의료폐기물(A)	코로나19의료폐기물(B)		일반의료폐기물(C)	코로나19의료폐기물(D)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2021년 11월 01일 이후 조치명령 건만 신청 가능

ㅇ 폐기물 처리비(부대비용-코로나19 폐기물 전용용기, 전자태그)

행추가 행삭제 총 : 0건

순번	조치명령		계약구분(부대비용)	전용용기 (전자태그수)(A)	전용용기 (전자태그 수)단가(B)	전자태그 수 별도 (C)	전자태그 수 별도 단가 (D)	처리금액(자동계산) E=(A×B)+(C×D)	비고
	시작일자	종료일자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2021년 11월 01일 이후 조치명령 건만 신청 가능

ㅇ 시군구 담당자 정보 등

소속과	직급	이름	이메일	연락처(사무실)	연락처(핸드폰)	기타 전달사항
위생과	1급	김보건	abcd3@ddd.com	033-739-2222	010-9999-9991	

ㅇ 보완요청 내용

ㅇ 증빙자료 첨부파일 파일 용량이 초과할 경우

+ 파일추가 X 삭제 ↓ 다운로드

□	파일명	파일용량

○ 약국

● 대상기관 정보(약국) [임시저장] [최종제출] [목록]

시도	시군구	요양기관기호	사업자등록번호	요양기관명	대표자명	기관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핸드폰)	이메일
선택	선택							

! 요양기관기호 입력 후 조회(엔터입력 또는 버튼클릭)하면 시도, 시군구, 요양기관명, 대표자명은 자동설정 됩니다.

● 대상기관 정보(제한사유 여부, 입금계좌)

손실보상 제한사유 대상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대상(지급 전)		대상(지급 후 적권신청)		비대상			
진행 중	완료	진행 중	완료				
☐	☐	☐	☐	☐			

! 관련근거: 법 제70조제1항제3호(업무정지), 제4호(일시폐쇄, 출입금지, 이동제한, 소독), 제5호(정보공개)
단,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는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대상이 아님.
! 지자체 조치명령 근거자료는 반드시 첨부파일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손실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필수)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제출(필수)			전년도 표준재무제표 증명 발급 가능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 불가능											
	폐업 시	8일 이상 폐쇄·업무정지	장소공개		기존사업장							신규사업장				
					매출액 증빙			고정비 증빙(선택)				매출액 증빙	고정비 증빙(선택)			
	폐업사실 증명원	회복기간 일별매출장 (폐쇄·업무정지 종료일 다음날부터 7일까지)	정보공개로 인한 휴업기간 일별매출장 (정보공개일 당일 포함 7일)	전년도 표준재무제표 증명(필수)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과세사업자)	전년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필수)	급여	임차료	광고 선전비	보험료	월별매출장 (개업월부터 폐쇄·업무정지 종료월까지)	급여	임차료	광고 선전비	보험료
☐	☐	☐	☐	☐	☐	☐	☐	☐	☐	☐	☐	☐	☐	☐	☐	☐

! 고정비용의 경우 해당 서류 첨부 시 체크하고, 아래의 서류를 반드시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존사업장>
① 급여 :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2019년)
② 임차료 : 부동산 및 기계류 임대차계약서(계약서와 이체내역이 상이한 경우 2019년 1년치 통장이체내역 첨부)
③ 광고선전비 : 광고선전계약서(2019년), 광고선전비 이체내역(2019년)
④ 보험료 : 보험증권사본(2019년 유효계약건, 영업장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영업용차량보험에 한함)
① <신규사업장>
① 급여 : 급여이체내역(개업일부터 조치해당월),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대장(개업일~조치해당월)
* 근로자 개인정보는 삭제요망
② 임차료 : 부동산 및 기계류 임대차계약서
③ 광고선전비 : 광고선전계약서, 광고선전비 이체내역
④ 보험료 : 보험증권사본(영업장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영업용차량보험에 한함)

● 지자체 장소공개 내역 [행추가] [행삭제] 총 : 0 건

순번	공개(공개일자)	비공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지자체 장소공개 시 관련 근거자료는 반드시 첨부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조치 명령 내용 중 정보공개 선택 시에만 공개(공개일자)입력이 가능합니다.

● 자가격리 여부, 휴업 여부, 대체인력 고용 여부 내역 [행추가] [행삭제] 총 : 0 건

순번	(확진자 발생·경유로 인한) 약사 자가격리 여부					약사 자가격리로 인한 휴업 여부		(영업 지속 시) 대체인력 고용 여부		
	전체 약사수	자가 격리 약사수	자가 격리 약사명	격리기간		대체인력 고용	대체인력 미고용			
				시작일	종료일	휴업	영업 지속	인건비(원)	일부 의사로 진료	기타

● 손실보상 제한 사유 현황 [행추가] [행삭제] 총 : 0 건

구분	위반일자	법령		위반내용 (150자 이내)					
		법령명	조항		처분일	과태료 (원)	경고	운영중단	
								시작	종료

● 처분(처분통보) 담당자 정보 [행추가] [행삭제] 총 : 0 건

소속과	직급	이름	이메일	연락처(사무실)	연락처(핸드폰)	비고

● 시군구 담당자 정보 등

소속과	직급	이름	이메일	연락처(사무실)	연락처(핸드폰)	기타 전달사항
위생과	1급	김보건	abcd3@ddd.com	033-739-2222	010-9999-9991	

● 보완요청 내용

● 증빙자료 첨부파일 [파일 용량이 초과할 경우] [+ 파일추가] [× 삭제] [↓ 다운로드]

☐	파일명	파일용량

○ 일반영업장

※ 일반영업장(일반절차, 간이정액지급절차 모두)은 동일한 영업장의 경우에도 지자체가 조치한 공문, 명령서 건별로 각각 구분하여 청구조사표 작성요 ('21.4.30.~)

○ 사회복지시설

● 대상기관 정보(사회복지시설)

임시저장 | 최종제출 | 목록

시도	시군구	사업자등록번호	장기요양기관기호	기관명	대표자명	기관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핸드폰)	이메일
선택	선택							

● 대상기관 정보(제한사유 여부, 입금계좌)

손실보상 제한사유 대상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대상(지급 전)		대상(지급 후 직권신청)		비대상			
진행 중	완료	진행 중	완료				
☐	☐	☐	☐	☐			

● 지자체 조치명령 및 조치이행 내역

행추가 | 행삭제 총 : 1 건

순번	지자체 조치 명령													사회복지시설 조치 이행	
	일자	방법	범위		내용						이행기간			직접이행 (소독 등) 소요비용 (원)	보건소 조치
			전체	일부	일시 폐쇄	출입 금지	이동 제한	소독	정보 공개	기타	기회비용 미대상	일반영업시간외 운영	시작일시	종료일시	적용 기간		
1		선택	☐	☐	☐	☐	☐	☐	☐		☐	☐	____-__-__ __:__	____-__-__ __:__			☐

ⓘ 관련근거: 법 제70조제1항제3호(업무정지), 제4호(일시폐쇄, 출입금지, 이동제한, 소독)
단,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는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대상이 아님.
ⓘ 지자체 조치명령 근거자료는 반드시 첨부파일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미이용자로 인한 손실내역

행추가 | 행삭제 총 : 1 건

순번	미이용자 성명	주민번호6자리 (생년월일)	미이용기간		상급침실 이용		
			시작일자	종료일자	1인실	2인실	이용안함
1					☐	☐	☐

ⓘ 상급침실 이용 근거자료는 반드시 첨부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손실보상 제한 사유 현황

행추가 | 행삭제 총 : 0 건

구분	위반일자	법령		위반내용 (150자 이내)	처분일	과태료 (원)	경고	운영중단	
		법령명	조항					시작	종료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처분(처분통보) 담당자 정보

행추가 | 행삭제 총 : 0 건

소속과	직급	이름	이메일	연락처(사무실)	연락처(핸드폰)	비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시군구 담당자 정보 등

소속과	직급	이름	이메일	연락처(사무실)	연락처(핸드폰)	기타 전달사항
위생과	1급	김보건	abcd3@ddd.com	033-739-2222	010-9999-9991	

● 보완요청 내용

● 증빙자료 첨부파일 파일 용량이 초과할 경우

+ 파일추가 | × 삭제 | 다운로드

	파일명	파일용량
☐		

○ 전체폐쇄의료기관 의료부대사업

대상기관 정보

임시저장 | 최종제출 | 목록

시도	시군구	요양기관기호	사업자등록번호	요양기관명	대표자명	기관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핸드폰)	이메일
선택	선택							

요양기관기호 입력 후 조회(엔터입력 또는 버튼클릭)하면 시도, 시군구, 요양기관명, 대표자명은 자동설정 됩니다.

대상기관 정보(제한사유 여부, 입금계좌)

손실보상 제한사유 대상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대상(지급 전)		대상(지급 후 직권신청)		비대상			
진행 중	완료	진행 중	완료				
☐	☐	☐	☐	☐			

지자체 조치명령 및 조치이행 내역

행추가 | 행삭제 총 : 1 건

순번	지자체 조치 명령										의료기관 조치이행	
	일자	방법	범위	내용			이행기간				직접이행 (소독 등) 소요비용 (원)	보건소 조치
			전체	일시 폐쇄	업무 정지	기타	기회비용 미대상	일반영업시간외 운영	시작일시	종료일시	적용 기간	
1		선택	☐	☐	☐		☐	☐	____-__-__ __:__	____-__-__ __:__		☐

관련근거: 법 제70조제1항제3호(업무정지), 제4호(일시폐쇄, 출입금지, 이동제한, 소독), 제5호(정보공개)
단,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는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대상이 아님.
지자체 조치명령 근거자료는 반드시 첨부파일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장 정보 작성

행추가 | 행삭제 총 : 1 건

구분	유형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손실보상 담당자			기타 전달사항
					이름	전화번호(핸드폰)	이메일	
선택	선택							

영업장 정보 작성

영업손실 증빙자료 1			
사업자등록증 (필수)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제출		
	휴업 또는 폐업 시	환자식 및 직원식 동시 운영 중인 급식업체	
	휴·폐업 사실 확인서	전년도 전체 매출 장 및 환자식/직원식 구분계리한 전체 매출현황*	폐쇄기간 전체 매출현황 및 동기간 환자식/직원식 구분계리한 일별 매출현황*
☐	☐	☐	☐

영업손실 증빙자료 2 (전년도)											
기존 사업장											
매출액(필수)			고정비								
표준재무 제표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전년도 일별매출장 (월별합계) (필수)	고정비 없음	급여	임차료	광고 선전비	보험료	복리 후생비	세금과 공과	퇴직 급여	감가 상각비
☐	☐	☐	☐	☐	☐	☐	☐	☐	☐	☐	☐

영업손실 증빙자료 3 (폐쇄기간)																					
기존 사업장												폐쇄기간 중 신규 사업장									
매출액			고정비									매출액	고정비								
표준재무 제표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폐쇄기간 일별매출장 (월별합계) (필수)	고정비 없음	급여	임차료	광고 선전비	보험료	복리 후생비	세금과 공과	퇴직 급여	감가 상각비	일별매출장 (월별합계) (폐쇄기간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고정비 없음	급여	임차료	광고 선전비	보험료	복리 후생비	세금과 공과	퇴직 급여	감가 상각비
☐	☐	☐	☐	☐	☐	☐	☐	☐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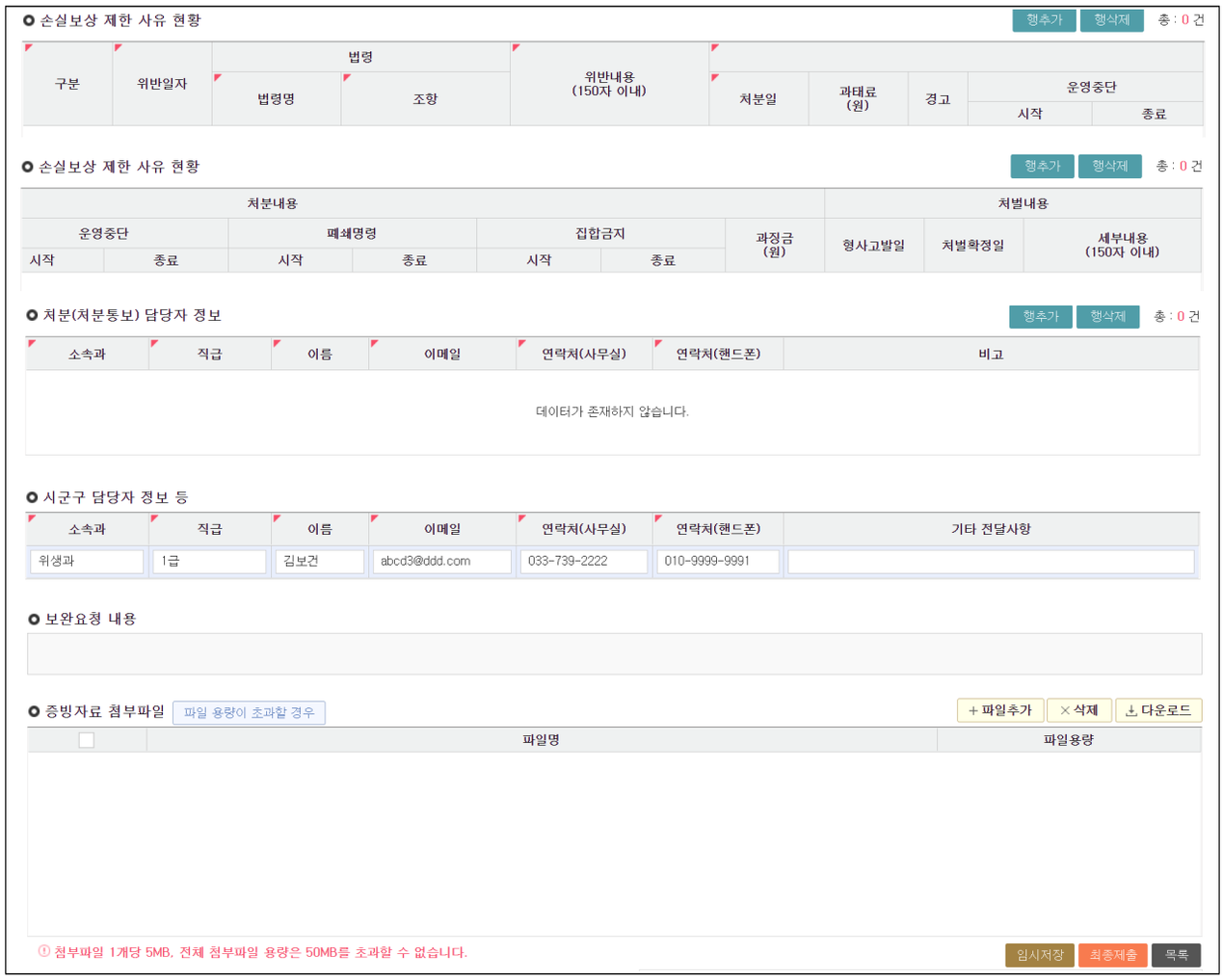
손실보상 제한 사유 현황
행추가
행삭제
총 : 0 건
구분
위반일자
법령
법령명
조항
위반내용 (150자 이내)
처분일
과태료 (원)
경고
운영중단
시작
종료
손실보상 제한 사유 현황
행추가
행삭제
총 : 0 건
처분내용
운영중단
시작
종료
폐쇄명령
시작
종료
집합금지
시작
종료
과징금 (원)
처벌내용
형사고발일
처벌확정일
세부내용 (150자 이내)
처분(처분통보) 담당자 정보
행추가
행삭제
총 : 0 건
소속과
직급
이름
이메일
연락처(사무실)
연락처(핸드폰)
비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군구 담당자 정보 등
소속과
직급
이름
이메일
연락처(사무실)
연락처(핸드폰)
기타 전달사항
위생과
1급
김보건
abcd3@ddd.com
033-739-2222
010-9999-9991
보완요청 내용
증빙자료 첨부파일
파일 용량이 초과할 경우
+ 파일추가
× 삭제
다운로드
파일명
파일용량
첨부파일 1개당 5MB, 전체 첨부파일 용량은 5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시저장
최종제출
목록

○ 감염병전담병원 등 의료부대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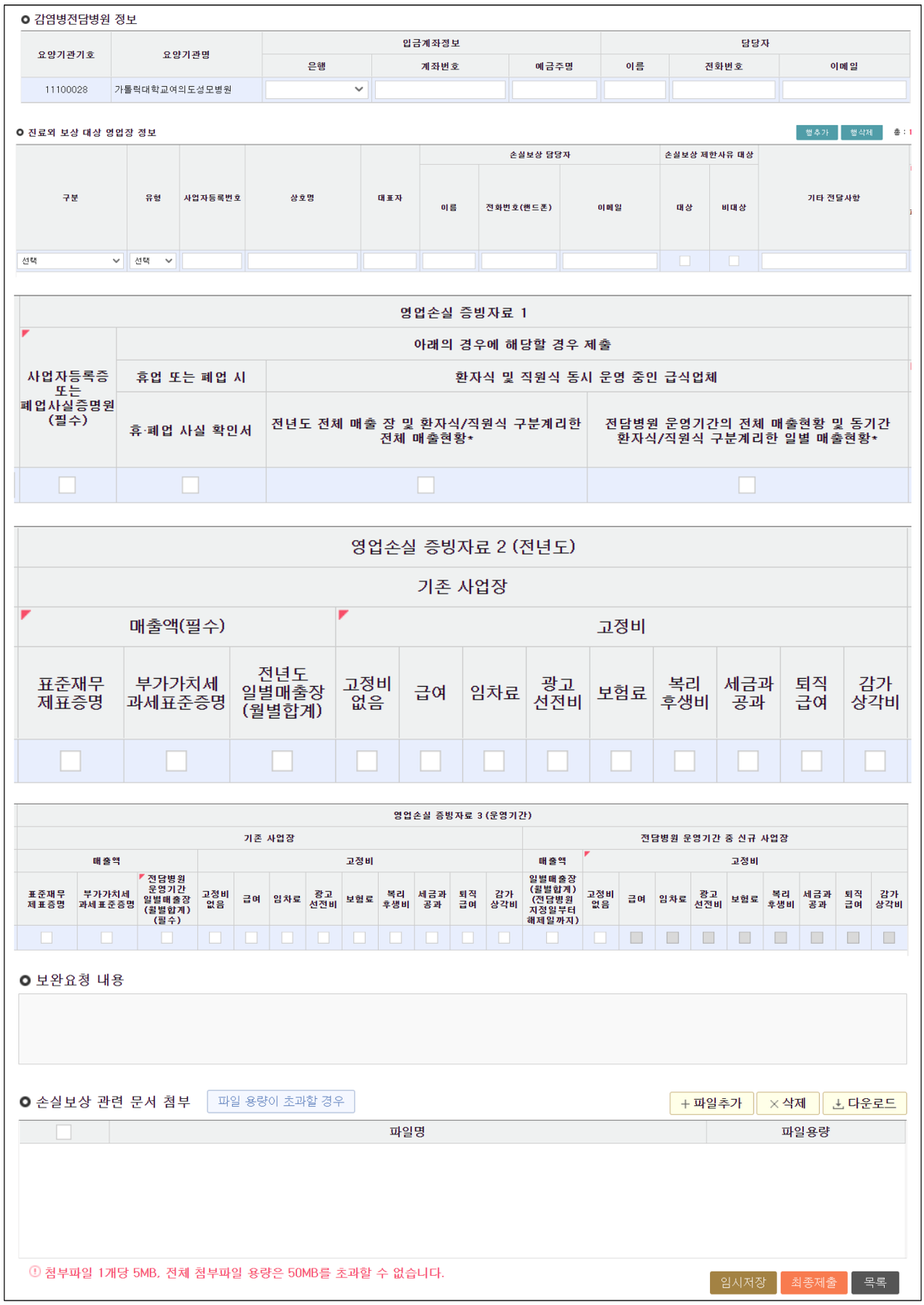

감염병전담병원 정보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명	입금계좌정보			담당자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11100028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						

진료외 보상 대상 영업장 정보 (행추가 / 행삭제 / 총 : 1)

구분	유형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손실보상 담당자			손실보상 제한사유 대상		기타 전달사항
					이름	전화번호(핸드폰)	이메일	대상	비대상	
선택	선택									

영업손실 증빙자료 1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필수)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제출		
	휴업 또는 폐업 시	환자식 및 직원식 동시 운영 중인 급식업체	
	휴·폐업 사실 확인서	전년도 전체 매출 장 및 환자식/직원식 구분계리한 전체 매출현황*	전담병원 운영기간의 전체 매출현황 및 동기간 환자식/직원식 구분계리한 일별 매출현황*
☐	☐	☐	☐

영업손실 증빙자료 2 (전년도)

기존 사업장

매출액(필수)			고정비								
표준재무 제표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전년도 일별매출장 (월별합계)	고정비 없음	급여	임차료	광고 선전비	보험료	복리 후생비	세금과 공과	퇴직 급여	감가 상각비
☐	☐	☐	☐	☐	☐	☐	☐	☐	☐	☐	☐

영업손실 증빙자료 3 (운영기간)

기존 사업장											전담병원 운영기간 중 신규 사업장								
매출액			고정비								매출액	고정비							
표준재무 제표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전담병원 운영기간 일별매출장 (월별합계) (필수)	고정비 없음	급여	임차료	광고 선전비	보험료	복리 후생비	세금과 공과	퇴직 급여	감가 상각비	일별매출장 (월별합계) (전담병원 지정일부터 해제일까지)	고정비 없음	급여	임차료	광고 선전비	보험료	복리 후생비	세금과 공과	퇴직 급여	감가 상각비
☐	☐	☐	☐	☐	☐	☐	☐	☐	☐	☐	☐	☐	☐	☐	☐	☐	☐	☐	☐	☐	☐

보완요청 내용

손실보상 관련 문서 첨부 (파일 용량이 초과할 경우) (+파일추가 / ×삭제 / 다운로드)

☐	파일명	파일용량

첨부파일 1개당 5MB, 전체 첨부파일 용량은 5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시저장 / 최종제출 / 목록)

○ 감염병전담병원 등 건강검진사업

요양기관 정보 작성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명	입금계좌정보			담당자			기준 검진수입 연도	손실보상 제한사유 대상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대상	비대상
11100028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	선택						선택		

보완요청 내용

건강검진 관련 문서 첨부 ＋파일추가 ×삭제 다운로드

	파일명	파일용량

○ 치료의료기관 직접비용

● 기본정보

요양기관	작성일시	처리상태	작성자	작성자 연락처 (핸드폰)	이메일	금융기관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						선택			

● 시설철거비 엑셀저장 총 : 0 건

순번	지정해제일자	철거일자	금액	기타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적정성 심사 후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병동·병상의 전체 리모델링 등 과도한 철거비용과 병상의 구조변경 및 전반적인(전체) 도색·타일교체 등 병상운영을 위한 과도한 수리비*는 보상에서 제외
-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시 사용된 시설물이나 물품 등을 철거한 후 해당 병상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일부 수리비는 지원
* (수리비 예시) 시설철거에 따른 병상 운영 시 불가피한 공사비용으로 격막제거에 따른 파손된 천장 부분 및 바닥 타일 보수를 위한 부분 수리비 등

● 환자전원비(원외차량, 원내차량) 엑셀저장 총 : 0 건

순번	항목	일자	요금	이용횟수	발생금액	기타

● 폐기물처리비(용역비) 엑셀저장 총 : 3 건

순번	계약기간		계약금 총액	계약구분 (용역비)	단가(kg당)		기타
	시작일자	종료일자			일반 의료폐기물	코로나19 의료폐기물	
1	- -	- -	0	기타	0	0	

● 폐기물처리비(부대비용-코로나19 폐기물 전용용기, 전자태그) 엑셀저장 총 : 7

순번	구입일자	전자태그 포함 계약여부	용기종류	규격(L)	용기수량	용기단가	전자태그 수량	전자태그 단가	기타
3	- -	전자태그 별도			0	0	0	0	

! 엑셀 업로드 시 용기구입일자, 종류, 규격, 수량별 단가 기재
! 전자태그포함 계약여부란에 전자태그 포함 또는 전자태그 별도로 기재
① 전용용기와 전자태그를 함께 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 : '전자태그 포함'으로 기재 후 용기란에만 입력
② 전용용기와 전자태그를 별도 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 : '전자태그 별도'로 기재 후 용기는 용기란에, 전자태그는 전자태그란에 각각 입력

● 보완요청 내용

● 첨부파일 + 파일추가 × 삭제 다운로드

	파일명	파일용량

! 파일 첨부 시 첨부명을 "요양기호_병원명_제출서류명"으로 변환하여 제출
예시) 12345678_○○의료원_폐기물처리비(용역비), 12345678_○○의료원_환자전원비

○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이의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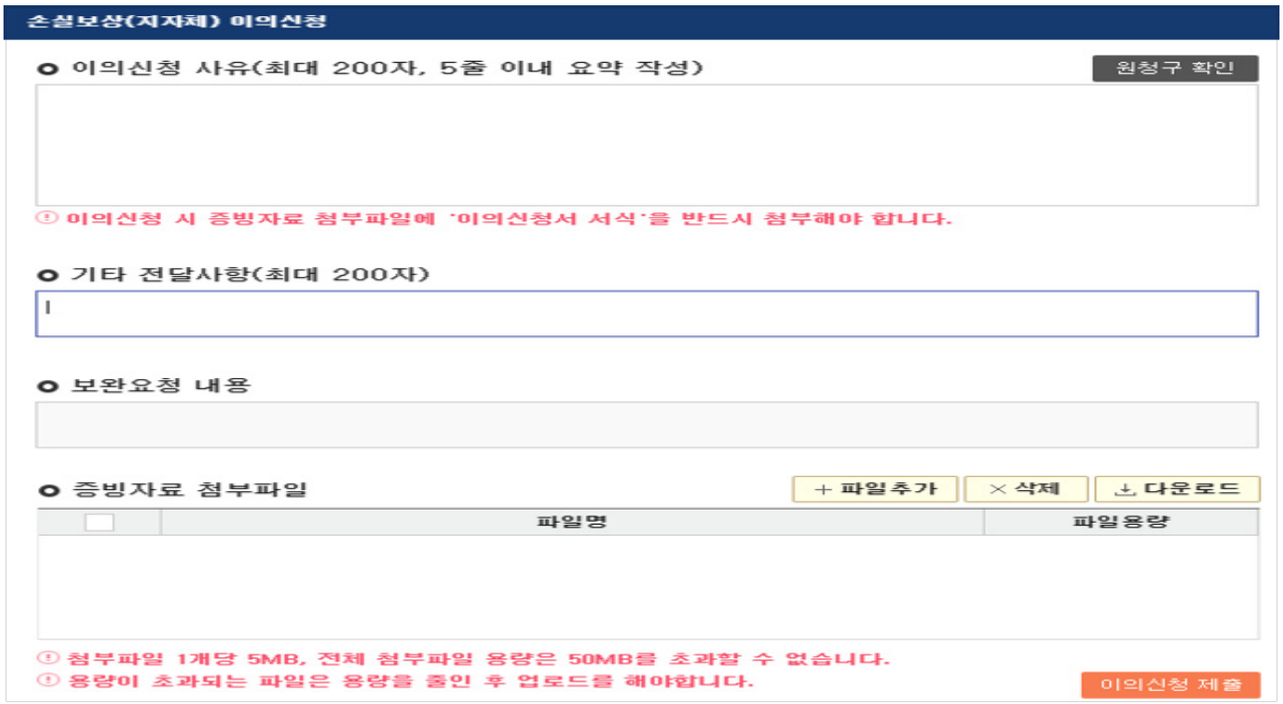

○ (의료부대사업) 이의신청

붙임22 영업시간 외 보건소에서 직접 소독한 경우 손실보상 업무 처리

□ 폐쇄 등 조치 없이 **소독 조치만 있고***, **이를 영업시간 외 보건소에서 직접 소독**한 경우 **손실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 손실보상 **청구 및 접수는 불필요**

* 요양기관의 경우 소독 조치 외 **정보공개 또는 의사/약사의 자가격리 조치도 없는 기관**

○ 다만, 대상기관에게 **별도 안내는 필요**(서면, 문자, 이메일 등)(붙임9 안내문 참조)

□ **조사표 작성 시 일자에는 '9999-12-31'**, 이행기간에는 **'기회비용 미대상*'**, 조치이행에는 **'보건소 조치**'** **항목에 체크**하고, 향후 민원, 행정소송 등 이의제기에 대비하여 **안내 근거***** **시스템에 등록**(이후 종결)

* 기회비용(영업상 손실) 미산정

** 직접비용(소독 비용) 미산정

*** 서면, 문자, 이메일 등 발송 내역

< 업무 처리 절차 >

대상기관 선정 및 사전 안내	➤	청구서 작성 및 제출	➤	검토 및 제출	➤	종 결
지자체 (시군구)		생 략		지자체 (시군구)		

<조사표 작성 방법>

붙임23 손실보상금 분할지급

□ **(목적) 장기간 폐쇄·업무정지 조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 **일부(70%)를 우선 지급**함으로써 **병원경영의 어려움 해소**

* **손실보상금 산정** 시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금액을 적용하므로 **최소 3~4개월 소요**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5(손실보상금의 긴급지원)

> **제70조의5(손실보상금의 긴급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로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금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제70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9. 29.]

□ **(대상기관) 8일 이상** 폐쇄·업무정지 조치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여 **분할지급을 신청한 기관**

※ **(제외대상)** 손실보상금 규모가 작아 분할지급의 실익이 없는 △**7일 이하** 폐쇄·업무정지 기관, △이미 **개산급으로 손실보상금 긴급지원을 받은** 기관, △**의원급 의료기관** 등은 신청 제외/ 분할지급 신청기관이라도 △1개월 이내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액 산출될 예정이거나, △산정한 분할지급액이 미미(100만원 미만)한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 △방역지침 준수 명령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처벌(예정사항 포함)을 받은 기관은 심사 및 지급 보류

□ **(신청방법: 청구인)** 손실보상 청구 시 **'분할지급신청서' 추가 제출**

□ **(처리방법: 지자체)** 조사표의 **'분할지급 신청' 항목에 체크**

□ **(지급방법: 복지부)** 손실보상 청구 **3개월 이내** 손실보상금의 **70% 우선 지급(1차)**, 이후 **정산 지급(2차)**

* **(1차, 우선지급)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 기준**으로 산정한 손실보상금의 70% 지급 → **(2차, 정산지급)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금액 기준**으로 손실보상금 최종 산정, 나머지 금액 정산(추가 지급 또는 환수)

<요양급여비용 청구·심사 및 손실보상 청구·지급 흐름도>

	n월	n+1월	n+2월	n+3월	n+4월	n+5월	n+6월
	(조치월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요양급여비용 심사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금액 확정**		
	⇩				⇩		
일괄 지급	(청구 완료 후) **손실보상 청구**				⇒ 손실보상금 지급		
분할 지급		⇒ **1차 손실보상금 지급(70%)**			⇒ **2차 손실보상금 지급(정산)**		

□ **(이의신청 : 청구인)** 2차 손실보상금 지급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1회)

붙임24 **지자체용 Q&A**

목 차

Ⅰ. 손실보상 대상 및 범위	
1	국가에서 보상하는 손실범위는?
2	집합금지 및 집한제한 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한 영업장도 손실보상대상인지?
3	집합금지 기간동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미준수하고 영업을 지속하던 중 확진환자 발생 등으로 정부, 지자체의 폐쇄·소독조치 등의 명령을 받은경우 손실보상 대상인지?
4	정부 지침과 별도로 지자체 자체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 가능 여부?
5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도서관, 체육관 등 공공기관이 폐쇄되었을 경우 공공기관 內 매점, 커피숍 등에 대한 손실보상 가능 여부?
6	구두지시에 의한 폐쇄·소독 등의 조치도 보상 가능한지?
7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개설자가 정부·지자체의 조치없이 자발적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 휴업 등을 한 경우 보상 가능 여부?
8	약국 근처에 있는 의료기관이 폐쇄 또는 휴업조치 됨에 따라 환자 감소 등으로 발생한 약국의 간접손실에 대해 보상가능 여부?
9	건물 전체가 폐쇄 조치된 경우, 해당 건물에 입주한 요양기관 및 일반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 가능 여부?
10	국민안심병원의 손실보상 대상 여부?
11	생활치료센터 지정에 따라 휴업한 생활치료센터 내 입점 영업장(매점 등)의 손실보상 대상 여부?
12	임시검사(생활)시설(입점영업장 포함)의 손실보상 대상 여부?
13	손실보상 제한 사유 및 절차
14	사업장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손실이 발생, 확대되어 손실보상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경우
15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계도 등 행정지도를 받은 경우에도 손실보상 제한 대상이 되는지
Ⅱ. 손실보상 청구 절차 등	
1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결정?
2	손실보상 청구방법은?
3	손실보상금 지급 시기는?
4	코로나19 관련 손실은 '20년도에 한하여 보상?
5	지자체에서 손실보상대상으로 안내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는지?

6	손실보상 대상기관의 처리절차 진행단계를 확인하려면?
7	손실보상금과 중복되는 사업의 범위는?
8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기관에서 발생한 소독비용 등에 대한 보상기준 산정방식은?
9	폐쇄·출입금지·소독 조치명령서 상의 명령대상 범위를 초과하여 조치한 경우
10	소독명령이행이 '일반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9시)*' 외 내려진 경우 *주요업종 평균 영업시간 고려하여 일괄 적용(예외: 입원실운영 의료기관, 편의점 등)
11	'소독 이행기간' 인정기준
12	소독대행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소독명령을 이행한 경우 직접비용 보상 가능한지?
13	요양기관 손실보상 산정 시 영업일수 적용방법은?
Ⅲ. 의료기관	
1	의료기관 대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손실보상청구방법은?
2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및 방역협력기관(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등)에 확진자 발생·경유로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 시 손실보상 청구방법은?
3	직접비용 중 소독비용 외 기타 비용이 있을 경우 손실보상 여부?
4	의료기관이 전체 폐쇄되었을 경우 의료부대사업 손실보상 청구방법은?
5	의료부대사업 계약자가 병원 또는 의료법인이 아닐 경우 손실보상 가능 여부 및 대상은?
6	의사가 요양시설의 촉탁의, 조산원의 지도의사 등으로 진료 활동 중 확진자와 접촉, 자가격리(또는 확진)되어 원소속 의료기관이 휴업한 경우 손실보상 가능 여부 및 가능 시 청구방법은?
7	조산원에 확진자 발생·경유 등으로 인한 조산사 자가격리 및 휴업의 경우 손실보상 가능한지?
Ⅳ. 약국·일반영업장	
1	일반영업장 손실보상 대상 및 청구 시 제출서류
2	공공기관(비의료기관), 비영리민간단체(기관) 등 손실보상 가능한지?
3	어린이집, 유치원 손실보상 가능한지?
4	실외 영업장(주유소 등)에 대한 소독조치 명령 시 보상 여부
5	대중교통수단(항공기, 버스, 택시 등) 소독조치한 경우
6	조치명령 범위가 '일부'인 경우 제출서류는?
7	조치명령 범위는 일부이나 전체영업 불가하였을 경우 보상범위는?
8	대형마트, 백화점에 대한 조치명령 시 내부 입점 업체에 대한 보상 청구절차 및 방법은?

9	2019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이 가능한 업체인 경우에, - 조제기(약국의 자동포장기) 등 기기 임차료가 표준재무제표증명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10	본사-지점간 표준재무제표 등 매출자료 분리가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는?
11	약국 일별 매출장(장소공개, 회복기간 손실입증용) 제출 서류는?
12	약국의 폐쇄·업무정지 기간 중 법정 공휴일은 보상기간에서 제외되는지?
13	손실보상 대상기관에 해당되나, 올해 개업하여 증빙서류 중 전년도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14	'일반영업시간 외 운영' 영업장의 운영시간은 어떠한 방식으로 입증하면 되는지?
15	간이지급절차로 손실보상하는 경우 영업시간 내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인지 확인해야 하는지?
16	은행 등 금융기관의 지점에서 소독·폐쇄 등 조치명령 받았을 경우에도 손실보상 청구 가능한지?
17	일반지급절차로 손실보상 청구하는 경우 표준재무제표증명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중 선택하여 제출하는 것인지?
18	지자체 조치에 따라 대상기관에서 소독하여 소독비용 영수증을 제출했는데 세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이유는?
Ⅴ. 자가격리·정보공개 의료기관·약국	
1	일반영업자의 대표가 정부·지자체의 자가격리 조치로 격리조치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 휴업에 따른 손실보상 가능 여부?
2	2인 이상 운영 요양기관에 의사 또는 약사가 진료 중 접촉 등으로 확진 혹은 자가격리 조치 됨에 따라 격리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 휴업에 따른 손실에 대해 보상 가능 여부?
3	확진자가 발생·경유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한 요양기관외 일반영업장의 손실보상 가능 여부?
4	복지부·지자체가 아닌 미디어에 의해 확진된 발생·경유 정보가 공개된 요양기관의 경우도 손실보상대상인지?
5	확진자 발생·경유로 확진자 동선 정보공개 시 정확한 요양기관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정보공개에 대한 손실보상 가능 여부?
6	확진자 발생·경유로 정보공개·자가격리 되었으나, 별도의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가 없을 경우 손실보상 가능 여부?
7	확진자 발생·경유로 의사·약사가 코로나19에 확진되었을 경우 손실보상 대상기간은?
8	요양기관에 확진자 발생·경유 등으로 인한 의사·약사 진단검사 및 자택대기 구두 지시한 경우 손실보상 가능 여부?
Ⅵ. 사회복지시설	
1	사회복지시설의 손실보상 법적근거는?
2	예방적 격리(코호트격리)의 경우 손실보상 대상인지?
3	사회복지시설 미이용자 급여비 손실은 어떻게 산출하는지?

4	기관(시설)의 폐쇄 등 조치명령 없이 이용자만 격리되었을 경우 손실보상 가능 여부?
5	사회복지시설의 손실보상 대상 범위는?
Ⅷ.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및 방역협력기관	
1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금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2	개산급을 지급한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① 및 방역협력기관②은?
3	개산급 지급액이 최종 손실보상액인지?
4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보상 대상 및 기간은?
5	직접비용 보상항목 및 대상기관 유형은?

Ⅰ. 손실보상 대상 및 범위

Q1. 국가에서 보상하는 손실범위는?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손실보상)제1항에 따른 손실만 보상

□ 코로나19 ①**환자 치료의료기관** 및 ②**방역 협력 의료기관**

①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긴급치료병상 운영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 △준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 △기타 치료의료기관

② △생활치료센터 협력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 '22.8.1.부터 손실보상 지급 중단('22년 제8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의결)

□ **정부·지자체의 강제적 조치**에 따라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된 기관**(요양기관,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대표적 사례】

- 정부·지자체의 지시/명령 등 강제적 조치가 아닌 자발적으로 소독, 휴업한 경우
- 코로나19에 따라 자연적 환자(손님) 감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영업) 감소분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 별도 예산지원으로 운영되는 생활치료센터, 임시검사(생활)시설, 접촉자 격리시설
- 국민안심병원

Q2.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한 영업장도 손실보상 대상인지?

□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예방조치)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명령은 손실보상 대상 아님**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손실보상)제1항에 해당되지 않음

* **감염병의 예방 조치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에 한하여 보상 가능(시행령 별표2의2 손실보상 대상 및 범위 참고)

Q3. 집합금지 기간 동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미준수하고 영업을 지속하던 중 확진환자 발생 등으로 정부, 지자체의 폐쇄·소독 조치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 손실보상 대상인지?

□ **집합금지 기간** 중에는 **원래 영업이 불가**한 것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계속**하던 중 확진자 발생 등으로 **폐쇄·소독조치 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손실보상 대상 아님**

Q4. 정부 지침과 별도로 지자체 자체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 가능 여부?

□ **정부의 직접적인 조치** 및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지자체 조치는 **국고**로 손실보상 지원하되, **정부 지침과 별도의 지자체 조치**는 **지자체 부담**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시·도지사도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보상 가능**

* 제70조의2(손실보상심의위원회)①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및 **시·도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이하 생략)

Q5.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도서관, 체육관 등 공공기관이 폐쇄되었을 경우, 공공기관 內 매점, 커피숍 등에 대한 손실보상 가능 여부?

□ 감염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집합제한 등 예방적으로 조치한 경우**로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대상이 아님**

Q6. 구두지시에 의한 폐쇄, 소독 등의 조치도 보상 가능한지?

□ **원칙적**으로는 **지자체 서면(공문, 조치명령서) 지시가 필요**하나, 당시 긴급한 상황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구두·전화 조치**한 경우 **해당 명령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지자체 공문 필요)**

Q7.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개설자가 정부·지자체의 조치 없이 자발적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 휴업 등을 한 경우 보상 가능 여부?

□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경유하지 않은 요양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소독, 휴업한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아님**

□ 단, 코로나19 환자가 발생·경유한 요양기관에 한하여 정부·지자체 조치 명령 이전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응급실 폐쇄 등 자발적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소관 지자체가 해당 조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지자체의 조치 명령 이행기간으로 편입 가능

Q8. 약국 근처에 있는 의료기관이 폐쇄 또는 휴업조치 됨에 따라 환자 감소 등으로 발생한 약국의 간접손실에 대해 보상 가능 여부?

□ 의료기관이 폐쇄 또는 휴업 조치 됨에 따른 인근 약국의 간접손실은 **보상 대상이 아님**

Q9. 건물 전체가 폐쇄 조치된 경우, 해당 건물에 입주한 요양기관 및 일반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 가능 여부?

□ 정부·지자체의 조치로 **건물 전체가 폐쇄**된 경우, **건물내 입주 의료기관, 약국, 상점 등의 영업이 불가능**하므로 **손실보상 대상**

Q10. "국민안심병원*" 의 손실보상 대상 여부?

***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서, 병원 내 감염 발생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

□ "국민안심병원"은 **자발적 신청에 따라 지정**되고 지정에 따른 **별도 수가를 반영**하는 등, **'강제적 조치' 및 '이에 따른 손실'**이라는 **손실보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치료의료기관 보상 대상이 아님**

- 폐쇄·업무정지·소독한 경우 일반의료기관과 동일하게 보상

Q11. 생활치료센터 지정에 따라 휴업한 생활치료센터 내 입점 영업장(매점 등)의 손실보상 대상 여부?

□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설치·운영 주체인 중앙사고수습본부 내지 지자체가 강제 지정 내지 동원을 통해 생활치료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설과의 임대차계약 등 협의에 따라 시설운영**을 하는 것으로서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며, 생활치료센터로 직접 활용하지 아니하는 해당 부대시설 또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님**

○ 시설주체(임대인)와 부대시설(임차인)은 임대차계약관계로서(국유재산 시설도 동일) 임차인인 부대시설의 경우 민법상 임대인의 의무*를 임대인에게 요구해야 함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민간시설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의 경우에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 시 사전에 생활치료센터 설치·운영주체(정부, 지자체)와 시설주체간 임차료 지급 등과 관련한 협약서(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대시설의 손실보상이 되지 않음을 안내하는 한편, 사전에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부대시설 영업 손해 발생 여부 등을 시설 주체와 충분히 협의 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

Q12. 임시검사(생활)시설*(입점 영업장 포함)의 손실보상 대상 여부?

*** 해외입국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후 검사결과 대기 및 국내 거주지가 없는 해외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의 격리를 위한 시설로 '포스트 오미크론 해외입국 관리' 개정으로 '22.6.9.부터 운영을 종료함.**

□ 임시검사(생활)시설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가 감염병예방법 제39조의3에 따라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하고, 해당 시설주체가 격리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손실보상 대상

○ 현재 감염병 의심자 격리시설(임시검사(생활)시설 포함)은 해당 시설 주체와 계약(협의)으로 시설을 임차하고, 임차료 지급 등을 통해 예산 지원 중이므로, 손실보상 대상 아님

- 시설 내 부대시설의 경우 격리시설로 직접 활용된 시설이 아니며, 시설 주체(임대인)과 부대시설(임차인) 간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대시설에 대해 임대인의 의무(민법 제623조)를 이행할 사항으로 손실보상 대상 아님

Q13. 손실보상 제한 사유 및 절차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2,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 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90호, '21.3.24.)에 따른 **위반행위*가 손실의 발생 또는 확대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중대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할 수 있음

* (감염병예방법 §11)감염병 발생신고 보고 신고 해태 및 방해(의사,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12)일반국민 신고 해태 및 신고 방해, (§18③)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등, (§36③, §37②)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 미설치, (§60④)방역관의 감염병 발생지역 현장 조치 협조 불응

* (의료법§59①)국민보건상 중대 위해 발생[우려] 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지도·명령, 기타 법령상 조치의무로서 복지부장관이 특히 중요성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치의무(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명령)를 위반하는 경우

○ 의료법 제59조, 감염병예방법 제11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의무 위반** 시에는 위 고시 적용과 별개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손실보상을 지급하지 않거나 제한 가능

○ **손실보상 청구 사업장**에 대하여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이나 처벌이 확인**된 경우 손실의 발생 및 확대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할 경우 손실보상 제한 예정

Q14. 사업장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손실이 발생, 확대되어 손실보상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일반영업장(예: 식당 등)의 경우 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의무를 위반**으로 인하여 코로나19 환자가 발생, 확산된 경우

○ 과태료 등 행정처분으로 확인된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해 환자가 발생·확산되었고, 그로 인해 사업장의 영업손실이 발생·확대되었으므로 손실보상 제한

Q15.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계도 등 행정지도를 받은 경우에도 손실보상 제한 대상이 되는지

□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고시 시행일인 **'21.3.24.부터 발생**하여 이로 인한 **처분이나 처벌**이 있는 경우 손실보상 제한하는 것으로 함

○ **계도 등 행정지도**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손실보상을 제한하지 않음**

Ⅱ. 손실보상 청구 절차 등

Q1.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결정?

□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감염병예방법 제70조 근거 법률·손해사정·분쟁조정·건강보험 전문가 및 의료계로 구성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손실보상방법에 따라 각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손해사정사회의 검토 후 손실보상금 산정 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

Q2. 손실보상 청구방법은?

□ **손실보상청구서 및 증빙서류 등을 대상별 청구(접수)기관에 제출**

< 손실보상 대상기관별 청구(접수)기관 >

손실보상 대상기관		청구(접수)기관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및 방역 협력의료기관	→	보건복지부 (심평원)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한 기관	→	지자체 (시군구)

Q3. 손실보상 지급 시기는?

□ 손실보상청구 후(지자체→복지부(심평원) 제출기준) **3개월 이내** 지급 예정

- 순차적으로 손해사정 완료 후 **매월 1~2회 지급 계획**

Q4. 코로나19 관련 손실은 '20년도에 한하여 보상?

□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은 **연도와 관계없이** 정부·지자체의 폐쇄·소독 조치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됨**

- 다만, 향후 감염병 유행 상황변화 등에 따라 손실보상대상 및 산정기준 등 변동 가능

Q5. 지자체에서 손실보상 대상으로 안내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는지?

□ **정부·지자체의** 폐쇄·소독 조치 등 **강제적 조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 대상**으로, 손실보상 대상인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1차 안내가 이뤄질 예정

□ 따라서, 지자체로부터 폐쇄·소독 등 명령을 받았으나 손실보상 청구를 **안내받지 못한 경우**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필요**

Q6. 손실보상기관의 손실보상 처리절차 진행단계를 확인하려면?

□ 지자체에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 확인 가능

Q7. 손실보상금과 중복되는 사업의 범위는?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손실보상)에 따라 지자체가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중복사업이나,

- 소상공인 경영을 지원,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재난지원금 등 지원 사업은 중복이 아님

Q8. 폐쇄, 업무정지, 소독 조치된 기관에서 발생한 소독비용 등에 대한 보상기준 산정방식은?

□ 지자체는 우선 손실보상 대상 여부 및 손실규모 등을 확인하고,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소독관련 지침**)에 근거하여 기관 자체 비용으로 소독 조치한 경우 보상 청구 가능

- 소독명령 중 확진자 발생·경유와 관계없는 예방적 소독*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및 소독 관련 지침에서 권고하고 있는 일반적 소독 외 증기멸균소독은 손실보상에서 제외

* (예방적 소독) 장기 폐쇄, 확진자 다수 발생 시설 등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도 감염 예방을 위해 수시로 하는 경우

※ 지자체에서 소독명령 시 "폐쇄기간 동안 수시 또는 상시 소독" 등 불명확한 명령은 지양하고 **확진자 발생과 관련된 일시·장소·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명령 권고**

Q9. 폐쇄·출입금지·소독 조치명령서 상의 명령대상 범위를 초과하여 조치한 경우?

□ 명령 범위를 초과한 자발적 조치 부분은 보상대상이 아님

Q10. 소독명령이행이 '일반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9시)*' 외 내려진 경우

* 주요업종 평균 영업시간 고려하여 일괄 적용(예외: 입원실운영 의료기관, 편의점 등)

□ 영업소가 **해당시간에 실제 영업한 사실**을 **지자체가 확인*한** 경우 기회비용 보상, 그 외에는 **영업시간외 소독**으로 보아 직접비용만 보상

※ 지자체가 실제 운영시간 확인, 기타전달사항에 '실제운영시간 00시~00시' 등 기재

※ 일반영업시간 외 운영 영업장의 경우 실제 영업시간 내에서 조치 이행시간에 따라 명령이행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0.5일, 5시간 이상인 경우 1일로 산정

Q11. '소독 이행기간' 인정기준

□ 소독시간과 소독후 일정시간 환기를 권고한 경우 환기시간 포함 가능

* 구두명령 시에는 사후확인공문(조치명령일자, 내용, 이행기간 명시될 것)

※ 지자체 필수 확인사항

① 지자체 명령서와 손실보상 조사표(시스템) 간 명령이행기간은 필히 일치시킬 것
(예외적으로 이행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불일치해도 인정)

② 명령서, 조사표에 '일자'만 기재된 경우, 소독이행시간 보완 필요

③ 소독기준(「코로나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을 초과하여 소독기간이 장기 소요된 경우, 사실관계 추가확인 필요

Q12. 소독대행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소독명령을 이행한 경우 보상 가능한지?

□ 감염병예방법상 소독대행업자가 소독을 실시하게 하고 지자체는 소독이 적절히 시행되었는지 점검토록 하고 있으므로, 영업장이 소독대행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이행한 소독은 부적절 이행

□ 다만, 지자체가 해당 기관에 직접 소독하도록 조치 및 그 결과를 점검하였다면 기회비용 및 직접비용 보상 가능

○ 지자체에서 직접 소독하도록 한 조치명령, 결과 점검 내역 및 해당 소독 조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영업시간 내, 외)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 국가가 보상하는 직접비용은 소독비용으로 한정하며, **소독에 소요된 인건비, 약품 외의 소모품비 등은 손실보상 대상 아님**

※ 해당 소독약품의 금액이 표기된 **영수증(계산서 등)**은 반드시 증빙 필요

Q13. 요양기관 손실보상 산정 시 영업일수 적용방법은?

□ 제출한 매출자료 또는 진료연월에 해당하는 연도별 일수 및 법정공휴일 고려하여 적용 및 산정

※ '19년도(365일/299일), '20년도(366일/298일), '21년도(365일/298일)

Ⅲ. 의료기관

Q1. 의료기관 대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손실보상청구방법은?

□ 공동대표 중 대표공동사업자를 선임하고, 대표공동사업자가 손실보상 청구업무를 위임받아 서류 작성 및 제출

○ 공동사업자의 위임사실 확인을 위해 **'손실보상 청구위임장'** 제출

Q2.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및 방역협력기관(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등)에 확진자 발생·경유로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 시 손실보상 청구방법은?

□ 폐쇄·업무정지·소독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손실보상업무 수행

* (접수) 지자체, (심사·지급) 보건복지부

○ 단,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금*(개산급) 지급 시 중복 지원되는 항목은 제외하고 지급

*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은 '22.8.1.부터 손실보상 지급 중단('22년 제8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의결)

Q3. 직접비용 중 소독비용 외 기타 비용이 있을 경우 손실보상 여부?

□ 국가가 보상하는 직접비용은 소독비용과 코호트(동일집단)격리 중 확진자를 치료한 폐쇄 의료기관의 폐기물 처리비용에 한정하여 지원함

○ 지자체 판단으로 소독조치 이외 다른 조치명령으로 발생한 비용은 지자체*가 보상

※ (예시) 코호트격리 조치 기간 중 입소자 및 종사자 도시락, 생수 등은 손실보상 대상 항목 아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따라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각 시·도에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가능

Q4. 의료기관이 전체 폐쇄되었을 경우 의료부대사업 손실보상 청구방법은?

□ 전체 폐쇄 또는 업무정지 의료기관이 의료부대시설(장례식장, 주차장, 매점 등)을 운영할 경우 손실보상대상으로,

○ 대상의료기관은 각 영업장의 서류를 취합하여 **지자체에 접수**

* (포털 작성경로) 코로나관련 신고→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신고→ 손실보상 조사표 작성(지자체)→ 의료부대사업

○ 최종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대상기관인 의료기관에 지급하며, 의료기관은 영업장별 심사금액 및 계약관계를 고려하여 영업장(수탁인·임차인)에게 손실보상금 배분

* 보상대상 전체폐쇄의료기관 : 기존 입원 환자 관련 시설만 운영하고, 신규 환자 업무 관련 시설의 경우 전체 폐쇄한 경우

Q5. 의료부대사업 계약자가 병원 또는 의료법인이 아닐 경우 손실보상 가능 여부 및 대상은?

□ 의료부대사업 손실보상은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므로 법인설립 유형(의료법인, 학교법인, 특수법인 등)에 구분 없이 의료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명시된 사업에 한하여 손실보상 가능

□ 학교법인과 의료기관의 관계를 증빙서류로 입증될 경우 손실보상 가능단, 의료기관과 의료부대사업 주소지가 일치해야 함

○ 기존 제출자료 외에 (법인)사업자등록증,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추가 제출

○ 만약, 의료부대사업 중 사립학교법상 병원에 부속된 시설이지만,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분리하여 학교법인 직영으로 운영될 경우 해당 의료부대사업장 사업자등록증 및 학교법인 정관 등 증빙서류 추가 제출

Q6. 의사가 요양시설의 촉탁의, 조산원의 지도의사 등으로 진료 활동 중 확진자와 접촉, 자가격리(또는 확진)되어 원소속 의료기관이 휴업한 경우 손실보상 가능 여부 및 가능 시 청구방법은?

□ 3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요양기관(지침 16페이지)에 준하여 보상 가능

* (법 제70조제1항제5호) 감염병환자가 발생·경유하여 발생한 요양기관의 손실로서, 의료기관 폐쇄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손실에 해당

○ 촉탁의·지도의사로 활동중인 시설 소재 지자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원소속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접수

Q7. 조산원에 확진자 발생·경유 등으로 인한 조산사 자가격리 및 휴업의 경우 손실보상 가능한지?

□ 조산원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해당**하고, 조산사는 의료기관인 조산원의 개설권자임

○ 조산원에 확진자 발생·경유 등으로 지자체의 폐쇄, 업무정지, 자가격리 등의 조치명령이 있었을 경우 **의사·약사의 입원 및 자가격리 휴업과 같은 성격으로 손실보상 가능**

Ⅵ. 약국·일반영업장

Q1. 일반영업장 손실보상 대상 및 청구 시 제출서류

□ 보상 대상은 일반적으로 음식점, 숙박업소, 상점 등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액 증빙서류를 가진 업체**임

○ 영업손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액 증빙서류는 필수 서류이며 **해당 자료가 없을 경우 기회비용청구 불가**함

※ 간이지급절차의 경우 매출증빙 불요

【사업자등록증 외 기회비용 인정 가능한 서류】

- 지점 별도의 사업자등록증 제출
- 본사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를 동시 제출
- 본사 사업자등록증과 '조치명령상 주소와 동일한 주소가 확인되는 정부·지자체에서 허가받았거나 정부·지자체에서 신고, 등록하여 발급받은 서류'를 동시 제출
- (임대·위탁판매업장) 본사 사업자등록증과 임대계약서 혹은 본사사업자등록증과 '위탁판매업장이 입점한 매장과 위탁판매업장이 체결한 위·수탁 or 판매수수료 등 계약서'를 동시에 제출한 경우 보상대상으로 인정 (단, 조치명령서 상 소독폐쇄 장소와 일치한 영업장소가 계약서상 확인되어야 함)

※ 위 서류 미구비 시 기회비용 청구 불가하며, 다음 서류 증빙 시 **직접비용 청구 가능**함
①고유번호증 ②정부·지자체에서 허가받았거나 신고, 등록하여 발급받은 서류 ③임대계약서

Q2. 공공기관(비의료기관), 비영리민간단체(기관) 등 손실보상 가능한지?

□ 공공기관(비의료기관), 비영리민간단체(기관) 등은 원칙상 손실보상(기회비용) **대상 아님**

○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소독조치에 따라 소독한 경우 **직접비용(소독비) 보상 가능**

○ 고유목적사업 외 별도로 운영하는 수익사업에서 손실 입증 시에는 **예외적으로 기회비용 보상대상**

Q3. 어린이집, 유치원 손실보상 가능한지?

□ 어린이집, 유치원은 보육료·유아학비 전액(또는 일부)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한 휴원 기간 중에도 정상 지원하고 있어 원칙상 손실보상(기회비용) **대상이 아님**

- 소독조치에 따라 자체소독 시행된 경우 **직접비용(소독비) 보상 가능**

○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부모부담금을 납부받는 점을 고려할 때, 폐쇄·소독 등 조치로 인해 휴업하고 휴업 일수만큼 환불한 금액이 있어 이를 **입증 시에는 기회비용 보상 가능**

※ 학부모부담금 환불 금액은 정부지원금 외 별도 수익을 입증하는 자료일 뿐,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하여 영업이익, 고정비 자료를 별도 제출해야 함

Q4. 실외 영업장(주유소 등)에 대한 소독조치 명령 시 보상 여부

□ 지자체 조치명령서에 따라 소독이 시행된 경우 보상 가능

Q5. 대중교통수단(항공기, 버스, 택시 등) 소독조치한 경우

□ 정부·지자체의 소독명령에 따라 소독조치가 실시된 경우 소독·폐쇄 범위에 대한 영업손실액 증빙이 가능(매출액 분리 가능)하다면 기회비용 보상 가능

Q6. 조치명령 범위가 '일부'인 경우 제출서류는?

□ 조치명령 범위가 '일부'인 경우, 조치명령 범위에 해당하는 매출자료(손익계산서 등)만 분리하여 제출

* (예시1) 한 사업자등록번호에 본사 사무실과 건설현장 매출이 같이 잡히는 경우, 조치명령이 건설현장에만 내려졌다면, 건설현장에 대한 매출 분리
* (예시2) 숙박업소에서 한 객실만 조치명령이 내려진 경우, 해당 객실에 대한 매출 분리

□ 단, 조치명령이 내려진 일부 범위에 대한 매출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손실보상 산정이 불가할 수 있음

Q7. 조치명령 범위는 일부이나 전체영업 불가하였을 경우 보상범위는?

□ 조치명령 범위가 일부일 경우 **해당 범위에 대한 손실을 산정**하여 보상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건물 입구, 엘리베이터 등 소독·폐쇄로 인해 영업장 **전체 영업이 불가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보상범위는 전체임

- 지자체는 전체 영업 불가하였음을 확인하고 기타전달사항에 확인내용 (“명령 범위는 일부이나 전체영업 불가하였음을 확인함”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예시) 1층에 입구 및 계산대가 있는 2층짜리 카페에 1층만 소독·폐쇄 조치로 인해 전체 업장이 영업 불가한 경우

Q8. 대형마트, 백화점에 대한 조치명령* 시 내부 입점 업체에 대한 보상 청구절차 및 방법은?

*** 건물 전체가 폐쇄된 경우**

□ 손실보상 심사를 위하여 각 입점업체 별로 손실보상 청구서류 일체* 필요

* 손실보상청구서, 정보제공동의서, 계좌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영업손실증빙자료 등

- 단, 마트, 백화점 대표가 각 입점업체의 청구서류를 취합, 제출 가능

Q9. 2019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이 가능한 업체인 경우에,
- 조제기(약국의 자동포장기) 등 기기 임차료가 표준재무제표증명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 기계류(예, 조제기) 임차료가 19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서에 반영되지 않은 업체인 경우 해당 임차기기 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제출 가능

* 2019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불가능한 영업장의 경우, 고정비(임차료)에 기반영 조치

Q10. 본사-지점간 표준재무제표 등 매출자료 분리가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는?

□ 본사가 아닌 **지점에 조치명령**이 내려진 경우

○ ①본사 표준재무제표증명, ②지점 손익계산서, ③지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제출

※ ②,③은 본사가 작성하거나 세무 신고한 자료이며, 둘 중 하나만 제출하여도 산정 가능(단 산정과정에서 추가자료 필요시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또는, **월별매출 확인**을 위해 ①기존 사업장은 2019년 월별매출장, 본사와 구분계리된 내부 매출 증빙자료, ②당해년도 신규사업장은 당해연도 월별매출장(개업월~폐쇄·업무정지 종료월), 본사와 구분계리된 내부 매출 증빙자료 제출

○ **본사-지점 간 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본사와 구분계리된 재무제표와 매출증빙자료 또는 (본사가 작성한) 해당 지점의 재무제표 제출

□ 고정비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되, 고정비 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유사업종 표준 고정비 적용 예정

Q11. 약국 일별 매출장(장소공개, 회복기간 손실입증용) 제출서류는?

□ 반드시 약국의 **모든 내출내역이 확인**되는 매출장을 제출

* ① 조제약(급여약제비와 비급여약제비가 모두 포함될 것) + 일반의약품 판매내역, ② 카드+현금 판매내역이 모두 포함된 매출자료 제출할 것

Q12. 약국의 폐쇄·업무정지 기간 중 법정공휴일은 보상 기간에서 제외되는지?

□ 약국의 일평균 손실액 산정시에 법정공휴일(일요일, 국경일, 명절 등)을 제외한 연간 평균 영업일수로 손실액 산정하므로, **보상 제외**

※ 예외적으로 법정공휴일 영업 사실을 개별 입증 시 보상(다만, 입증 시에는 영업일을 365일로 계산)

Q13. 손실보상 대상기관에 해당되나, 올해 개업하여 증빙서류 중 전년도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 전년도 손익계산서 대신 개업일부터 지자체 조치로 인한 폐쇄일까지의 **월별 매출장** 제출 (개업월부터 ~ 폐쇄·업무정지 종료월까지)

※ 포스기, 세금신고내역, 매출조회화면, 홈택스>세무대리/납세관리>납세관리>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현금영수증 매출총액조회 등 (기존 영업장의 경우도 동일)

Q14. '일반영업시간 외 운영' 영업장의 운영시간은 어떠한 방식으로 입증하면 되는지?

□ 조사표 작성 시, **'일반영업시간 외 운영'란** 항목 체크 대상기관은 ① 24시간 운영 영업장과 ② 24시간 영업은 하지 않으나 일반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9시) 외 시간대에 운영 영업장 등 2가지 유형임

※ 용어 변경 (24시간 근무 → **일반영업시간 외 운영**, 10판 개정('22.2.1. 적용))

○ '22년 조치명령건부터 일 단위(00시 기준) 구분 없이 **조치이행시간에 따라** 영업시간 범위 내에서 산정됨 (조치이행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0.5일로 산정, 24시간 이하인 경우 최대 1일 보상)

* 예) 18시~익일 06시 영업하는 업장에서 12.1. 18:00 ~ 12.2. 03:00(9시간) 일시폐쇄 조치명령 받은 경우, 조치이행시간이 '24시간 이하'에 해당하여 1일 보상

① **24시간 운영 영업장**은 종전과 같이 영업시간 외 영업사실 입증(매출전표 등) 불요함

※ **(24시간 영업장)** 편의점, 숙박업소, PC방, 찜질방, 사우나, (영업장 내·외부, 간판 등에) 24시간 영업소로 표시된 곳, 인터넷 포털에 24시간 영업시간이 표시된 곳

- 지자체는 조사표 작성 시, 해당 영업장의 '24시간 영업' 여부를 확인 후 제출할 것(기타전달사항에 '24시간 운영 업장임' 등으로 기재)

② 24시간 영업은 하지 않으나 **일반영업시간(오전9시~오후9시) 이외 시간대에 영업하는 영업장**의 경우에는, 별도 입증 없이

- 지자체가 실제 운영시간 확인하여 기타전달사항에 '실제운영시간 00시~00시' 등으로 반드시 기재

Q15. 간이지급절차로 손실보상하는 경우 영업시간 내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인지 확인해야 하는지?

□ 영업시간 외에는 영업손실이 발생한다 볼 수 없으므로, **영업시간 내 조치**일 경우 간이지급절차에 따라 손실보상 정액(10만원) 지급 가능

※ **영업시간 외**의 폐쇄·소독 등 조치에 대해서는 **직접비용만 보상**하며, 일반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9시) 외 영업장의 경우 증빙 필요

Q16. 은행 등 금융기관의 지점에서 소독·폐쇄 등 조치명령 받았을 경우에도 손실보상 청구 가능한지?

□ 손실보상 청구 가능하나, 은행 등 금융기관의 지점처럼 전체 사업장의 일부 폐쇄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10만원 정액 보상함**('21. 3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의결)

- 다만, 매출액 감소가 폐쇄·업무정지로 인한 손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증빙할 시에는 별도 보상 검토

※ 금융기관 : 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등

Q17. 일반지급절차로 손실보상 청구하는 경우 '표준재무제표증명'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중 선택하여 제출하는 것인지?

□ 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이 가능한 영업장은 상세수익계정을 확인할 수 있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을 우선 제출**

○ 지자체는 '표준재무제표증명' 외의 자료가 첨부되었을 시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것인지 확인 필요**

※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제출 및 기타전달사항 란에 기재

Q18. 지자체 조치에 따라 대상기관에서 소독하여 소독비용 영수증을 제출했는데 세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이유는?

□ 소독업은 면세이므로 세액이 미포함된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소업 등을 병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과세용역 처리되기도 함

○ 세액 포함된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은 세액공제 여지가 있어 **세액 미포함으로 재발행**하거나 기타전달사항에 확인내용 기재 후 청구 권장. 세액 포함된 증빙제출 시 확인내용이 없다면 세액제외 후 지급

Ⅴ. 자가격리, 정보공개 의료기관·약국

Q1. 일반영업장의 대표가 정부·지자체의 자가격리 조치로 격리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 휴업에 따른 손실보상 가능 여부?

□ 요양기관 외 **일반영업장**은 **자가격리**에 따라 휴업한 경우 **감염병 예방법상 손실보상대상이 아님**

* 손실보상 대상을 정한 법 제70조제1항 각호 중 제1호~제3호는 감염병환자등의 치료·진료·격리 관련, 제4호 보상 가능한 조치에 자가격리는 제외, 제5호는 요양기관에 한정
*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제70조의4에 따라 **유급휴가비용** 또는 **생활지원비** 지원 중

□ 다만, **요양기관은** 환자 진료 등 **요양기관의 업무 수행 중** 확진자와 접촉하여 **전체 의사 또는 약사가 자가격리** 조치를 받아 **불가피한 휴업**에 따른 손실은 **보상**

- 다만, 환자 진료가 아닌 여행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의사/약사가 격리조치된 경우 보상대상 제외

* (법 제70조제1항제5호) 감염병환자가 발생·경유하여 발생한 요양기관의 손실로서, 의료기관 폐쇄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손실에 해당

Q2. 2인 이상 운영 요양기관에 의사·약사·조산사가 진료 중 접촉 등으로 확진 혹은 자가격리 조치됨에 따라 격리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 휴업에 따른 손실보상 가능 여부?

□ **2인 이상 운영하는 요양기관**의 **전체 의사 또는 약사**가 **요양기관 업무수행 중에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확진 혹은 자가격리 된 경우

- 사실상 **폐쇄 또는 업무정지 조치**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자가격리 기간 동안 휴업 손실 보상**

※ 의사·약사·조산사의 입원·격리 조치에 따라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요양기관 내에서 환자진료 등 사유로 한정하며, 여행 등 개인적 사유로 입원·격리 조치된 경우 제외)

□ 또한 의사·약사 일부가 격리되었을 때 **격리비율이 50% 이상**이면서 격리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 기간 동안의 **진료(영업)비 감소율이 70% 이상**인 경우 보상 가능

Q3. 확진자가 발생·경유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한 요양기관 외 일반영업장의 손실보상 가능 여부?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 **손실보상 대상이 아님**

○ 법 제70조제1항제5호는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경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요양기관의 손실에 한해 보상하도록 규정**

* 일반영엄장에서 폐쇄, 소독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유형으로 보상

Q4. 복지부/지자체가 아닌 미디어에 의해 확진자 발생·경유 정보가 공개된 요양기관의 경우도 손실보상 대상인지?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 **손실보상 대상이 아님**

○ 법 제70조제1항제5호는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경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요양기관의 손실에 한해 보상하도록 규정**

Q5. 확진자 발생·경유로 확진자 동선 정보공개 시 정확한 요양기관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ex. 00의원으로 표기) 정보공개에 대한 손실보상 가능 여부는?

□ 손실보상대상기관이 정확한 요양기관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직접적인 손실 발생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손실보상대상 아님**

Q6. 확진자 발생·경유로 정보공개·자가격리 되었으나, 별도의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가 없었을 경우 손실보상 가능 여부?

□ 지자체에서 **확진자 발생·경유 사실 확인 공문** 및 **정보공개·자가격리 증빙서류 첨부 시 손실보상 대상**

Q7. 확진자 발생·경유로 의사·약사가 코로나19에 확진되었을 경우 손실보상 대상기간은?

□ 확진자 발생·경유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입원기간 동안 보상**

Q8. 요양기관에 확진자 발생·경유 등으로 인한 의사·약사 진단검사 및 자택대기 구두지시한 경우 손실보상 가능 여부?

□ 지자체에서 진단검사 안내 시 "검사를 꼭 받으셔야 하고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하셔야 합니다." 등 **구두로 지시**한 경우 **보상대상**임

○ 확진자 발생·경유 등으로 인한 **진단검사는** 감염병예방법 제42조제2항 3호에 따라 **행정명령에 해당**될 수 있으며,

○ 이에 따른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도 의무사항으로서, 행정절차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사후적으로 관련 문서를 제공해야 함

※ 만약 지자체에서 **진단검사 안내를 권고할** 경우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예방차원에서 검사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고합니다." 등 **안내사항임을 명확히**할 필요가 있음

※ 요양기관 내에서 환자진료 등이 아닌 여행 등 개인적 사유로 인해 실시한 진단검사 및 결과 통보 시까지의 자가격리는 보상대상 아님

Ⅵ. 사회복지시설

Q1. 사회복지시설의 손실보상 법적근거는?

□ 감염병 예방법 제70조(손실보상) 근거로 보상

- 동법 제47조제1호 및 제5호 근거로 조치한 경우에 한함

Q2. 예방적 격리(예방적 코호트격리)의 경우 손실보상 대상인지?

□ 감염자가 없는 취약시설을 외부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예방적 목적으로 외부의 출입을 차단하고 종사자의 근무형태를 조정하여 출입 횟수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예방적 격리는 손실보상 대상 아님

Q3. 사회복지시설의 미이용자 급여비 손실은 어떻게 산출하는지?

□ 서비스 미이용 기간의 미이용자의 1일당 급여비 합계에서 시설유형별 변동비용비율 반영 후 미이용자의 급여비 지급액을 차감하여 산출

구분		내용
시설 급여 기관	서비스 미이용자	· 기관의 조치기간 내 기관외 장소로 입원·격리된 자
	서비스 미이용기간	· 기관의 조치기간 내 미이용자의 입원·격리조치 시작일~기관의 조치 종료일
재가 급여 기관	서비스 미이용자	· 기관의 조치기간 내 장기요양 급여계약이 통보된 자
	서비스 미이용기간	· 기관의 조치기간(조치 시작일~종료일)

Q4. 기관(시설)의 폐쇄 등 조치명령 없이 이용자만 격리되었을 경우 손실보상 가능 여부?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경유하여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감염병 예방법 47조제1호·제5호의 조치로 발생한 사회복지시설의 급여비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기관(시설)에 대한 조치 없이 이용자만 격리되었을 경우 손실보상 대상 아님

Q5. 사회복지시설의 손실보상 대상 범위는?

□ **기회비용 손실보상**은 급여비 손실이 발생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어린이집, 정부·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제외함

□ **직접비용(소독비용)**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외의 사회복지시설도 손실보상 대상 해당

Ⅶ.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및 방역협력기관

Q1.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금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 손실보상은 **상황이 종료된 후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코로나19 확산 지속 등 장기화로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하고자,

- **손실의 일부를 어림셈으로 계산**하여 향후 정산하는 **개산급**(槪算給) 형태로 조기 지급

Q2. 개산급을 지급한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① 및 방역협력기관②은?

□ ①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긴급치료병상 운영병원,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 준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

②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협력 의료기관

Q3. 개산급 지급액이 최종 손실보상액인지?

□ 개산급은 **손실 또는 그 손실의 일부**를 **잠정적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최종 손실보상액이 아님**

□ 손실이 확정된 이후 손실보상액 산정 후 **최종 정산 예정**

Q4.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보상 대상 및 기간은?

□ 의료부대사업 손실보상 대상은 **장례식장, 주차장, 매점, 커피숍** 등 입점 영업장을 대상으로 전담병원 **운영기간 동안** 손실에 대해 보상 (일할 계산, 회복기간 제외)

Q5. 직접비용 보상항목 및 대상기관 유형은?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 **시설철거비용, 폐기물처리비용, 환자전원비용**을 직접비용으로 보상

  * 시설·장비비, 소독비 등은 별도 사업예산으로 지원되거나 건강보험 수가로 보전되는 항목으로 직접비용 보상대상 아님

※ 기타 유형(생활치료센터 협력 의료기관(4),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5), 감염병 의심자 격리시설(8), 오염된 물건·음식물의 폐기, 의료인·의료업자 등의 동원(9))은 별도 사업예산으로 설치·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므로 직접비용 보상대상 아님

붙임25 손실보상 대상 및 범위 관련 법령 : 감염병예방법·시행령

감염법예방법 제70조제1항	시행령 별표2의2 손실보상 대상 및 범위		
	대상		범위
1.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좌동		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하는 비용(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는 제외) 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의 치료·진료·격리로 시설·장비·인력 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1의2. 제39조의3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좌동		가. 감염병의심자격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하는 비용 나. 감염병의심자격리시설을 설치·운영함에 따라 해당 시설 및 장비, 인력 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2.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감염병관리기관 이외 의료기관 해당		가. 치료·진료·격리로 시설·장비·인력 등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그 소요비용 나. 치료·진료·격리로 인해 시설·장비·인력 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3.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의료기관		폐쇄 또는 업무 정지로 시설·장비·인력 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4. 제47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2호의2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복지부, 시·도, 시·군·구청장의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제47조제1호	폐쇄·출입금지·이동제한 또는 통행차단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시설·장비·인력 비용
		제47조제4호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버리는 행위 또는 태우거나 폐기처분 당시 그 물건의 평가액
		제47조제5호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
	오염장소 등 소독조치	제48조제1항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
	복지부, 시·도, 시·군·구청장의 감염병 예방조치	제49조제1항 제4호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어 판매·수령이 금지된 음식물, 폐기된 음식물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의 대상이 된 음식물의 평가액
		제49조제1항 제6호	물건의 소지·이동이 제한·금지됨에 따라 발생한 비용 또는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의 대상이 된 물건의 평가액
		제49조제1항 제7호	(운송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배치된 의사의 인건비 및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제49조제1항 제8호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
		제49조제1항 제9호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에 드는 비용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제49조제1항 제10호	어로(漁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제한기간 또는 금지기간 동안 해당 어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매출액
		제49조제1항 제12호	동원된 의료인·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에 대한 인건비
		제49조제1항 제12호의2	동원된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제49조 제1항제13호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
5. 감염병환자등이 발생·경유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손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손실에 준하고, 제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손실			<별표 미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손실보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1의2. 제39조의3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2.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3.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4. **제47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2호의2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5. **감염병환자등이 발생·경유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손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손실에 준하고**, 제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손실 <중략>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실을 입은 자가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그 손실을 발생시켰거나 확대시킨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범위와 보상액의 산정, 제3항에 따른 지급 제외 및 감액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일시적 폐쇄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3.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접수·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6.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제48조(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 ① 육군·해군·공군 소속 부대의 장, 국방부직할부대의 장 및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장소에 대하여 의사, 한의사 또는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4.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5.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처분(殺處分)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드러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하는 것
6.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이동을 제한·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7.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8.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하수도·우물·쓰레기장·화장실의 신설·개조·변경·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9.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10.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漁撈)·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11. 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1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12의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하는 것**
13.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동법 시행령> 제28조(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는 별표2의2와 같다.**

②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분야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손실항목에 대한 감정, 평가 또는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법 제7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연평균수입 및 영업이익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2의2]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제28조제1항 관련)

1.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
   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하는 비용**(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의 치료·진료·격리로 **시설·장비·인력 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1의2. 법 제39조의3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이하 "감염병의심자격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

가. **감염병의심자격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하는 비용**

나. 감염병의심자격리시설을 설치·운영함에 따라 해당 **시설 및 장비, 인력 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2.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해당 의료기관(감염병관리기관인 의료기관은 제외한다)이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치료·격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치료·진료·격리로 **시설·장비·인력 등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그 소요비용**

나. 치료·진료·격리로 인해 **시설·장비·인력 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3.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해당 의료기관이 폐쇄 또는 업무 정지로 시설·장비·인력 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4. 법 제47조제1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폐쇄·출입금지·이동제한 또는 통행차단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시설·장비·인력 비용**

5. 법 제47조제4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버리는 행위 또는 태우거나 폐기처분 당시 그 물건의 평가액

6. 법 제47조제5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

7.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

8.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어 판매·수령이 금지된 음식물, 폐기된 음식물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의 대상이 된 **음식물의 평가액**

9.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물건의 소지·이동이 제한·금지됨에 따라 발생한 비용 또는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의 대상이 된 물건의 평가액**

10.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배**치된 의사의 인건비 및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11. 법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

12. 법 제49조제1항제9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에 드는 비용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13. 법 제4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어로(漁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제한기간 또는 금지기간 동안 해당 어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매출액

14. 법 제4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동원된 의료인·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에 대한 인건비**

14의2. 법 제49조제1항제12호의2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 **동원된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15. 법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

비 고

1. 위 표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특성에 따라 위 표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를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를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붙임26 손실보상금 지급 유사사례 보상절차

보상금명 (소관부처)	근거법령	보상대상	보상절차	재원부담
가축전염병 손실보상금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11조의5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방역 조치로 손실을 받은 자	(신청) 신청자는 시군구에 피해보상요구서, 영업손실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접수: 시군구)** 시군구는 **피해사실 여부 및 영업손실의 범위를 확인한 후 피해사실 확인서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심사·결정: 시도)** 시도는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시도 소속) 개최하여 심의·결정 **(지급: 시군구)** 시군구에서 보상금 지급	국비 80% 지방비 20%
가축전염병 생계안정비용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명령 또는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	(대상통보) 시군구는 지원대상자에게 서명 또는 구두로 통보 (신청) 신청자는 시군구에 지원신청서 제출 **(접수: 시군구)** 시군구는 **지원금액 확인** 후 시도에 지원금액 신청 **(심사·결정: 시도)** 시도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 **(지급: 시군구)** 시군구에서 보상금 지급	국비 70% 지방비 30%
곤충 손실보상금 (농림축산식품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시행령 제5조의2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의 제한 또는 폐기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신청) 신청자는 시군구에 손실보상청구서 제출 **(접수: 시군구)** 시군구는 **조치의 이행 여부 및 손실보상청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심사·결정: 농림축산식품부) **(지급: 시군구)** 시군구에서 보상금 지급	
식물 손실보상금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에 위탁)	식물방역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4조의2	병해충 발생에 따른 공적방제 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자	(신청) 신청자는 시군구에 손실보상청구서,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접수: 시군구→시도)** 시군구는 접수받은 손실보상청구서 등을 시도에 제출, 시도는 **손실보상금청구서 집계표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 (심사·결정: 농촌진흥청) **(지급: 시군구)** 시군구에서 보상금 지급	
기립불능소 보상금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2조의4	폐기처리한 기립불능 가축 소유자	(신청) 신청자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 보상 신청 **(접수·심사·결정·지급: 시도 또는 시군구)** 시도 또는 시군구에 보상금 평가반을 구성하여 **보상적합 여부 판정 및 보상가격 산정하여 지급** *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국비 100%